OECD 주요국의
공적연금제도와 개혁동향

2010. 12. 21

NPS 국민연금연구원

목 차

<OECD 주요국별 요약> ····· 1

1. OECD 회원국 ····· 1
2. 네덜란드의 공적연금제도 ····· 3
3. 미국의 공적연금제도 ····· 4
4. 스웨덴의 공적연금제도 ····· 5
5. 영국의 공적연금제도 ····· 6
6. 일본의 공적연금제도 ····· 7
7. 캐나다의 공적연금제도 ····· 8
8. 독일의 공적연금제도 ····· 9
9.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제도 ····· 10

Ⅰ. OECD국가의 경제 및 인구현황 ····· 11
Ⅱ. 네덜란드의 공적연금제도 ····· 35
Ⅲ. 미국의 공적연금제도 ····· 52
Ⅳ. 스웨덴의 공적연금제도 ····· 62
Ⅴ. 영국의 공적연금제도 ····· 80
Ⅵ. 일본의 공적연금제도 ····· 104
Ⅶ. 캐나다의 공적연금제도 ····· 127
Ⅷ. 독일의 공적연금제도 ····· 158
Ⅸ.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제도 ····· 168

<OECD 주요국별 요약>

1. OECD 회원국

[OECD 회원국의 전반적 현황]

○ 2007년 기준 OECD 회원국 전체의 명목 GDP 규모는 38,715.2 십억US달러(PPP 기준)이며, OECD 회원국 전체 평균 1인당 GDP는 32,664 달러임

○ 2007년 기준 OECD 회원국 전체의 평균 인구증가율은 0.68%, 2005년 기준 OECD 회원국 전체의 평균 비경제활동 노인인구비율은 28.7%이며 2010년에는 31.3%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2005년 기준 OECD 회원국들 중 노인부양비가 높은 국가들은 일본 및 이태리(부양인구 100명당 부양노인 수: 30명), 독일(28명), 그리스(27명), 벨기에 및 스웨덴(26명) 등임

○ 2007년 기준 OECD 회원국 전체의 자영업자 비율은 평균 16.1%임

[한국의 전반적 현황]

○ 2007년 기준 국내 명목 GDP 규모는 1,201.8 십억US달러(PPP 기준)로 OECD 회원국 중 10위를 기록

— 1인당 GDP는 2006년 23,083달러에서 2007년 24,801달러를 기록, 그러나 OECD회원국 30여 개국 중 25위로 2003년의 23위보다 2단계 더 하락

○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은 2007년도 기준 0.33%로 저조한 반면, 노인인구비율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됨

○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2020년 이후부터 그 증가속도가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 노년층의 급속한 근로감소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감소와 사회적 부담의 확대가 우려됨

○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는 1990년의 경우 부양인구 100명당 부양 노인수가 7명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 2000년 10명, 2015년 13명, 2030년 36명 및 2050년 63명으로 급속한 노인부양비의 증가가 전망되고 있음

○ 총 취업자대비 자영업자의 비중은 국내의 경우 2007년 기준 전체 취업자대비 31.8%를 차지하고 있어, 터키(41.9%), 그리스(35.9%), 멕시코(34.3%)에 이어 OECD 회원국가 중 4위의 높은 순위를 기록

— 임금근로자에 비해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워 과세 및 명확한 경제수준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은 우리 경제의 투명성 제고에 있어서도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

2. 네덜란드의 공적연금제도

구 분	제도 내용
제도명	기초연금(1층), 직역연금(2층), 개인연금 (3층)
공적연금 체계	- 1층: 기초연금, 2층: 직역연금(소득비례연금), 3층: 개인연금 * 직역연금은 노사의 합의에 의하여 대부분의 근로자가 가입
가입연령	기초연금(15~64세 강제가입), 직역연금
공적연금적용수준 (적용율)	○ 기초연금(AOW) : 15세 ~ 64세 인구 ○ 직역연금 - 경제활동인구 대비 비율 : 90% 이상 적용(OECD, 2009)
보험료율 (기준연도)	○ 기초연금(AOW & ANW) : 19% (2010) ○ 직역연금 : 약 16.1%(피용자, 사용자 공동 부담) (2010)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및 요건	- 기초연금 (65세) : 완전 기초노령연금 수급조건 - 50년 가입 - 직역연금 (65세) : 수급조건은 각 연금 펀드별로 다양 (이용하, 2007)
급여수준/ 수급률	○급여수준 - 기초연금 (AOW) : 최저임금(net minimum wage)의 약 70%에 연동 완전 기초노령연금은 독신 기준 €1,052.23 (2010) - 기초연금 + 직역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약 71% ※ 자료:『노령기초소득보장제도의 국제비교연구』(이용하, 2007) ○ 수급률 - 기초연금(AOW) : 거주 조건에 의하여 수급하므로, 원칙적으로, 65세 인구의 대부분이 수급 - 직역연금 : 전체 근로자의 90% 이상 수급
급여산식 (급여산정방식)	○ 기초연금(AOW) 급여산식 = 정액* x (15-64세까지 거주기간)/50 *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액수로 2010년 독신 기준 €1,052.23 ○ 직역연금 급여산식 = (1.75%~2%) x 생애평균소득 x 기여기간
소득재분배	○ 기초연금(AOW) - AOW는 보험료의 기여에 관계없이 거주조건에 의하여 수급하므로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매우 큰 제도임 - 따라서 65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은 2%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음 (OECD, 2009)
재정방식	○ 기초연금(AOW & ANW) : 부과방식 ○ 직역연금 : 적립방식
국고부담	○ 국고보조 비율은 GDP의 4.1% (2005) (SVB, 2008a) - Central government grant : 3.6% - BIKK : 0.5%
기금규모 (ABP)	○ 기금규모 : €173 bill (303조원, 세계 3위 연기금) ○ GDP 대비 비율 27.6%,(2008년 말)
기금운용 조직(ABP)	○ 금융감독원의 연금보험감독국(PVK)에서 전반적 감독 ○ 관리운영 및 기금운용 - 직능단체별, 기업별, 산업별 조직된 직역 연기금에서 자체적인 의사결정체계를 보유
최근 개혁동향 (연금제도의 개정내용)	- 기초연금에서 조기연금 폐지 - 연금 수급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조정할 예정 - 직역연금의 급여 산식 중 최종 소득 기준을 생애 평균소득으로 바꿈 - 고령화피크기(2035년 전후)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AOW Savings Fund 조성

3. 미국의 공적연금제도

<table>
<tr><th>구 분</th><th>제도 내용</th></tr>
<tr><td>제도명</td><td>노령유족장해보험 (OASDI)</td></tr>
<tr><td>공적연금 체계</td><td>- 1층: SSI, 2층: OASDI, 3층: 기업연금
※ SSI는 일반재원의 공적부조제도임</td></tr>
<tr><td>가입연령</td><td>66세 미만</td></tr>
<tr><td>가입률</td><td>경제활동인구 대비 비율 : 94.0%(2009)</td></tr>
<tr><td>보험료율 (기준연도)</td><td>피용자・사용자 각각 7.65%, 자영자: 15.3% (HI 보험료 포함)</td></tr>
<tr><td>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및 요건</td><td>- 2010년 66세(최소가입기간 40분기 또는 10년 이상 가입한 자)
※ 조기노령 62세</td></tr>
<tr><td>노령연금 급여수준/ 수급률</td><td>○ 급여수준
- 2008년 기준 월 평균 $1,173 (소득대체율은 약 40% 수준임)
○ 수급률
- 2009년 90%(65세 이상 인구 대비)
※'40(0.7%), '50(16.4%), '60(61.6%), '80(91.4%), '00(91.1%)</td></tr>
<tr><td>급여산식 (급여산정방식)</td><td>○ 급여산식
PIA = AIME 중 $744까지 × 0.9 + $744~$4,483 × 0.32 + $4,483 이상 소득 × 0.15
※ AIME: 재평가 생애평균소득
※ 위의 각 구간은 2009년 기준임. 해당 구간은 매년 임금상승율을 반영 조정함
※ 급여상한 존재(2009년 월 $2,323)</td></tr>
<tr><td>소득재분배</td><td>○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
- 출생연도 코호트별 실질내부수익률은 감소하고 순이전액은 증가
<table>
<tr><td>출생코호트</td><td>1901</td><td>1910</td><td>1920</td><td>1930</td><td>1940</td><td>1950</td><td>1960</td><td>1970</td></tr>
<tr><td>실질내부수익률</td><td>10.9</td><td>7.9</td><td>5.4</td><td>3.6</td><td>2.9</td><td>2.8</td><td>2.5</td><td>2.5</td></tr>
<tr><td>총 생애 순이전</td><td>1,301</td><td>2,036</td><td>2,375</td><td>2,233</td><td>2,771</td><td>5,210</td><td>6,599</td><td>6,947</td></tr>
</table>
※ 총 생애 순이전은 각 코호트별 총 급여에서 총 납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의 2001년 기준 현재가치임(단위: 억달러)
○ 소득계층간 소득재분배 효과
<table>
<tr><td>소득수준</td><td>AWI의 45% 수준의 근로자</td><td>AWI의 100% 수준의 근로자</td><td>AWI의 160% 수준의 근로자</td></tr>
<tr><td>급여의 소득대체율</td><td>57.6%</td><td>42.7%</td><td>35.5%</td></tr>
</table></td></tr>
<tr><td>재정방식</td><td>○ 부과방식 (단, 고연금자의 연금액에 대한 과세(1983년)를 통해 신탁기금으로 사용)</td></tr>
<tr><td>국고부담</td><td>○ 국고보조가 없을 뿐만 아니라, OASDI의 관리비용도 사회보장세로 충당</td></tr>
<tr><td>기금규모(GDP 대비등)</td><td>○ 기금규모: 2조 4,187억 달러 (2008.12월말 기준, GDP 대비 17.02%)</td></tr>
<tr><td>기금운용 조직</td><td>○ 별도의 기금운용조직은 없음
- 여유 신탁기금자산은 원칙적으로 미정부에 의해 발행된 채권(미재무성 증권 : Treasury Bill)에 투자되거나, 미정부에 의해 원금과 이자가 보증된 특별채권(special obligations)에 투자</td></tr>
<tr><td>최근 동향</td><td>○ 특이사항 없음
- 단, 부시 행정부 시절 사회보장세 일부를 개인계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음</td></tr>
</table>

4. 스웨덴의 공적연금제도

구 분	제도 내용
제도명	IP(소득비례연금), PP(완전적립식 개인연금), GP(최저보장연금)
공적연금 체계	- 1층: IP, PP, GP, 2층: 직역연금(Occupational pension), 3층: 개인연금
가입연령	IP와 PP (16세 이상~65세 미만, 강제가입)
공적연금적용수준(적용율)	○ 경제활동인구(16세~64세) 대비 비율 99%: (2008) ※ 일부 다른 사회보험혜택 적용자도 포함됨. 자료: Official statistics of Sweden
보험료율 (기준연도)	IP: 16%, PP: 2.5% (피용자, 사용자 각각 9.25% 균등부담) (1999~) ※신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변경 없었음.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및 요건	- IP, PP(65세): 최소가입기간 없음, 최고40년 ※ 실질적으로 61세부터 수령 가능 - GP(65세)
급여수준/ 수급률	○ 급여수준 (총연금대체율) - IP+PP: 중위소득자 기준대비 37.87% (2006년 기준) - 총 강제가입연금: 중위소득자 기준대비 61.5% (2006년 기준) ※ 총연금대체율= 총연금소득/은퇴전 총소득 ○ 수급률 - 2008년 전체 65세 이상 인구 중 1,650천 명 중 1,165천 명이 수급(IP+PP 수급자, 71%) - 2008년 IP+PP+GP 수급자는 1,942천 명 (중복수급자 포함)
급여산식 (급여산정방식)	○ IP (노령연금 기준) 노령연금액= $\frac{\text{개인의 연금자산}}{\text{수급시점의 기대여명}}$ ※ 개인의 연금자산=$\sum${(매년도 기여금×재평가율)+(65세 이전 사망자 적립금 배당-관리비용)} ○ PP는 적립식 개인연금이므로 적립금의 투자수익률에 의해 급여가 결정됨.
소득재분배	○ IP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세대간 소득재분배가 발생함. - 인구증가율, 경제성장률이 증가하고, 기여율이 높아질수록 현세대가 미래세대보다 유리 ○ PP는 기본적으로 소득계층간 소득재분배가 발생하지 않음. - 다만, 군복무기관, 학업기간, 자녀양육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국고에서 부담하므로 집단간 소득재분배는 존재
재정방식	○ IP: 부과방식, ○ PP: 적립방식 ○ GP: 공공부조
국고부담	○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IP의 경우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고로 부담. GP의 경우 전액 국고 부담
기금규모(GDP 대비등)	○ 기금규모: 7,070억 SEK(2008. 1월말 기준) ○ GDP 대비 비중 22%
기금운용 조직	○ National Pension Funds: AP1~AP4, AP6 관리 (IP) ○ PPM: AP7, 민간펀드 관리 (PP)
최근 개혁동향 (연금제도의 개정내용)	- 2010년 사회보장청(SSIA)의 업무 일부가 PPM(완전적립식 개인연금국)으로 이관됨. 이관된 주요업무는 노령, 유족, 그리고 장애연금, 특별연금 크레딧, 배우자 보충급여 등 임.

5. 영국의 공적연금제도

구 분	제도 내용
제도명	국가연금(기초연금, 부가연금; 국가소득비례연금, 국가2층연금 등)
공적연금체계	- 1층: 기초연금(사회보험방식), 2층: 부가연금(2030년 경 폐지예정), 3층: 기업연금, 개인연금
가입연령	16~65세 강제가입
공적연금적용 수준(적용율)	○ 연금가입연령인구 대비 88%가 수급자격을 위한 한 해의 가입년수 획득
보험료율 (기준연도)	피용자: 소득상한까지 11%, 상한 이후 소득 1%, 사용자: 소득하한 이상 소득에 대하여 12.8%, 자영자: 주 £2.40, 소득상한 이상 소득에 8%, 임의가입 주 £12.05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및 요건	- 남성(65세), 여성('10~'20까지 60→65세), 2024~2046년 남녀 65→68세로 조정 - 기여 또는 다양한 국민보험가입크레딧으로 30년 자격년수를 채우면 완전연금 수급
급여수준/ 수급률	○ 급여수준 - 기초연금: 평균소득의 15~16% 수준, 기여기록이 낮은 경우 배우자연금(완전기초연금의 60%) - 부가연금: 2010년 4월 6일부터 정액화로 진행 중(2030년경 완료) ○ 수급률 - 배우자연금이 있으므로 노인 대부분 국가연금 수급
급여산식 (급여산정방식)	○ 기초연금(2010. 4. 6 이후 수급개시연령 도달자): 완전연금 정액×(기여기간 +크레딧기간)÷30년 ⇒30년은 완전연금액 수급을 위한 총 기여 및 크레딧년수 ○ 부가연금: 원래는 소득비례연금이었으나 2007년 개혁으로 정액화 - 2010. 4. 6부터: 1주 기여 또는 크레딧당 £1.6× 수급자격인정년수 + [(급여산정소득상한까지의 본인 소득 - 급여산정 소득하한선 소득) ×0.1×수급자격인정년수÷완전연금 수급을 위한 자격인정년수] - 급여산정 소득상한을 주 £770으로 묶어 2030년 경 소득 상하한이 같아지면 자동 소득비례급여 폐지
소득재분배	○ 2007년 연금법개정을 통하여 다양한 수급자격인정년수 크레딧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회적 기여를 통해서도 완전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율기여, 정액급여로 저소득층이 유리하게 급여산정방식 변경⇒소득재분배 강화, 급여수준 적절성 도모
재정방식	○ 부과방식(2개월 치 급여의 적립금 보유)
국고부담	○ 자산조사급여 비용 + 무기여 급여비용 + 기여급여 지출 중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그 비용
최근 개혁동향 (연금제도의 개정내용)	○ 공적연금 급여 적절성 확보 - 사회적 기여(자녀양육, 장애가족 돌보기 등), 실업, 장애 등에 대한 수급자격년수 인정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대부분 완전기초연금 + 정액화 되는 부가연금 수급하도록 개혁 - 급여상승률을 물가연동에서 소득연동으로 변경 ○ 수급개시 연령 65→68세로 상향조정하여(2024~2046) 노후근로 장려 ○ 사적연금 가입 활성화 - 저소득 근로자는 개인저축계좌에 강제 가입하도록 함. 단, 탈퇴는 자유

6. 일본의 공적연금제도

구 분	제도 내용
제도명	국민연금(기초), 후생연금
공적연금 체계	- 1층: 기초연금, 2층: 후생연금(소득비례연금), 3층: 후생연금기금, 퇴직연금 * 후생연금 가입대상 :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가입연령	국민연금(20~59세 강제가입), 후생연금(70세미만)
공적연금 적용수준 (적용율)	○ 경제활동인구 대비 비율 : 94.0%(2003) ○ 노동가능연령인구 대비 비율 : 73.0%(2003) 자료: World Bank (2007),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보험료율 (기준연도)	국민연금: 14,660엔 (월, 정액), 후생연금: 15.7%(피용자, 사용자 균등 부담) (2009)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및 요건	- 국민연금(65세) : 최소25년, 최고40년 ※ 조기노령 60세 - 후생연금(60세(2013년)~65세(2025년)): 국민25년+후생 1개월
급여수준/ 수급률	○ 급여수준 (자료: 일본사회보험청, 일본통계청) - 국민연금: 월평균소득의 16.8% - 후생연금: 월평균소득의 36.7% ○ 수급률 - 국민연금(노령기초연금): 1971년: 3.1%→1995년: 61.7%→2006년: 82.2% ※ 2006년 65세 이상 2,660만명 중 2,497만명(유족·장애연금 포함)이 수급(개인기준 **93.9%**) - 공적연금(국민연금, 후생연금, 공제연금 등) + 은급 ※ 2004년 4월 기준 고령자세대 787만 세대 중 759만세대 수급(96.5%)
급여산식 (급여산정방식)	○ 노령기초연금 급여산식(연간) $= 792{,}100엔 \times \frac{\text{보험료 납부월수} + \text{보험료 전액면제 월수}\times 4/8 + \text{보험료 1/4납부월수}\times 5/8 + \text{보험료 반액납부월수}\times 6/8 + \text{보험료 3/4납부월수}\times 7/8}{40(\text{가입가능연수})\times 12}$ ※ 792,100엔은 연금액의 물가연동제에 따라 전년도 노령기초연금액에 대한 물가상승률 적용으로 결정
소득재분배	○ 국민연금(생애기간, 2010년 기준시점) - 70세가 되는 1940년생: 300만엔 보험료 부담, 1,300만엔의 국민연금 수령(4.5배) - 20세가 되는 1990년생: 2,300만엔의 보험료 부담, 3,500만엔의 국민연금 수령(1.5배) ○ 후생연금(생애기간, 2010년 기준시점): 기초연금 포함 - 70세가 되는 1940년생: 900만엔 보험료 부담, 5,500만엔의 후생연금 수령(5.1배) - 20세가 되는 1990년생: 5,900만엔의 보험료 부담, 13,600만엔의 후생연금 수령(2.3배)
재정방식	○ 기초연금 : 부과방식, ○ 후생연금/공제연금 : 일정한 적립금을 갖는 수정부과방식
국고부담	○ 당년도 기초연금 소요액의 1/2 부담
기금규모(GDP 대비등)	○ 기금규모: 128.8조JPY(2008말 기준) ○ GDP 규모 5,376,210억엔(GDP 대비 비중 24%, 2008)
기금운용 조직	○ GPIF (Government Pension Investme Fund, 일본) - 2001년에 설립, 2006년 4월 1일자로 연금자금운용기금에서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으로 조직 변경
최근 개혁동향 (연금제도의 개정내용)	○ 후생연금 급여수준 인하, 연금지급개시 이후의 임금슬라이드 폐지, 지급개시연령연장, 69세까지 후생연금 가입, 보험료 부과시 상여금 포함(2004년) ○ 70세 이상 소득활동자에 대한 노령후생연금의 지급정지, 노령후생연금 연기지급제도 시행, 이혼 시의 후생연금분할제도 등(2007년) ○ 사회보험청을 일본연금기구(전국건강보험협회 별도)로 재편하여 운영(2010년)

7. 캐나다의 공적연금제도

구 분	제도 내용
제도명	OAS(노령보장제도), CPP/QPP(소득비례연금)
공적연금 체계	- 1층: OAS, 2층: CPP/QPP(소득비례연금), 3층: 기업연금, 개인연금 * OAS 적용대상: 18세 이후 10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한 모든 국민들에게 정액급여를 제공하는 보편적 기초연금 * CPP/QPP 가입대상 : 연간기초소득공제소득 이상의 근로소득을 가진 전 국민
가입연령	CPP/QPP(18세 이상 70세 미만의 캐나다 근로자와 자영자)
공적연금적용수준(적용율)	○ 65세 이상 노인수 대비 OAS 수급비율 : 99%(2007년 기준) ○ 경제활동인구 대비 CPP/QPP 가입자 비율 : 91.0%(2007년 기준) ※ 자료: HRSDC(2008), OCA(2008), 캐나다 통계청, Regie des Pentes du Quebec(2007)
보험료율 (기준연도)	OAS: 조세 CPP: 9.9%(피용자・사용자 균등 부담, 자영자 전액부담) (2009)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및 요건	- OAS(65세) : 최소 10년 이상 캐나다 거주, 40년 거주 시 최대 급여 수급 - CPP(65세) : 60세 조기수급 및 70세까지 수급연기 가능, 최소한 1회 이상의 보험료 납부(at least 1 valid contribution)
급여수준/ 수급률	○ 급여수준 - OAS: 평균소득의 15% - CPP: 평균소득의25% ※ 자료:『노령기초소득보장제도의 국제비교연구』(김성숙외, 2007),『국민연금 적용제외자 현황과 노후 소득보장 대책』(우해봉 외, 2009) ○ 수급률 - OAS: 1970: 98% → 1975년: 97% → 1985년: 97% → 1995이후: 98% → 2005이후: 99% ※ 2007년 65세 이상 4,423천명 중 4,362천명이 수급 - CPP: 81% ※ CPP 수급자수: 3,580천명(2007.6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수: 4,423천명(2007년말 기준)
급여산식 (급여산정방식)	○ OAS 급여산식: 18세 이후 거주기간이 10년이상 40년 미만인 경우 거주 연수 1년마다 완전연금액의 1/40만큼씩 감액되는 부분연금 수급 ○ CPP 급여산식(월액) $25\% \times \frac{1}{12} \times$ 가입기간동안의 년간총소득의 평균(재평가반영후) $\times \frac{\text{가입한기간}}{\text{가입가능기간}}$
소득재분배	조세방식인 OAS에 소득재분배 기능 있음.
재정방식	○ OAS: 조세방식, ○ CPP: 일정한 적립금을 갖는 부분적립방식
국고부담	○ OAS의 재정 전액
기금규모(GDP 대비등)	○ 기금규모 : 약 1,055억달러(2009. 3월말 기준)로 GDP의 6.58%
기금운용조직	○ CPPIB(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rad) - CPP 기금운용에 대한 정부간섭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적립금 운용방침을 바꾸어 캐나다 연금제도 투자위원회를 설립
최근 개혁동향 (연금제도의 개정내용)	- OAS 수급을 위한 최소 거주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기 위한 법안 관련 논의 및 수정 중

8. 독일의 공적연금제도

구 분	제도 내용
제도명	○ 법정연금보험(GRV)
공적연금 체계	○ 1층: 공적연금, 2층: 기업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 * 공적연금의 가입대상 : 모든 근로자 + 수공업자 등 일부 영세자영업자
가입연령	○ 16~65세 미만
공적연금 적용율	○ 경제활동인구 대비 비율 : 80.0%(2007)
보험료율 (기준연도)	○ 19.9%(2007) ○ 근로자 : 노사균등부담, 자영자 : 전액 본인부담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및 요건	○ 65세(2012~29년까지 67세로 상향조정) ○ 5년 이상 보험료 납부
급여수준/수급률	○ 급여수준(45년 가입기준) - 평균소득의 47.2%(2007년 기준) ○ 노령연금 수급률 - 60세 이상 노인의 83%
급여산식 (급여산정방식)	○ 노령연금의 급여산식(연간) - 연금액 = 개인별 생애소득점수 × 연금실질가치유지액(정액) * 생애연금점수 : 매년 전가입자 평균소득 대비 가입자 개인의 소득의 비를 생애에 걸쳐 합산한 수치 * 연금실질가치유지액(2007; 구서독지역) : 26.27유로(소득상승률에서 가입자 대비 수급자비율의 변동율을 제한 비율 = 지속가능성계수로 매년 인상조정)
소득재분배	○ 공적연금은 완전비례연금이므로 기본적으로 소득재분배가 없음 ○ 다만, 실업기간, 직업훈련기간, 출산양육기간 등 무소득 및 저소득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이때 개인의 실제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인정해 줌으로써 소득재분배 발생
재정방식	○ 완전부과방식
국고부담	○ 연금지출의 1/4을 국고에서 보조
기금규모(GDP 대비등)	○ 없음(약간의 유동성 기금만 보유)
기금운용 조직	○ 없음
최근 개혁동향 (연금제도의 개정내용)	○ 공적연금의 급여수준 인하('97, 04년 개혁) ○ 공적연금 지급수준 축소에 대응하는 노후보장 보완대책 마련('01년 노인및 장애인 기초보장제도 도입, 국고지원의 개인연금인 Riester Rente 등 사적연금 도입 확충) ○ 인구변수에 연금수준을 연동시키는 지속가능성계수 도입(04년) 등으로 DB에서 인구구조변화에 보다 유연한 準 DC로 전환 ○ 지급개시연령을 65세→67세로 상향조정(07년 개정)

9.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제도

구 분	제도 내용
제도명	The 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CalPERS)
공적연금체계	- CalPERS는 캘리포니아주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제도 ※ CalPERS의 2/3정도는 CalPERS 외에도 Social Security(OASDI) 수급 자격 획득(근로자와 사용자가 6.2%의 사회보장세 납부)
가입연령	- 해당사항 없음
공적연금 적용수준 (적용률)	- 캘리포니아주 공공기관에 6개월 이상 전업으로 근로 혹은 1년 이상 주당 평균 20시간 이상 파트타임 근로 활동을 하는 모든 개인들은 CalPERS에 의무 가입 ※ CalPERS 의무 가입자가 아닌 파트타임 종사자의 경우 별도의 프로그램 존재
보험료율 (기준연도)	- 직종별로 매우 다양한 보험료율이 적용되며, 근로자(5-8%)와 사용자(16-28%)의 보험료율 또한 차이를 보임(2009/1010 회계 연도)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및 요건	- 연금플랜 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임 - 수급 가능한 최소 연령은 50세(최소 가입기간은 5년) - 조기연금 수급 시 급여 감액 그리고 연기연금 수급 시 급여 증액(급여계수가 1.1%에서 2.5% 범위에서 조정)
급여수준 및 수급률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해당 급여산식 적용 - 2009년 전체 은퇴자의 월평균 급여액은 $2,101(평균 가입기간 20.1년)
급여산식 (급여산정방식)	- 급여계수 × 가입기간(근속년수) × 기준소득 ※ 급여계수는 연금플랜의 종류와 퇴직연령에 따라 변동
소득재분배	- 기본적으로 연금액은 소득수준에 비례(직종별로 급여계수 차이 있음)
재정방식	- 재원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기여금 그리고 투자수익(부분적립방식)
국고부담	- 사용자로서의 국고부담 외에는 없음
기금규모(GDP 대비 등)	- 기금규모 195.5 billion USD(2009년 10월말 기준) - GDP규모 14,414 billion USD(2008년 말 기준) - GDP 대비비중 1.4%
기금운용조직	- CalPERS
최근 개혁동향 (연금제도의 개정내용)	- 최근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 손실 문제(보험료 인상 검토) - 자산배분 검토 계획을 앞당겨서 실시함(2010년 → 2009년)

I. OECD국가의 경제 및 인구현황

○ 2009년 8월 발간된 「2009년판 OECD 통계연보(OECD Factbook 2009)」는 총 12개 분야[1]에 대해 OECD 회원국들의 다양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12개 분야는 인구 및 이주, 거시경제 동향, 경제 글로벌화, 시장가격지표, 에너지, 노동시장, 과학 및 기술, 환경자원, 교육, 공공재정, 삶의 질의 기본분야 및 '특집-위기와 그 이후'의 12개 분야로 대분류되어 있으며,

— 각 분야별로 중분류 및 소분류의 형태로 세분화된 통계자료와 현황자료가 제공되고 있음*

*「2010년판 OECD 통계연보」의 주요 분야별 지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 <표 1> 참조

○ OECD 회원국의 국내총생산 및 인구규모, 자영업자 비율 현황은 「2009년판 OECD 통계연보(OECD Factbook 2009)」와 「2010년판 OECD 통계연보(OECD Factbook 2010)」를 참조하여 작성

○ OECD 회원국의 노인부양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 노인부양비 현황은 UN(2009.5)의 「세계인구전망: 2008개정 인구 데이터베이스(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8 Revision Population Database)」를 통해 제시하였음

1) OECD Factbook은 매년 발표되는 자료로, 2006년과 비교하여 2009년에는 2분야(경제 글로벌화, 불평등)가 더 추가되었음

<표 1> 「2010년판 OECD 통계연보」의 주요 분야별 지표목록

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인구 및 이주	**총인구**	인구규모 및 증가율/지역인구
	고령인구	**전체고령인구**/지역별고령인구/**공적 및 사적 연금지출**
	국제 이주	이주추세/이민인구/고급인력 이주 및 고용/이주 및 실업
2. 거시경제동향	**국내총생산(GDP)**	**GDP 규모**/1인당 국민소득
	경제성장	GDP성장률/가계저축/투자율/물가/철강생산
	생산	소득 및 생산수준/**1인당GDP**/노동생산성 증가율
	경제구조	산업분야별 부가가치/산업분야별실질부가가치/중소기업규모
3. 경제 글로벌화	무역	GDP내 무역비중/재화무역/서비스무역/무역파트너현황/국제수지
	외국인직접투자(FDI)	FDI 유출입 현황/다국적기업활동
4. 시장가격 지표	물가 및 금리	소비자물가지수/생산자물가지수/장기금리
	구매력평가 및 환율	PPP, 환율/실효환율
5. 에너지	에너지 공급	주요에너지공급/에너지공급과 경제성장/1인당에너지공급/에너지별 전세계사용 인구비중/원자력에너지/재생에너지
	에너지 생산 및 가격	에너지생산/원유생산/원유가격
6. 노동시장	**고용 근로시간**	성별고용률/연령그룹별 고용률/파트타임고용률/**자영업자 고용률**
	실업	실업률/장기실업률/지역별실업률
	노동소득 및 시간당 노동시간	노동소득/시간당 노동시간
7. 과학 및 기술	연구 및 개발(R&D)	R&D지출/지식투자/연구개발자현황/특허권
	정보통신기술(ICT)	ICT분야규모/ICT투자/지식경제분야 고용현황/가정의 컴퓨터 및 인터넷접근성
	커뮤니케이션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장비 수출현황/전화 및 이동전화 가입자현황
8. 환경·자원	물 및 천연자원	물소비량/어업양식량
	공기 및 토지	CO2 배출량, 폐기물배출량
9. 교 육	성과	국제학력평가, 고등교육 졸업 및 진학률 추세/고등교육 성과
	교육 지출	교육비지출 변화추세/졸업자 상대소득/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및 사적지출/교육기관에 대한 지출
10. 공공재정	정부적자 및 부채규모	정부적자/정부부채
	공공지출	의료지출/사회공공지출/법·질서·방위비지출
	후원 및 원조	농업지원/어업지원/공식발전원조
	조세	총 조세수입/평균노동자기준 과세
11. 삶의 질	건강	기대수명/영아사망률/정신건강/비만율
	사회	자살률/주관적 행복/자원봉사 및 사회적 후원/청년층 비경제활동 현황
	여가	여가시간/문화 및 여가지출/여행 및 숙박산업
	안전	범죄율/교통사고율
12. 위기와 그 이후	국내총생산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기업 및 소비자 신뢰	
	자산 가격	
	부채 및 신용	
	국제무역거래 / 국제자본흐름	
	노동시장 성과	
	가계소득	
	재정정책	
	통화정책	

1. OECD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및 1인당 GDP 규모

○ 2007년 기준 국내 명목 GDP 규모(단위: 십억US달러(PPP 기준))는 1,201.8 십억 달러

— OECD 회원국 중 10위를 기록하여, 2006년(1,114.9 십억 달러)에 이어 10위를 유지하였음

<표 2> OECD회원국의 국가별 GDP 자료

(단위: 십억US달러(현재가격, PPP 기준))

국가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호주	296.3	305.5	323.8	343.4	367.3	392.5	412.3	437	463.9
오스트리아	149.8	160.6	168.2	172.6	181	187.2	193.9	198.6	208.1
벨기에	186.8	196.9	204.5	207.2	218.4	228.2	231.9	242.7	248.4
캐나다	542.9	550.1	567.7	594.3	636	667.2	690.9	732.2	770.6
체코공화국	123.3	112.8	114.8	117.6	122.7	132.6	141	142.6	143.8
덴마크	95.1	99.7	104	106.3	114.6	120.5	126.8	133.6	138.7
핀란드	88.5	85.8	84.5	85.7	90.6	96.1	99	108	116.8
프랑스	1007.4	1053.2	1092.1	1107	1155.4	1203.9	1242.9	1301.9	1369.1
독일	1462.8	1591.3	1664.2	1688.7	1770.2	1840.4	1891.7	1935.8	1989.7
그리스	130.3	139	143.2	144.1	150.1	156.4	162.8	173	178.9
헝가리	-	85.3	84.6	86	90.4	93.7	96.9	103.3	110.1
아이슬란드	5.4	5.6	5.6	5.8	6.1	6.2	6.5	7.1	7.6
아일랜드	45.6	48.1	50.9	53.5	57.7	64.6	71	79.7	89.1
이태리	1000.3	1051.2	1083.7	1098.7	1146	1202.5	1241.9	1285.5	1350.5
일본	2326.4	2488.4	2570.5	2636	2721.2	2831.1	2964.2	3061.1	3031.7
한국	351.6	398.1	431.2	468.2	518.9	578	630.2	670.5	631.5
룩셈부르크	11.6	13.1	13.6	14.5	15.4	15.9	16.7	17.1	18.4
멕시코	564.8	609.3	645.9	673.6	718.2	687.7	736.9	799.9	849.5
네덜란드	264.1	280	291.4	301.8	317.3	333.9	352.2	376.3	400.2
뉴질랜드	48.3	49.6	51.7	55.6	60.2	63.9	66.6	69.8	71.3
노르웨이	76	81.1	85.9	90.4	96.9	103	114.3	123.2	121.5
폴란드	228.4	219.8	230.5	244.6	263	287	311.5	339.9	362.5
포르투갈	107	115.6	119.5	119.8	123.5	131.4	137.2	145.8	153.7
슬로바키아	-	-	36.6	38.1	41.3	44.7	48.6	52.5	55.6
스페인	518.9	550.7	568.6	575.7	601.8	631	660.7	700.9	750.6
스웨덴	165.7	169.6	171.4	171.8	182.3	193.4	200.5	207.3	214.8
스위스	166.5	170.7	174.8	178.5	184.5	188.9	194.5	202.8	210.5
터키	322.8	337.2	365.6	404.1	390.1	426.7	466.5	511.2	535.5
영국	936.4	955.7	979.1	1023.9	1090.2	1146.3	1220.1	1308.3	1363.1
미국	5757.2	5946.9	6286.8	6604.3	7017.5	7342.3	7762.3	8250.9	8694.6
EU27개회원국	-	-	-	-	-	8358.1	8705.3	9115.3	9530.1
OECD전체	17074	17920.4	18737.1	19432.2	20465.1	21397.1	22492.6	23718.3	24650.3

국가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호주	497.4	524.8	552.2	584.9	622.3	655.9	696.8	742.6	794.6
오스트리아	215.9	230.2	231.7	244.3	252.4	266.4	275.8	292	308.7
벨기에	258.6	282.2	292.3	309.3	312.7	323.3	335.8	354.3	375.8
캐나다	825	873	910	937.8	989.6	1049.8	1131	1203.7	1269.6
체코공화국	147.2	153.8	165.4	172.1	183.6	197.1	208.4	225.5	248
덴마크	143.3	153.7	157.7	165.3	164.1	174.6	179.9	189.6	196.3
핀란드	122.4	132.8	138.3	143.5	144.4	156.3	161	171.6	183.6
프랑스	1425.2	1532.9	1630.1	1711.2	1700.6	1767.5	1869.4	1962.5	2078
독일	2063.8	2130.2	2211.8	2275.4	2358.4	2467.8	2587.7	2704.5	2829.1
그리스	185.4	200.8	218.3	237.3	248.9	267.4	276.8	297.7	318.1
헝가리	115.8	125.3	138	149.3	156.9	164	171.1	181.6	188.6
아이슬란드	7.9	8.1	8.7	8.9	8.9	9.9	10.4	10.7	11.1
아일랜드	97.3	108.9	117.8	129.7	137.5	148.2	160.5	177.8	196.2
이태리	1377.2	1455.7	1546	1532	1563.9	1595.5	1648.2	1730.3	1802.2
일본	3071.1	3246.3	3330.6	3417.2	3510.1	3710	3872.8	4093.3	4295.9
한국	701.4	772.8	821.7	888.9	910.8	981.2	1027.4	1114.9	1201.8
룩셈부르크	21.1	23.4	23.8	25.7	27.4	29.8	31.7	35.8	38.3
멕시코	894.1	985.9	1009.3	1047.7	1108.2	1185.8	1290.8	1396.5	1479.9
네덜란드	425.8	467.7	494.1	515.8	514.5	540.7	572.9	606.7	642.4
뉴질랜드	76.4	80.2	84.7	89.2	93.1	98.5	102.2	108.6	114.8
노르웨이	133	162.1	167.4	168.2	174.9	194.1	218.7	242.9	251.7
폴란드	382.6	403.8	419	442.1	458	497.1	526.1	566	609.4
포르투갈	163.9	174.5	183.3	191.3	196.3	201.4	217.9	229.2	242
슬로바키아	56.1	59.2	64.9	69.8	73.2	79	87.1	97.1	108.4
스페인	791.5	857.4	920.2	994.3	1040	1108.6	1188.1	1300.9	1417.4
스웨덴	228.5	246	248.8	258.9	269.4	288.5	291.7	312.9	334.8
스위스	215.2	227.7	233.9	245.2	246.4	257.5	265.8	287.7	308.6
터키	517.7	588.6	561.2	572.1	588.1	688.8	781.2	881.1	960.3
영국	1423	1533.5	1630.6	1713.7	1778.5	1899.5	1968.8	2068.2	2168.1
미국	9216.2	9764.8	10075.9	10417.6	10908	11630.9	12364.1	13116.5	13741.6
EU27개회원국	9919.9	10570.3	11157	11633.5	11958.9	12594.7	13207.5	14009.9	14852.4
OECD전체	25800.1	27505.9	28587.7	29658.7	30741.2	32635.4	34520.1	36702.7	38715.2

주) - : 결측치임.

자료: OECD Factbook 2009: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 Macroeconomic trends - gross domestic product (GDP) - size of GDP Gross domestic product, Billion US dollars, current prices and PPPs.

○ 2007년 기준 한국의 3년 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각각 8.2%(기간 초 기준)와 4.8%(기간 말 기준)을 기록

— OECD 평균 2.9%(기간 초 기준)와 2.8%(기간 말 기준)을 상회하였으며, 전반적으로 OECD회원 선진국들의 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음

○ 아시아 주요국인 중국과 인도의 경우 2007년 기준 3년 평균 실질 GDP 성장률의 수치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국가들임

— 중국의 경우 3년 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각각 11.33%(기간 초 기준)와 11.30%(기간 말 기준)을 기록하였으며, 인도는 9.39%(기간 말 기준)을 기록하였음

— 특히, 중국의 경우 두 자리 수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임

[그림 1] OECD회원국 및 아시아 주요국의 실질 GDP 성장률

(단위: 연평균 성장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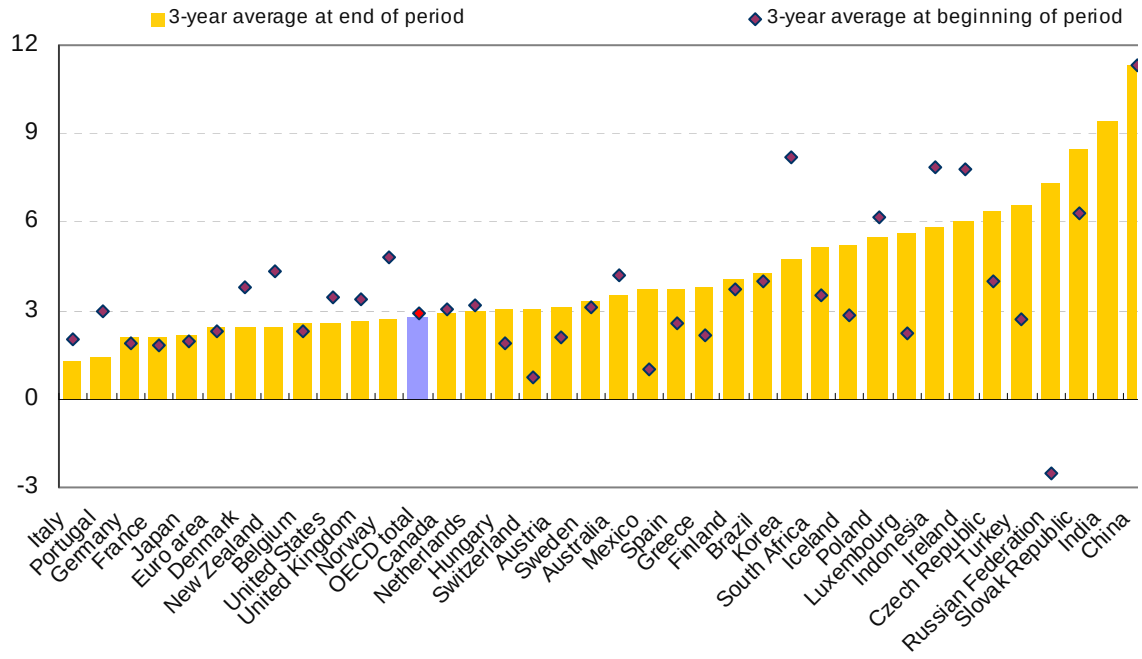

주) 2007년 기준임.

자료: OECD Factbook 2009: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 Macroeconomic trends - Economic growth - Evolution of GDP.

○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006년 23,083달러에서 2007년 24,801달러를 기록하면서 1인당 GDP 2만 달러 국가 대열에 있음

○ 그러나 OECD회원국 30여 개국 중 25위로 2003년의 23위보다 2단계 더 하락하였음

— 참고로 2007년 1인당 GDP 1위는 룩셈부르크(79,793달러), 2위는 노르웨이(53,477달러), 3위는 미국(45,489달러)이며, 일본은 33,626달러로 OECD회원국 중 18위를 기록

<표 3> OECD회원국의 국가별 1인당 GDP 자료

(단위: US달러(현재가격, PPP 기준))

국가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호주	17257	17572	18417	19337	20466	21573	22385	23488	24662
오스트리아	19511	20711	21451	21836	22802	23549	24361	24927	26083
벨기에	18742	19678	20356	20544	21590	22509	22839	23839	24342
캐나다	19601	19625	20014	20722	21933	22771	23334	24481	25554
체코공화국	11903	10945	11130	11379	11871	12839	13668	13837	13966
덴마크	18505	19379	20119	20491	22007	23038	24096	25274	26146
핀란드	17740	17118	16764	16911	17805	18811	19316	21008	22666
프랑스	17317	18015	18591	18765	19514	20262	20845	21760	22800
독일	18432	19895	20649	20803	21741	22537	23098	23593	24256
그리스	12603	13335	13638	13653	14155	14708	15205	16052	16510
헝가리	..	8245	8194	8358	8815	9068	9402	10034	10722
아이슬란드	21354	21779	21270	21821	22892	23266	24208	26110	27832
아일랜드	13017	13654	14318	14961	16102	17937	19589	21771	24014
이태리	17636	18514	19080	19333	20161	21154	21842	22596	23732
일본	18841	20074	20659	21117	21739	22564	23571	24283	23985
한국	8203	9195	9857	10594	11623	12818	13843	14592	13644
룩셈부르크	30479	33811	34744	36514	38152	38919	40169	40736	43094
멕시코	6952	7196	7490	7673	8038	7547	7962	8518	8920
네덜란드	17671	18584	19191	19739	20629	21595	22683	24110	25486
뉴질랜드	14364	14183	14625	15561	16629	17385	17841	18461	18685
노르웨이	17929	19038	20050	20955	22348	23644	26089	27978	27421
폴란드	6005	5767	6038	6399	6875	7498	8135	8876	9470
포르투갈	10703	11594	11995	12007	12348	13097	13644	14446	15176
슬로바키아	-	-	6891	7159	7732	8325	9041	9745	10323
스페인	13300	14090	14514	14663	15301	16021	16735	17706	18896
스웨덴	19364	19683	19777	19699	20761	21911	22673	23432	24269
스위스	24505	25292	25551	25844	26471	26910	27536	28632	29656
터키	5744	5885	6261	6793	6440	6922	7441	8181	8439
영국	16361	16638	17003	17740	18842	19755	20977	22435	23311
미국	23012	23456	24470	25374	26636	27542	28780	30228	31485
EU27 회원국	-	-	-	-	-	17460	18156	18981	19819
OECD 전체	16403	17023	17634	18126	18934	19635	20491	21478	22171

국가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호주	26128	27233	28281	29610	31139	32429	33963	35666	37565
오스트리아	27011	28736	28804	30225	31096	32589	33496	35259	37119
벨기에	25299	27540	28435	29946	30146	31035	32063	33608	35382
캐나다	27135	28447	29334	29893	31242	32811	35002	36867	38500
체코공화국	14312	14975	16178	16872	18000	19311	20366	21966	24027
덴마크	26926	28789	29445	30756	30441	32314	33196	34871	35961
핀란드	23698	25653	26652	27592	27703	29905	30695	32586	34718
프랑스	23616	25232	26643	27772	27410	28305	29759	31055	32686
독일	25142	25919	26862	27587	28579	29912	31380	32835	34391
그리스	17032	18389	19934	21598	22577	24173	24928	26701	28423
헝가리	11312	12268	13549	14694	15494	16223	16958	18030	18754
아이슬란드	28632	28807	30451	31088	30787	33702	35009	35096	35697
아일랜드	25945	28648	30533	33030	34452	36508	38693	41803	45027
이태리	24196	25565	27134	26804	27149	27426	28122	29356	30381
일본	24252	25593	26195	26814	27483	29039	30310	32040	33626
한국	15047	16439	17352	18666	19030	20426	21342	23083	24801
룩셈부르크	48857	53315	53921	57546	60737	65156	68211	75754	79793
멕시코	9261	10034	10137	10398	10879	11527	12432	13332	14004
네덜란드	26933	29371	30796	31943	31716	33221	35111	37130	39225
뉴질랜드	19915	20771	21792	22622	23223	24256	24916	26212	27431
노르웨이	29800	36084	37101	37052	38316	42274	47319	52118	53477
폴란드	9996	10555	10953	11563	11990	13020	13786	14842	15989
포르투갈	16113	17067	17804	18447	18799	19178	20656	21656	22815
슬로바키아	10403	10962	12058	12970	13603	14681	16175	18020	20079
스페인	19824	21295	22597	24067	24759	25968	27377	29520	31586
스웨덴	25801	27726	27971	29004	30076	32078	32298	34456	36603
스위스	30210	31778	32473	33793	33696	34972	35839	38568	41101
터키	8046	8724	8178	8217	8316	9595	10841	12074	12993
영국	24249	26041	27585	28888	29863	31747	32695	34137	35669
미국	32994	34574	35308	36145	37489	39609	41718	43839	45489
EU27 회원국	20590	21884	23037	23959	24526	25716	26849	28364	29946
OECD 전체	23049	24344	25116	25870	26621	28068	29509	31172	32664

주) - : 결측치임.

자료: OECD Factbook 2009: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 Macroeconomic trends - gross domestic product (GDP) - size of GDP - GDP per capita, US dollars, current prices and PPPs.

2. OECD회원국의 총인구규모,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및 노인부양비 현황

○ OECD 각 회원국의 총인구 규모 및 연간 인구증가율은 다음의 <표 4>와 <표 5>에 제시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인구는 2007년 기준 48,456천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연간 인구증가율은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0.33%를 기록하여 전체 OECD 국가 중 24위를 차지하여 인구증가율이 상

당히 저조한 하위 국가에 속한 상태임

<표 4> OECD회원국의 국가별 총인구 규모

(단위: 1,000명)

국가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호주	17,065	17,284	17,495	17,667	17,855	18,072	18,311	18,518	18,711	18,926
오스트리아	7,678	7,755	7,841	7,906	7,936	7,948	7,959	7,968	7,977	7,992
벨기에	9,967	10,004	10,045	10,084	10,116	10,137	10,157	10,181	10,203	10,226
캐나다	27,698	28,031	28,367	28,682	28,999	29,302	29,611	29,907	30,157	30,404
체코공화국	10,363	10,309	10,318	10,331	10,336	10,331	10,315	10,304	10,295	10,283
덴마크	5,141	5,154	5,171	5,189	5,205	5,228	5,262	5,284	5,301	5,319
핀란드	4,986	5,014	5,042	5,066	5,088	5,108	5,125	5,140	5,153	5,165
프랑스	56,709	56,976	57,240	57,467	57,659	57,844	58,026	58,207	58,398	58,673
독일	79,433	80,014	80,625	81,156	81,438	81,678	81,915	82,035	82,047	82,100
그리스	10,161	10,256	10,370	10,466	10,553	10,634	10,709	10,777	10,835	10,883
헝가리	10,374	10,373	10,369	10,358	10,343	10,329	10,311	10,290	10,267	10,238
아이슬란드	255	258	261	264	266	267	269	271	274	277
아일랜드	3,506	3,526	3,555	3,574	3,586	3,601	3,626	3,664	3,703	3,742
이태리	56,719	56,759	56,794	56,829	56,840	56,841	56,856	56,886	56,902	56,912
일본	123,611	124,101	124,567	124,938	125,265	125,570	125,864	126,166	126,486	126,686
한국	42,869	43,296	43,748	44,195	44,642	45,093	45,525	45,954	46,287	46,617
룩셈부르크	382	387	392	397	403	409	414	419	425	430
멕시코	83,971	85,583	87,185	88,752	90,266	91,725	93,130	94,478	95,790	97,115
네덜란드	14,952	15,070	15,184	15,290	15,383	15,459	15,531	15,611	15,707	15,812
뉴질랜드	3,390	3,495	3,532	3,572	3,620	3,673	3,732	3,781	3,815	3,835
노르웨이	4,241	4,262	4,286	4,312	4,337	4,359	4,381	4,405	4,431	4,462
폴란드	38,031	38,109	38,174	38,221	38,252	38,275	38,289	38,292	38,284	38,270
포르투갈	9,983	9,968	9,970	9,983	10,004	10,030	10,058	10,091	10,129	10,172
슬로바키아	5,298	5,283	5,307	5,325	5,347	5,364	5,374	5,383	5,391	5,395
스페인	38,851	38,940	39,069	39,190	39,296	39,388	39,479	39,583	39,722	39,927
스웨덴	8,559	8,617	8,668	8,719	8,781	8,827	8,841	8,846	8,851	8,858
스위스	6,712	6,797	6,875	6,938	6,994	7,041	7,072	7,089	7,110	7,144
터키	56,104	57,275	58,397	59,519	60,641	61,771	62,911	64,063	65,214	66,338
영국	57,237	57,439	57,585	57,714	57,862	58,025	58,164	58,314	58,475	58,684
미국	249,623	252,981	256,514	259,919	263,126	266,278	269,394	272,647	275,854	279,040
EU27개회원국	470,388	471,967	473,243	474,876	476,067	477,010	477,856	478630	480,920	481,618
OECD 전체	1,043,869	1,053,315	1,062,944	1,072,022	1,080,438	1,088,606	1,096,611	1,104,556	1,112,194	1,119,926
전세계	5,294,879	5,381,644	5,467,328	5,551,993	5,635,848	5,719,045	5,801,566	5,883,316	5,964,308	6,044,563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호주	19,153	19,413	19,651	19,895	20,127	20,395	20,698	21,015	**21,016**	**21,244**	**21,472**
오스트리아	8,012	8,043	8,084	8,118	8,175	8,233	8,282	8,315	**8,338**	**8,365**	**8,395**
벨기에	10,251	10,287	10,333	10,376	10,421	10,479	10,548	10,626	**10,693**	**10,769**	**10,847**
캐나다	30,689	31,021	31,373	31,676	31,995	32,312	32,649	32,976	**33,095**	**33,368**	**33,639**
체코공화국	10,273	10,224	10,201	10,202	10,207	10,234	10,267	10,323	**10,262**	**10,271**	**10,279**
덴마크	5,337	5,355	5,374	5,387	5,401	5,416	5,435	5,457	**5,473**	**5,489**	**5,504**
핀란드	5,176	5,188	5,201	5,213	5,228	5,246	5,266	5,289	**5,307**	**5,327**	**5,347**
프랑스	59,049	59,454	59,863	60,264	60,643	60,996	61,353	61,707	**61,840**	**62,149**	**62,452**
독일	82,212	82,350	82,488	82,534	82,516	82,469	82,376	82,247	**82,772**	**82,807**	**82,834**
그리스	10,917	10,950	10,988	11,024	11,062	11,104	11,149	11,193	**11,218**	**11,252**	**11,284**
헝가리	10,211	10,188	10,159	10,130	10,107	10,087	10,071	10,050	**10,035**	**10,021**	**10,007**
아이슬란드	281	285	288	289	293	296	304	311	**315**	**318**	**321**
아일랜드	3,790	3,847	3,917	3,980	4,045	4,134	4,240	4,339	**4,250**	**4,298**	**4,347**
이태리	56,937	56,972	57,151	57,597	58,167	58,597	58,931	59,336	**58,851**	**58,934**	**59,004**
일본	126,926	127,291	127,435	127,619	127,687	127,768	127,770	127,771	**127,568**	**127,395**	**127,176**
한국	47,008	47,357	47,622	47,859	48,039	48,138	48,297	48,456	**48,607**	**48,747**	**48,875**
룩셈부르크	436	442	446	452	458	465	473	480	**471**	**475**	**479**
멕시코	98,439	99,716	100,909	102,000	103,002	103,947	104,874	105,791	**106,683**	**107,551**	**108,396**
네덜란드	15,926	16,046	16,149	16,225	16,282	16,320	16,346	16,382	**16,390**	**16,418**	**16,448**
뉴질랜드	3,858	3,881	3,949	4,027	4,088	4,134	4,185	4,228	**4,268**	**4,310**	**4,352**
노르웨이	4,491	4,514	4,538	4,565	4,592	4,623	4,661	4,709	**4,765**	**4,822**	**4,879**
폴란드	38,258	38,248	38,232	38,195	38,180	38,161	38,132	38,116	**37,927**	**37,863**	**37,798**
포르투갈	10,226	10,293	10,368	10,441	10,502	10,549	10,584	10,608	**10,620**	**10,625**	**10,626**
슬로바키아	5,401	5,380	5,379	5,379	5,383	5,387	5,391	5,398	**5,393**	**5,397**	**5,401**
스페인	40,264	40,721	41,314	42,005	42,692	43,398	44,068	44,874	**44,311**	**44,511**	**44,683**
스웨덴	8,872	8,896	8,925	8,958	8,994	9,030	9,081	9,148	**9,195**	**9,241**	**9,282**
스위스	7,184	7,230	7,285	7,339	7,390	7,437	7,484	7,550	**7,617**	**7,667**	**7,715**
터키	67,393	68,367	69,304	70,231	71,151	72,065	72,971	73,875	**74,767**	**75,643**	**76,505**
영국	58,886	59,113	59,323	59,557	59,846	60,238	60,587	60,975	**61,412**	**61,858**	**62,309**
미국	282,194	285,112	287,888	290,448	293,192	295,896	298,755	301,621	**303,598**	**306,272**	**308,936**
EU27개회원국	482,761	483,782	484,614	486,617	488,757	491,024	492,975	495,090	**497,482**	**497,444**	**499,389**
OECD 전체	1,128,050	1,136,184	1,144,135	1,151,981	1,159,853	1,167,527	1,175,228	1,183,167	**1,186,728**	**1,192,901**	**1,198,902**
전세계	6,124,123	6,202,979	6,281,209	6,359,055	6,436,826	6,514,751	6,592,900	6,671,226	**6,749,678**	**6,828,155**	**6,906,558**

주) - : 결측치이며, 2007년 이후부터의 수치는 전망치임.

자료: OECD Factbook 2009, 2010: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 Population and migration - demographic trends - evolution of the population - Total population, Thousands.

<표 5> OECD회원국의 국가별 연간 인구증가율

(단위: %)

국가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호주	1.49	1.28	1.22	0.99	1.06	1.22	1.32	1.13	1.05	1.15
오스트리아	0.76	1	1.11	0.83	0.39	0.15	0.14	0.11	0.11	0.19
벨기에	0.3	0.37	0.41	0.39	0.31	0.21	0.2	0.24	0.21	0.23
캐나다	1.52	1.21	1.2	1.11	1.11	1.05	1.05	1	0.84	0.82
체코공화국	-	-0.52	0.09	0.12	0.05	-0.05	-0.15	-0.11	-0.08	-0.12
덴마크	0.16	0.26	0.33	0.35	0.3	0.44	0.64	0.43	0.32	0.34
핀란드	0.44	0.55	0.56	0.49	0.43	0.38	0.33	0.3	0.27	0.23
프랑스	0.51	0.47	0.46	0.4	0.33	0.32	0.31	0.31	0.33	0.47
독일	0.87	0.73	0.76	0.66	0.35	0.29	0.29	0.15	0.02	0.06
그리스	0.7	0.94	1.11	0.92	0.84	0.77	0.7	0.63	0.54	0.44
헝가리	-1.03	-0.01	-0.04	-0.11	-0.14	-0.14	-0.17	-0.2	-0.23	-0.28
아이슬란드	0.81	1.25	1.22	1.03	0.84	0.52	0.58	0.74	1.06	1.24
아일랜드	-0.11	0.57	0.82	0.55	0.33	0.43	0.69	1.05	1.06	1.04
이태리	0.08	0.07	0.06	0.06	0.02	-	0.03	0.05	0.03	0.02
일본	0.33	0.4	0.38	0.3	0.26	0.24	0.23	0.24	0.25	0.16
한국	0.99	0.99	1.04	1.02	1.01	1.01	0.96	0.94	0.72	0.71
룩셈부르크	1.26	1.35	1.34	1.35	1.37	1.42	1.37	1.26	1.25	1.36
멕시코	1.96	1.92	1.87	1.8	1.71	1.62	1.53	1.45	1.39	1.38
네덜란드	0.69	0.79	0.76	0.7	0.6	0.5	0.46	0.52	0.62	0.67
뉴질랜드	0.97	3.1	1.05	1.15	1.34	1.47	1.6	1.32	0.89	0.53
노르웨이	0.34	0.48	0.58	0.6	0.57	0.52	0.51	0.54	0.6	0.69
폴란드	0.18	0.21	0.17	0.12	0.08	0.06	0.04	0.01	-0.02	-0.04
포르투갈	-0.22	-0.15	0.02	0.13	0.22	0.26	0.27	0.33	0.38	0.42
슬로바키아	0.41	-0.27	0.44	0.34	0.43	0.3	0.19	0.18	0.14	0.08
스페인	0.15	0.23	0.33	0.31	0.27	0.23	0.23	0.26	0.35	0.52
스웨덴	0.78	0.68	0.59	0.58	0.71	0.53	0.16	0.06	0.06	0.08
스위스	0.98	1.26	1.16	0.91	0.8	0.67	0.44	0.24	0.3	0.48
터키	2.3	2.09	1.96	1.92	1.89	1.86	1.85	1.83	1.8	1.72
영국	0.28	0.35	0.25	0.22	0.26	0.28	0.24	0.26	0.28	0.36
미국	1.14	1.35	1.4	1.33	1.23	1.2	1.17	1.21	1.18	1.15
EU27개회원국	0.32	0.34	0.27	0.35	0.25	0.2	0.18	0.16	0.48	0.15
OECD 전체	0.85	0.9	0.91	0.85	0.79	0.76	0.74	0.72	0.69	0.7
전세계	1.69	1.64	1.59	1.55	1.51	1.48	1.44	1.41	1.38	1.35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호주	1.2	1.36	1.23	1.24	1.17	1.33	1.49	1.53	**-**	**1.09**	**1.07**
오스트리아	0.24	0.39	0.51	0.42	0.7	0.72	0.59	0.4	**0.27**	**0.33**	**0.36**
벨기에	0.24	0.34	0.45	0.42	0.43	0.55	0.66	0.74	**0.63**	**0.71**	**0.72**
캐나다	0.94	1.08	1.13	0.97	1.01	0.99	1.04	1	**0.36**	**0.82**	**0.81**
체코공화국	-0.1	-0.47	-0.23	0.01	0.05	0.27	0.32	0.55	**-0.59**	**0.09**	**0.08**
덴마크	0.34	0.33	0.36	0.24	0.26	0.27	0.34	0.42	**0.29**	**0.29**	**0.27**
핀란드	0.21	0.23	0.24	0.24	0.29	0.34	0.38	0.43	**0.34**	**0.38**	**0.37**
프랑스	0.64	0.69	0.69	0.67	0.63	0.58	0.58	0.58	**0.22**	**0.5**	**0.49**
독일	0.14	0.17	0.17	0.06	-0.02	-0.06	-0.11	-0.16	**0.64**	**0.04**	**0.03**
그리스	0.32	0.3	0.34	0.33	0.35	0.38	0.4	0.4	**0.22**	**0.31**	**0.28**
헝가리	-0.26	-0.23	-0.28	-0.29	-0.22	-0.2	-0.16	-0.21	**-0.15**	**-0.14**	**-0.14**
아이슬란드	1.43	1.39	0.88	0.6	1.15	1.12	2.86	2.32	**1**	**0.97**	**0.99**
아일랜드	1.28	1.52	1.82	1.6	1.64	2.19	2.56	2.34	**-2.06**	**1.15**	**1.12**
이태리	0.04	0.06	0.31	0.78	0.99	0.74	0.57	0.69	**-0.82**	**0.14**	**0.12**
일본	0.19	0.29	0.11	0.14	0.05	0.06	-	-	**-0.16**	**-0.14**	**-0.17**
한국	0.84	0.74	0.56	0.5	0.38	0.21	0.33	0.33	**0.31**	**0.29**	**0.26**
룩셈부르크	1.35	1.2	1.05	1.22	1.43	1.54	1.61	1.56	**-1.86**	**0.9**	**0.89**
멕시코	1.36	1.3	1.2	1.08	0.98	0.92	0.89	0.87	**0.84**	**0.81**	**0.79**
네덜란드	0.72	0.76	0.64	0.47	0.35	0.23	0.16	0.22	**0.05**	**0.17**	**0.19**
뉴질랜드	0.59	0.59	1.75	1.99	1.5	1.14	1.23	1.04	**0.95**	**0.98**	**0.97**
노르웨이	0.65	0.51	0.54	0.59	0.59	0.68	0.81	1.04	**1.19**	**1.19**	**1.19**
폴란드	-0.03	-0.03	-0.04	-0.1	-0.04	-0.05	-0.08	-0.04	**-0.5**	**-0.17**	**-0.17**
포르투갈	0.53	0.66	0.73	0.7	0.58	0.45	0.33	0.23	**0.11**	**0.05**	**0.01**
슬로바키아	0.1	-0.39	-0.02	-	0.07	0.09	0.07	0.12	**-0.08**	**0.07**	**0.07**
스페인	0.84	1.14	1.46	1.67	1.64	1.65	1.54	1.83	**-1.25**	**0.45**	**0.39**
스웨덴	0.16	0.27	0.33	0.37	0.39	0.4	0.56	0.74	**0.51**	**0.5**	**0.44**
스위스	0.56	0.63	0.76	0.74	0.69	0.64	0.63	0.88	**0.89**	**0.66**	**0.62**
터키	1.59	1.45	1.37	1.34	1.31	1.28	1.26	1.24	**1.21**	**1.17**	**1.14**
영국	0.34	0.39	0.36	0.39	0.48	0.66	0.58	0.64	**0.72**	**0.73**	**0.73**
미국	1.13	1.03	0.97	0.89	0.94	0.92	0.97	0.96	**0.66**	**0.88**	**0.87**
EU27개회원국	0.24	0.21	0.17	0.41	0.44	0.46	0.4	0.43	**0.48**	**-0.01**	**0.39**
OECD 전체	0.73	0.72	0.7	0.69	0.68	0.66	0.66	0.68	**0.3**	**0.52**	**0.5**
전세계	1.32	1.29	1.26	1.24	1.22	1.21	1.2	1.19	**1.18**	**1.16**	**1.15**

주) - : 결측치이며, 2007년 이후부터의 수치는 전망치임.

자료: OECD Factbook 2009, 2010: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 Population and migration - demographic trends - evolution of the population - Population growth rates, Annual growth in percentage.

○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은 저조한 반면, 노인인구비율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표 6> OECD회원국별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현황

(단위: 총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 %)

국가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호주	11.1	11.3	11.5	11.6	11.8	11.9	12	12.1	12.2	12.3
오스트리아	14.9	14.9	14.9	14.9	15	15.1	15.2	15.3	15.4	15.4
벨기에	14.9	15.1	15.3	15.5	15.7	15.9	16.1	16.4	16.5	16.7
캐나다	11.3	11.5	11.6	11.7	11.9	12	12.1	12.2	12.3	12.5
체코공화국	12.5	12.7	12.8	12.9	13.1	13.2	13.4	13.6	13.7	13.8
덴마크	15.6	15.6	15.5	15.5	15.4	15.3	15.1	15	14.9	14.9
핀란드	13.4	13.5	13.7	13.8	14	14.2	14.4	14.5	14.7	14.8
프랑스	14	14.3	14.5	14.7	14.9	15.2	15.4	15.6	15.8	15.9
독일	14.9	15	15	15.1	15.3	15.5	15.6	15.7	15.9	16.1
그리스	13.8	14	14.3	14.6	14.8	15.1	15.4	15.7	16	16.3
헝가리	13.3	13.5	13.7	13.9	14	14.2	14.4	14.6	14.7	14.9
아이슬란드	10.6	10.7	10.8	10.9	11.1	11.2	11.4	11.5	11.6	11.5
아일랜드	11.4	11.4	11.4	11.4	11.4	11.4	11.4	11.4	11.3	11.3
이태리	14.9	15.3	15.6	16	16.3	16.7	17.1	17.4	17.7	18
일본	12.1	12.6	13.1	13.5	14.1	14.6	15.1	15.7	16.2	16.7
한국	5.1	5.2	5.4	5.5	5.7	5.9	6.1	6.4	6.6	6.9
룩셈부르크	13.4	13.5	13.6	13.7	13.8	14	14.2	14.2	14.3	14.3
멕시코	4.1	4.2	4.2	4.2	4.3	4.3	4.4	4.4	4.5	4.6
네덜란드	12.8	12.9	13	13.1	13.1	13.2	13.3	13.4	13.5	13.5
뉴질랜드	11.2	11.2	11.3	11.4	11.5	11.5	11.5	11.5	11.6	11.7
노르웨이	16.3	16.3	16.2	16.1	16	15.9	15.8	15.7	15.6	15.4
폴란드	10.1	10.3	10.5	10.8	11	11.2	11.4	11.6	11.8	12
포르투갈	13.4	13.8	14.1	14.3	14.6	14.9	15.1	15.4	15.7	15.9
슬로바키아	10.3	10.4	11.2	11.3	10.7	10.9	11	11.2	11.3	11.4
스페인	13.6	13.9	14.3	14.6	14.9	15.3	15.6	16	16.3	16.6
스웨덴	17.8	17.7	17.7	17.6	17.5	17.5	17.5	17.4	17.4	17.3
스위스	14.6	14.6	14.6	14.6	14.7	14.7	14.8	15	15.1	15.2
터키	4.4	4.6	4.7	4.7	4.9	5	5.1	5.2	5.2	5.3
영국	15.7	15.8	15.8	15.8	15.8	15.8	15.9	15.9	15.9	15.8
미국	12.5	12.6	12.6	12.7	12.7	12.7	12.7	12.6	12.5	12.5
OECD 전체	11.7	11.8	12	12.1	12.2	12.4	12.5	12.7	12.8	12.9
전세계	6.1	6.1	6.2	6.3	6.4	6.5	6.5	6.6	6.7	6.8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호주	12.4	12.5	12.6	12.7	12.8	12.9	13	13.2	**13.7**	**14**	**14.3**
오스트리아	15.4	15.5	15.5	15.5	15.7	16.3	16.7	17	**17.3**	**17.5**	**17.6**
벨기에	16.8	16.9	17	17.1	17.2	17.2	17.2	17.1	**17.1**	**17.1**	**17.2**
캐나다	12.6	12.6	12.7	12.8	13	13.1	13.2	13.4	**13.6**	**13.9**	**14.1**
체코공화국	13.8	13.8	13.9	13.9	14	14.1	14.3	14.5	**14.7**	**15.1**	**15.4**
덴마크	14.8	14.8	14.8	14.9	15	15.1	15.3	15.5	**15.8**	**16.2**	**16.7**
핀란드	14.9	15.1	15.2	15.5	15.7	15.9	16.2	16.5	**16.6**	**16.9**	**17.3**
프랑스	16.1	16.2	16.2	16.3	16.4	16.4	16.4	16.5	**16.5**	**16.6**	**16.7**
독일	16.4	16.9	17.3	17.7	18.3	18.9	19.5	19.9	**20.1**	**20.3**	**20.4**
그리스	16.6	17	17.4	17.7	18	18.3	18.5	18.6	**18.6**	**18.7**	**18.9**
형가리	15.1	15.2	15.3	15.4	15.6	15.7	15.9	16.1	**16.3**	**16.5**	**16.7**
아이슬란드	11.6	11.6	11.6	11.7	11.7	11.7	11.6	11.5	**11.7**	**11.9**	**12.1**
아일랜드	11.2	11.2	11.1	11.1	11.1	11.1	10.9	10.8	**11.5**	**11.7**	**11.9**
이태리	18.3	18.6	18.9	19.1	19.3	19.6	19.8	20	**20.3**	**20.4**	**20.6**
일본	17.4	18	18.5	19.1	19.5	20.2	20.8	21.5	**22.1**	**22.8**	**23.1**
한국	7.2	7.6	7.9	8.3	8.7	9.1	9.5	9.9	**10.3**	**10.7**	**11**
룩셈부르크	14.1	13.9	14	14	14	14.1	14.1	14	**14.5**	**14.5**	**14.6**
멕시코	4.7	4.8	4.9	5	5.1	5.2	5.3	5.5	**5.6**	**5.8**	**5.9**
네덜란드	13.6	13.6	13.7	13.8	13.9	14.2	14.4	14.6	**14.9**	**15.2**	**15.5**
뉴질랜드	11.8	11.9	11.8	11.8	11.9	12	12.2	12.5	**12.6**	**12.8**	**13.1**
노르웨이	15.2	15	14.9	14.8	14.7	14.7	14.7	14.6	**14.7**	**14.8**	**15**
폴란드	12.2	12.5	12.7	12.9	13	13.2	13.3	13.4	**13.4**	**13.4**	**13.5**
포르투갈	16.2	16.4	16.6	16.7	16.9	17.1	17.2	17.3	**16.9**	**17.2**	**17.5**
슬로바키아	11.4	11.4	11.5	11.5	11.6	11.7	11.8	11.9	**12.4**	**12.6**	**12.8**
스페인	16.8	16.9	16.9	16.9	16.8	16.7	16.7	16.6	**17**	**17.2**	**17.4**
스웨덴	17.3	17.2	17.2	17.2	17.2	17.3	17.3	17.4	**17.7**	**18**	**18.4**
스위스	15.3	15.5	15.6	15.7	15.8	15.9	16.1	16.3	**16.5**	**16.8**	**17.1**
터키	5.4	5.4	5.5	5.6	5.7	5.9	6	6	**6.1**	**6.2**	**6.3**
영국	15.8	15.9	15.9	16	16	16	16	16	**16.2**	**16.3**	**16.5**
미국	12.4	12.4	12.4	12.4	12.4	12.4	12.5	12.6	**12.7**	**12.9**	**13**
OECD 전체	13	13.2	13.3	13.5	13.6	13.8	14	14.2	**14.4**	**14.6**	**14.8**
전세계	6.9	7	7.1	7.2	7.2	7.3	7.4	7.5	**7.5**	**7.6**	**7.7**

주) - : 결측치이며, 2007년 이후부터의 수치는 전망치임.

자료: OECD Factbook 2009: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 Population and migration - Elderly population - Ageing societies in percentage.

○ OECD회원국들의 총 근로가능인구대비 65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다음과 같음

—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 비율(19.1%)은 다른 OECD회원국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 현재로서는 우려할 수준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 2020년 이래로 그 증가속도가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노년층의 급속한 근로감소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감소와 사회적 부담의 확대가 우려되고 있음

<표 7> OECD회원국의 국가별 비경제활동 노인인구비율 현황

(단위: 총 근로가능인구대비 65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

국가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호주	24.8	25.3	**27.2**	**31.2**	**35.3**	**39.8**	**44.2**
오스트리아	32.1	31.7	**34.1**	**36.4**	**39.7**	**44.8**	**51.3**
벨기에	38.9	39.4	**40**	**44.1**	**49.3**	**56.1**	**63.5**
캐나다	22.5	22.6	**24.6**	**28.6**	**33.7**	**39.2**	**44.6**
체코공화국	27.4	27.9	**30.7**	**36.3**	**41.9**	**45.6**	**49.5**
덴마크	28.5	29	**32.2**	**37.6**	**41.7**	**46.5**	**52.2**
핀란드	29.9	32	**35.5**	**43.9**	**51.1**	**57.4**	**62.6**
프랑스	36.2	37.1	**37.9**	**43.1**	**47.6**	**52.1**	**56.8**
독일	34.5	37.3	**40.3**	**42.8**	**47.4**	**53.4**	**62.1**
그리스	45.1	40.6	**41.9**	**44.5**	**47.9**	**52.4**	**58.3**
헝가리	37	37.6	**39.3**	**42.7**	**48.8**	**52.9**	**53.9**
아이슬란드	20.2	20.9	**22**	**24.7**	**28.6**	**33.2**	**37.5**
아일랜드	24.3	22.9	**24.2**	**27.2**	**30.5**	**34.2**	**38.2**
이태리	42.7	45.9	**48.5**	**52.6**	**56.7**	**62.2**	**71**
일본	32.2	38.3	**46.4**	**55.2**	**61.2**	**64.8**	**68.6**
한국	15.3	19.1	**22.8**	**26.7**	**32.1**	**41.3**	**51.8**
룩셈부르크	32.3	30.1	**31**	**33.3**	**36.6**	**41.9**	**46.4**
멕시코	13.5	15.6	**16.9**	**18.1**	**20.4**	**23.2**	**27**
네덜란드	25.1	26.1	**29.3**	**34.8**	**39.5**	**44.9**	**50.3**
뉴질랜드	22.2	21.7	**23.6**	**27.2**	**31.3**	**36.1**	**41.5**
노르웨이	29.4	28.3	**30.1**	**33.9**	**37.5**	**41.4**	**45.4**
폴란드	28.1	30.1	**30.7**	**36.4**	**44.3**	**52**	**57.1**
포르투갈	32	32.4	**32.7**	**35.1**	**37.5**	**41**	**45.5**
슬로바키아	23.8	23.6	**25.5**	**29.1**	**35.6**	**42.5**	**48.4**
스페인	36.7	34	**35.2**	**38.2**	**42**	**47.5**	**54.6**
스웨덴	34.3	32.9	**35.5**	**39.7**	**42.4**	**44.7**	**47.1**
스위스	14.7	28.2	**30.3**	**33.2**	**36.2**	**40.4**	**45.7**
터키	15.6	17.1	**18.4**	**19.8**	**22.9**	**27**	**32**
영국	30.8	31	**33.2**	**37.9**	**41.7**	**45.9**	**51.1**
미국	23.5	23.5	**26**	**30.4**	**35.9**	**41.8**	**46.5**
OECD 전체	27.2	28.7	**31.3**	**35.4**	**39.8**	**44.6**	**49.7**

주) - : 2010년 이후부터의 수치는 전망치임.

자료: OECD Factbook 2009: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 Population and migration - Elderly population - Ageing societies in percentage.

○ OECD회원국들의 노인부양비 자료는 UN(2008)의「세계인구전망: 2008개정 인구 데이터베이스(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08 Revision Population Database)」자료를 통해 비교가능

○ UN(2008)에서는 1950년부터의 세계 각국의 국가별 및 대륙별 노인부양비 및 아동부양비 수치를 산정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의 5년 단위 전망치도 제시하고 있음

<표 8> OECD회원국의 국가별 노인부양비 측정치 및 전망치

(단위:부양연련층100명당부양해야하는노년부양비율(명))

국가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호주	17	18	19	19	**21**	**24**	**27**	**30**	**34**	**36**	**38**	**39**	**40**
오스트리아	22	23	23	24	**26**	**28**	**30**	**34**	**40**	**46**	**49**	**50**	**52**
벨기에	22	24	26	26	**26**	**29**	**32**	**36**	**41**	**44**	**46**	**46**	**46**
캐나다	17	18	18	19	**20**	**23**	**27**	**32**	**37**	**39**	**41**	**42**	**43**
체코공화국	19	19	20	20	**22**	**26**	**30**	**32**	**33**	**35**	**40**	**45**	**48**
덴마크	23	23	22	23	**26**	**29**	**32**	**34**	**37**	**40**	**42**	**42**	**40**
핀란드	20	21	22	24	**26**	**32**	**36**	**40**	**43**	**44**	**43**	**44**	**44**
프랑스	22	24	25	25	**26**	**30**	**34**	**37**	**41**	**44**	**46**	**47**	**47**
독일	22	23	24	28	**31**	**32**	**35**	**40**	**48**	**55**	**57**	**58**	**59**
그리스	20	23	24	27	**27**	**29**	**32**	**35**	**38**	**43**	**48**	**54**	**57**
헝가리	20	21	22	23	**24**	**26**	**29**	**31**	**31**	**33**	**36**	**42**	**44**
아이슬란드	17	17	18	18	**17**	**19**	**22**	**26**	**30**	**34**	**38**	**41**	**45**
아일랜드	19	18	17	16	**17**	**19**	**21**	**23**	**25**	**28**	**32**	**37**	**41**
이태리	22	25	27	30	**31**	**34**	**36**	**39**	**44**	**51**	**57**	**62**	**62**
일본	17	21	25	30	**35**	**43**	**48**	**50**	**53**	**57**	**65**	**71**	**74**
한국	7	8	10	13	**15**	**18**	**22**	**28**	**36**	**44**	**52**	**57**	**63**
룩셈부르크	19	21	21	21	**21**	**21**	**22**	**25**	**28**	**31**	**33**	**33**	**34**
멕시코	8	8	9	9	**10**	**11**	**13**	**15**	**18**	**22**	**28**	**32**	**36**
네덜란드	19	19	20	21	**23**	**27**	**31**	**35**	**40**	**44**	**46**	**45**	**44**
뉴질랜드	17	18	18	18	**19**	**22**	**25**	**29**	**33**	**36**	**37**	**37**	**39**
노르웨이	25	25	23	22	**23**	**25**	**28**	**31**	**33**	**37**	**39**	**40**	**40**
폴란드	16	17	18	19	**19**	**22**	**27**	**32**	**35**	**36**	**39**	**44**	**52**
포르투갈	20	22	24	25	**27**	**29**	**31**	**35**	**39**	**44**	**49**	**55**	**59**
슬로바키아	16	16	16	16	**17**	**19**	**23**	**27**	**30**	**32**	**36**	**42**	**49**
스페인	20	22	25	24	**25**	**27**	**29**	**32**	**36**	**42**	**48**	**56**	**59**
스웨덴	28	27	27	26	**28**	**32**	**34**	**36**	**37**	**39**	**40**	**40**	**41**
스위스	21	22	23	24	**26**	**28**	**31**	**35**	**40**	**44**	**45**	**45**	**45**
터키	7	7	8	9	**9**	**10**	**11**	**13**	**15**	**18**	**21**	**25**	**29**
영국	24	25	24	24	**25**	**28**	**29**	**31**	**34**	**36**	**37**	**37**	**38**
미국	19	19	19	19	**19**	**22**	**25**	**29**	**32**	**33**	**34**	**34**	**35**
브라질	7	8	8	9	**10**	**12**	**14**	**16**	**20**	**23**	**26**	**31**	**36**

주) - : 1. 2008년 개정자료 기준이므로, 2010년부터의 수치는 전망치임.

2. 노인부양비: 부양연령층(15~64세) 인구와 피부양 노인연령층(65세 이상) 인구비임(즉 부양연령층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부양 비율을 의미).

$$\text{노인부양비} = \frac{65\text{세이상인구}}{15-64\text{세인구}} \times 100.$$

자료: UN(2008),「세계인구전망: 2008개정 인구 데이터베이스(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8 Revision Population Database)」의 Dependency ratios의 각 국가별 자료를 재구성.

○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는 1990년의 경우 7명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 2000년 10명, 2015년 1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30년 36명 및

2050년 63명으로 급속한 노인부양비의 증가가 전망되고 있음

○ 이러한 노인부양비의 빠른 상승은 향후 노인복지 및 소득보장을 위한 재원마련 및 정책방안 등과 같은 국가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3. OECD회원국의 자영업자 비중 비교

○ 총 취업자대비 자영업자의 비중은 국내의 경우 2008년 기준 전체 취업자대비 31.3%를 차지하고 있어,

— 터키(39.0%), 그리스(35.1%), 멕시코(33.9%)에 이어 OECD 회원국가 중 4위의 높은 순위를 기록함

—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점진적으로 소폭 하락하고 있으나, 그 절대적 규모면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수치는 미국 7.0%, 영국 13.4%, 일본 13.0% 등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을 뿐 아니라, OECD 평균인 15.8%와 비교해도 약 두 배에 가까운 높은 수치임

○ 임금근로자에 비해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워 과세 및 명확한 경제활동 상태 및 경제수준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은 우리 경제의 투명성 제고에 있어서도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

<표 9> OECD회원국의 국가별 자영업자 비율자료(전체)

(단위: 총 취업자대비 %)

국가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호주	15.1	15.6	16.1	16.5	15.9	15.4	14.8	15.1	14.6	14.5
오스트리아	14.2	13.9	13.4	13.1	13.8	14.4	14	13.6	13.7	13.4
벨기에	18.1	18.3	18.4	18.9	18.9	18.8	18.8	18.6	18.2	17.3
캐나다	9.5	9.8	10.1	10.7	10.7	10.6	11.1	11.4	11.7	11.3
체코공화국	-	-	-	9.4	10.6	12	12.2	12.4	13.8	14.5
덴마크	11.7	10.9	10.8	10.8	10	9.6	9.5	9.1	9.4	9.1
핀란드	15.6	15.3	15.7	16	16.3	15.6	15.3	14.9	14.3	14
프랑스	13.2	12.7	12.2	11.7	11.3	10.8	10.4	10.1	9.8	9.5
독일	-	9.8	10.1	10.4	10.6	10.7	10.8	10.9	11	10.8
그리스	47.7	46.9	47.4	46.7	46.7	46.1	45.7	45.2	43.6	42.2
헝가리	-	-	20.4	18.1	17.8	18	18.1	17.4	16.1	15.7
아이슬란드	-	20.3	19.3	18	18.4	19.7	18.2	17.7	17.9	17.7
아일랜드	24.8	23.4	23.9	23.4	22.8	22.2	20.8	20.8	20.2	19.2
이태리	28.7	28.6	28.6	28.9	29	29.3	29.3	29.1	29.1	28.6
일본	22.3	21.2	20.2	19.1	18.6	18.3	17.7	17.5	17.3	17.2
한국	39.5	37.3	37.3	37.9	37.1	36.8	36.7	36.8	38.3	37.6
룩셈부르크	9.1	8.6	8.5	8.3	8.4	8.4	8.3	8.2	8	7.7
멕시코	31.9	44	43.9	43.8	43.7	41.2	40.1	40.9	38.6	38
네덜란드	11.6	11.2	11.1	11.6	12.3	12.4	12.5	12.6	11.8	11.3
뉴질랜드	19.7	20.4	21.2	21.1	21.1	20.9	20.9	20	20.4	21.2
노르웨이	11.3	10.8	10.3	10.2	9.7	9.3	8.7	8.2	8.3	7.8
폴란드	27.2	30	30.2	31.2	30.9	29.7	29.5	28.3	27.2	26.9
포르투갈	29.4	30.6	25.7	26.3	27.6	27.9	28.6	28.9	28.1	27
슬로바키아	-	-	-	-	6.3	6.5	6.4	6.3	6.8	7.7
스페인	25.8	25.1	25.5	25.9	25.8	25.2	24.7	23.5	22.7	21.3
스웨덴	9.2	9.1	9.8	10.8	11.1	11.2	11	10.8	10.6	10.6
스위스	-	11.7	11.8	12.7	12.7	12.8	13.4	13.9	14	14
터키	61	62	60.3	57.8	59.1	58.5	57.2	55.4	55.4	55
영국	15.1	14.6	15.7	15.6	15.7	15.6	14.9	14.5	13.7	13.2
미국	8.8	9	8.7	8.8	8.8	8.5	8.4	8.2	7.9	7.7
EU27개 회원국	-	-	-	-	-	17.9	17.8	17.6	17.2	16.9
OECD 평균	18.5	20	19.9	19.8	19.8	19.4	19.2	19	18.6	18.3
브라질	-	-	38.2	37.9	-	38.6	37	37.8	37.7	38.5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호주	14.1	13.8	13.9	13.4	13.2	12.9	12.9	12.9	11.7
오스트리아	13.1	13.2	13.1	12.8	12.8	13.3	13.6	14.4	13.8
벨기에	14	14.1	14.1	14.1	14.1	13.8	13.8	13.8	14.2
캐나다	10.6	9.9	9.8	9.8	9.5	9.4	9.1	9.3	9.1
체코공화국	15.2	15.2	16.1	17.3	16.9	16.1	16.2	16.2	16.2
덴마크	8.7	8.9	9	8.8	8.7	8.7	8.9	8.9	8.8
핀란드	13.7	13	12.9	12.9	12.8	12.7	12.9	12.6	12.8
프랑스	9.2	8.9	8.8	8.8	8.9	9	9	9	9.0
독일	11	11.1	11.2	11.4	12.1	12.4	12.2	12	11.7
그리스	41.9	39.9	39.3	39	36.6	36.4	36.3	35.9	35.1
헝가리	15.2	14.5	13.9	13.5	14.3	13.8	12.8	12.5	12.3
아이슬란드	18	16.9	16.6	13.9	14.1	14.2	14.7	13.7	12.7
아일랜드	18.9	18.1	18.1	17.7	18	17.4	16.3	16.8	17.3
이태리	28.5	28.2	27.7	27.5	28.4	27	26.7	26.4	25.7
일본	16.6	15.9	15.4	15.1	14.9	14.7	13.8	13.4	13.0
한국	36.8	36.7	36	34.9	34	33.6	32.8	31.8	31.3
룩셈부르크	7.4	7.1	6.9	6.8	6.7	6.5	6.3	6.1	5.9
멕시코	36	36.4	36.8	36.6	36.5	35.5	34.5	34.3	33.9
네덜란드	11.2	11.6	11.7	11.4	12.1	12.4	12.4	12.4	13.2
뉴질랜드	20.7	19.9	19.4	19.4	19.2	18.5	17.7	17.3	17.3
노르웨이	7.4	7.2	7.1	7.3	7.4	7.4	8.5	8	7.8
폴란드	27.4	28	28.1	27.3	26.7	25.8	24.4	23.5	22.9
포르투갈	26.1	26.8	26.6	26.7	25.9	25.1	24.1	24.2	24.1
슬로바키아	7.9	8.4	8.6	9.7	12	12.6	12.6	12.9	13.8
스페인	20.2	19.8	19	18.3	18.1	18.2	17.9	17.7	17.7
스웨덴	10.3	10	9.8	9.6	9.9	9.8	10	10.6	10.4
스위스	13.2	13	12.5	12	11.4	11.2	11.1	11.5	11.1
터키	51.4	52.8	50.2	49.4	49.2	45.8	43.5	41.9	39.0
영국	12.8	12.8	12.7	13.2	13.6	13.4	13.5	13.8	13.4
미국	7.4	7.4	7.2	7.6	7.6	7.5	7.4	7.2	7.0
EU27개 회원국	16.7	16.6	16.5	16.6	16.4	16.3	16	15.9	16.5
OECD 평균	17.6	17.5	17.3	17.2	17.3	16.9	16.5	16.1	15.8
브라질	-.	35.6	35.7	35.6	34.9	34.9	34	32.9	31.9

주) - : 결측치임.

자료: OECD Factbook 2010: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 Labour market - employment - self-employment Self-employment rates: total As a percentage of total civilian employment.

○ 참고로, 총 취업자대비 자영업자의 비중을 성별로 분류하여 측정한 결과에서도 국내 남성 및 여성의 자영업자 비율은 역시 높은

비중을 보임

○ 먼저 남성의 경우 2008년 현재 31.9%로, 그리스 37.8%, 터키 36.1%, 멕시코 33.5%에 이어 4위를 기록

<표 10> OECD회원국의 국가별 자영업자 비율자료(남성)

(단위: 총 취업자대비 %)

국가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호주	17.2	17.9	18.5	19	18.3	17.9	17.2	17.4	17.1	17.1
오스트리아	-	-	-	-	-	-	14.1	14	14.2	14
벨기에	18.5	18.8	18.9	19.4	19.6	19.7	19.9	19.9	19.6	18.2
캐나다	10.8	11.4	11.6	12.1	12	11.8	12.2	12.5	12.9	12.5
체코공화국	-	-	-	12	13.7	15.1	15.7	15.9	17.3	18.4
덴마크	-	-	-	-	-	12.4	12.4	-	12.4	12.2
핀란드	19.5	19.6	20.5	21	21.1	20.2	19.7	19	18.2	18.1
프랑스	14.9	14.5	14.1	13.8	13.3	12.9	12.6	12.3	11.9	11.6
독일	-	11.1	11.5	11.9	12.3	12.5	12.7	13	13.1	13.2
그리스	47.5	47.7	48.2	47.7	47.6	47.4	46.9	46.8	44.9	43.8
헝가리	-	-	23.9	21.9	21.9	22.1	22.6	21.5	19.9	19.5
아이슬란드	-	27.1	25.6	24.3	25.6	27.6	23.9	23.2	23.9	23.7
아일랜드	32.3	30.4	31.5	30.9	30.3	29.9	28.2	28.1	27.4	26.1
이태리	31.1	31.2	31.3	31.4	31.6	32.3	32.5	32.4	32.5	32.1
일본	18.9	18	17.3	16.6	16.4	16.1	15.8	15.9	15.6	15.8
한국	36.9	34.7	34.9	35.4	34.7	34.3	34.4	34.7	36.3	36.1
멕시코	35.5	46.8	45.9	45.1	44.2	41.6	40.6	40.8	38.7	38.1
네덜란드	-	-	-	-	-	13.7	13.8	14	13.3	12.7
뉴질랜드	24.7	25.2	26.2	26.2	25.7	25.4	25.8	24.9	25.5	26.4
노르웨이	14.6	14.3	13.6	13.2	12.8	12.1	11.4	10.9	11	10.3
폴란드	-	-	31.2	32.2	32.4	31.4	31.1	30	29.1	29.2
포르투갈	-	-	26.8	27.3	28.9	29.9	30.3	30	29.3	28.2
슬로바키아	-	-	-	-	8.6	8.7	8.7	8.4	9.1	10.4
스페인	25.8	25.4	26.1	26.8	26.9	26.2	26.1	25.3	24.4	23.2
스웨덴	12.9	13	14.3	15.5	15.7	15.7	15.6	15.3	14.8	14.8
스위스	-	11.5	11.4	12.4	12.5	13.3	14	14.1	14.6	14.6
터키	53.5	54.2	53.3	52.8	52.7	52.1	50.5	49.8	49.8	48.9
영국	19.9	19.4	20.4	20.3	20.6	20.6	19.6	19.1	18	17.7
미국	5.6	5.7	5.4	5.4	6	5.9	5.9	5.8	5.5	5.4
EU27개 회원국	-	-	-	-	-.	20.8	20	19.8	19.6	19.2
OECD 평균	17.9	19.8	20.2	20.2	20.3	19.9	19.9	19.9	19.5	19.2
브라질	-	-	37.9	37.7	-	38.8	38.2	39	39.2	40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호주	16.7	16.6	16.6	16.2	15.9	15.5	15.5	15.5	14.1
오스트리아	13.9	14.1	14.2	14	14.8	15.3	15.4	16.2	15.7
벨기에	24.2	24.4	24.6	24.8	24.9	24.5	24.5	24.5	17.0
캐나다	11.7	11.2	10.8	11	10.8	10.5	10.2	10.5	10.2
체코공화국	19.1	19.1	20.3	21.7	21.5	20.4	20.3	20.5	20.3
덴마크	11.7	12.4	12.5	11.9	11.9	11.6	11.7	12	12.1
핀란드	17.8	16.8	16.7	16.7	16.7	16.7	17.1	16.8	16.8
프랑스	11.3	11	10.9	10.9	11	11.2	11.2	11.2	11.6
독일	13.4	13.4	13.6	14	14.9	14.9	14.7	14.4	14.1
그리스	43.7	42.1	41.4	41	39.4	39.1	39.1	39	37.8
헝가리	19.2	18.1	17.3	17.1	17.9	17.3	16	15.3	15.5
아이슬란드	24	23.1	23.6	19.2	19.3	20.1	20.8	18.8	17.1
아일랜드	25.8	25.2	25.6	25	25.3	24.7	23.3	24.2	24.9
이태리	32.3	32.2	31.7	31.5	32.4	31.2	30.8	30.6	30.1
일본	15.5	15	14.8	14.7	14.7	14.5	13.9	13.6	13.4
한국	35.7	36	35.7	35.3	34.4	34	33.2	32.3	31.9
멕시코	36.4	36.9	36.9	36.5	36.2	35.7	34.4	34.1	33.5
네덜란드	12.6	12.9	13.4	13.6	14.1	14.6	14.6	14.6	15.8
뉴질랜드	25.9	24.9	24.5	24.6	24	23	22	21.2	21.4
노르웨이	9.8	9.4	9.7	10.1	10.3	10.2	11.7	11.1	10.9
폴란드	29.5	29.9	30.4	29.8	28.9	27.9	26.6	25.5	25.0
포르투갈	27.5	28.4	28.1	28.3	27.8	26.7	25.5	26	25.6
슬로바키아	10.8	11.3	11.8	13	16	17.2	16.7	17.2	18.4
스페인	22.2	21.9	21.3	20.7	20.5	20.8	20.7	20.6	20.9
스웨덴	14.5	14.1	14	13.9	14.3	14	14.2	14.9	14.5
스위스	13.9	13.7	13	12.4	11.9	11.7	11.5	11.7	11.6
터키	46.5	47.5	45.1	44.5	45	42.2	40.1	38.5	36.1
영국	16.7	17	17	17.6	18.3	17.6	17.7	18	17.8
미국	5.3	5.3	5.2	5.4	5.3	5.1	5.1	5.1	8.3
EU27개 회원국	19.1	19.1	19.2	19.6	19.4	19.3	19	18.9	19.7
OECD 평균	18.7	18.7	18.5	18.5	18.6	18.1	17.7	17.4	18.0
브라질	-	37.4	37.2	37.4	36.7	36.2	35.5	34.6	33.4

주) - : 결측치임.

자료: OECD Factbook 2009: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 Labour market - employment - self-employment Self-employment rates: total As a percentage of total civilian employment.

○ 여성의 경우에도 2008년 현재 30.4%로 터키의 46.8%, 멕시코의 34.7%, 그리스의 30.9%에 이어 4위를 기록

<표 11> OECD회원국의 국가별 자영업자 비율자료(여성)

(단위: 총 취업자대비 %)

국가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호주	12.1	12.6	12.8	13.1	12.6	12.1	11.6	12.2	11.4	11.1
오스트리아	-	-	-	-	-	-	13.8	13.2	13.1	12.6
벨기에	17.5	17.7	17.7	18.1	17.7	17.6	17.4	16.9	16.2	16
캐나다	7.8	7.8	8.3	9	9.2	9.1	9.7	10.2	10.4	9.8
체코공화국	-	-	-	6.2	6.7	8	7.9	8	9.2	9.6
덴마크	-	-	-	-	-	6.3	6.1	-	5.8	5.6
핀란드	11.3	10.9	10.7	10.8	11.1	10.5	10.5	10.2	10	9.5
프랑스	10.9	10.3	9.7	9.2	8.7	8.2	7.8	7.5	7.2	6.9
독일	-	8	8.1	8.2	8.3	8.3	8.1	8.1	8.2	7.8
그리스	48	45.4	45.9	44.9	45.2	43.8	43.7	42.4	41.3	39.3
헝가리	-	-	16.4	13.7	13	13	12.7	12.4	11.6	11.1
아이슬란드	-	12	11.8	10.7	10.4	10.6	11.5	11.4	11.2	10.8
아일랜드	11	10.2	10.3	10.8	10.1	9.7	9.6	9.5	9.6	9.2
이태리	24.1	23.8	23.6	24.3	24.2	23.8	23.6	23.2	23	22.6
일본	27.4	25.7	24.4	22.8	22	21.5	20.4	19.9	19.8	19.3
한국	43.2	41.1	41	41.7	40.7	40.4	40.1	39.8	41.4	39.7
멕시코	20.4	37.7	39.3	41	42.6	40.5	38.9	41.3	38.4	37.8
네덜란드	-	-	-	-	-	10.7	10.6	10.7	9.8	9.4
뉴질랜드	13.3	14.3	14.8	14.7	15.3	15.3	14.9	14.1	14.3	15
노르웨이	7.4	6.8	6.5	6.5	5.8	6.1	5.7	5.1	5.3	5
폴란드	-	-	29	29.9	29.2	27.7	27.5	26.3	25	24.1
포르투갈	-	-	24.2	25	26	25.5	26.5	27.5	26.6	25.6
슬로바키아	-	-	-	-	3.4	3.8	3.5	3.8	4	4.4
스페인	25.9	24.7	24.4	24.2	23.6	23.2	21.9	20.2	19.6	17.8
스웨덴	5.2	5.1	5.1	5.8	6.3	6.4	6	5.9	6	6.1
스위스	-	12	12.4	13.1	13	12	12.6	13.5	13.2	13.2
터키	78.4	79.9	76.7	72.3	74.6	74	73.6	70	69.9	70
영국	8.9	8.6	10.1	10	9.8	9.6	9.3	9.1	8.7	8
미국	6.7	6.8	6.4	6.4	7.1	6.9	6.9	6.7	6.4	6.2
EU27개 회원국	-	-	-	-	-	13.8	14.8	14.5	14.1	13.7
OECD 평균	16	17.2	17.5	17	17.4	17	16.8	16.7	16.2	15.8
브라질	-	-	38.6	38.1	-	38.4	35.3	36.1	35.5	36.3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호주	10.7	10.3	10.4	10	9.9	9.8	9.8	9.8	8.9
오스트리아	12.2	12.1	11.8	11.3	10.3	10.9	11.3	12.3	11.5
벨기에	33.1	33.6	33.3	32.9	32.4	31.6	31.6	31.6	10.8
캐나다	9.2	8.4	8.5	8.4	8	8.1	7.9	8	7.8
체코공화국	10.2	10.2	10.7	11.5	10.9	10.4	10.9	10.5	10.6
덴마크	5.5	4.9	5.2	5.3	5.2	5.3	5.8	5.5	5.1
핀란드	9.2	8.9	8.7	8.8	8.5	8.5	8.4	8.2	8.6
프랑스	6.7	6.4	6.4	6.4	6.4	6.3	6.3	6.3	6.2
독일	7.9	8.3	8.2	8.4	8.8	9.4	9.3	9.2	8.9
그리스	38.9	36.1	35.7	35.6	32.1	32	32.1	31.1	30.9
헝가리	10.5	10.2	10	9.2	10.1	9.9	9.1	9.2	8.6
아이슬란드	11	9.7	8.7	8	8.3	7.4	7.6	7.6	7.4
아일랜드	9	8	7.8	7.9	7.9	7.5	6.7	7.1	7.5
이태리	22	21.6	21.2	21.1	22.2	20.6	20.5	20	19.3
일본	18.3	17.2	16.3	15.8	15.3	14.9	13.7	13.1	12.4
한국	38.4	37.6	36.5	34.5	33.4	32.9	32.3	31.2	30.4
멕시코	35.3	35.6	36.7	36.7	37.1	35.3	34.6	34.8	34.7
네덜란드	9.4	9.8	9.5	8.6	9.6	9.7	9.7	9.7	10.1
뉴질랜드	14.7	14	13.3	13.2	13.6	13.4	12.5	12.7	12.7
노르웨이	4.8	4.7	4.2	4.3	4.3	4.5	4.9	4.7	4.5
폴란드	24.8	25.7	25.4	24.3	24.1	23.1	21.8	20.9	20.4
포르투갈	24.4	24.9	24.7	24.8	23.5	23.3	22.4	22.1	22.4
슬로바키아	4.7	4.9	4.7	5.9	7.1	7	7.3	7.3	7.8
스페인	16.6	16.2	15.1	14.5	14.3	14.5	13.8	13.5	13.3
스웨덴	5.7	5.6	5.3	5.1	5.1	5.3	5.4	5.8	5.9
스위스	12.4	12	11.7	11.4	10.7	10.6	10.7	11.4	10.4
터키	64.7	66.8	63	61.9	60.7	56.2	53.3	51.5	46.8
영국	8.3	7.8	7.8	8.2	8.3	7.8	8	8.2	8.2
미국	6.1	6.1	5.9	6.1	6.1	5.9	6	5.8	5.6
EU27개 회원국	13.5	13.3	12.9	12.9	12.6	12.5	12.2	12.1	12.5
OECD 평균	15	14.9	14.7	14.4	14.4	14	13.6	13.4	13.0
브라질	-	33	33.5	33.1	32.5	33.1	31.8	30.8	30.0

주) - : 결측치임.

자료: OECD Factbook 2009: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 Labour market - employment - self-employment Self-employment rates: total As a percentage of total civilian employment.

4. <참고자료>

OECD(2010. 5), *Factbook 2010: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OECD(2009. 8), *Factbook 2009: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UN(2009. 5),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8 Revision - Population Database, last updated on 11-Mar-2009, http://esa.un.org/unpp.

_____(2007. 12),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6 Revision Population Database.

한국은행 보도자료(2010. 1. 26), 2009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부 록

<부표>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및 지출

(2005년 연쇄가격 기준, 계절조정계열)

(지수기준년 : 2005년) (전기대비, %)

	연간		2008[p]				2009[p]			
	2008[p]	2009[p]	1/4	2/4	3/4	4/4	1/4	2/4	3/4	4/4
국내총생산(GDP)	2.2	0.2	1.1 (5.5)	0.4 (4.3)	0.2 (3.1)	-5.1 (-3.4)	0.1 (-4.2)	2.6 (-2.2)	3.2 (0.9)	0.2 (6.0)
비 농 림 어 업	2.1	0.1	0.9	0.4	0.2	-5.2	0.1	2.8	3.2	0.2 (6.2)
농 림 어 업	5.5	1.6	5.8	0.8	0.6	-0.1	-0.1	-1.7	4.9	1.0 (2.8)
제 조 업	3.1	-1.8	1.2	1.7	0.1	-11.9	-3.4	8.9	9.8	-1.3 (12.5)
건 설 업	-2.4	1.9	-1.4	-2.2	1.1	-4.2	5.9	-0.2	-0.5	-1.4 (3.8)
서 비 스 업 [1]	2.5	1.0	0.8	0.1	0.5	-1.4	0.3	1.1	0.7	1.0 (3.1)
민 간 소 비	0.9	0.2	1.1	-0.2	0.0	-4.6	0.4	3.6	1.5	-0.1 (5.6)
정 부 소 비	4.2	4.9	1.2	1.4	1.1	1.0	3.7	1.1	-0.8	-2.9 (0.9)
설 비 투 자	-2.0	-8.9	-0.4	0.4	0.2	-14.2	-11.2	10.1	10.4	4.7 (12.9)
건 설 투 자	-2.1	3.1	-2.5	-0.3	0.1	-3.0	5.2	1.7	-2.0	0.0 (3.9)
재 고 증 감 [2]	0.7	-4.8	0.7	0.2	0.6	-3.0	-3.3	-2.1	2.8	1.0 (-1.6)
재 화 수 출	4.1	-0.6	-0.7	2.5	-0.9	-12.6	-3.4	14.7	5.2	-1.8 (14.6)
재 화 수 입	4.6	-8.5	0.1	3.0	1.2	-15.7	-6.2	7.4	8.6	-2.5 (6.7)
내 수	1.4	-4.2	1.0	0.3	0.8	-7.3	-2.6	1.3	4.1	1.0 (3.7)
국내총소득(GDI)	-1.2	2.1	-1.7	1.0	-3.3	-2.2	0.1	5.4	0.7	1.6 (8.6)

주) - : 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포함.

2. 재고증감은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기준(%p).

3. ( )내는 원계열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4. p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2010. 1. 26), 2009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II. 네덜란드의 공적연금제도

1. 제도의 변천과정

▣ 1836년 : 공무원연금제도 도입

▣ 1919년 : 노령법 제정 (보험원리)

▣ 1947년 : 노령연금비상법 제정 (잠정적 조치로서 노인들의 기초생계보장을 위함, 이후 노령연금법으로 대체)

▣ 1952년 : 연금저축법에 의해 사용자는 직역연금에 강제가입

▣ 1957년 : 일반노령연금법 (National Old Age Pensions Act, Algemene Ouderdomswet; AOW) 제정

▣ 1959년 : 유족연금 (ANW) 도입

▣ 1967년 : 피용자 장애연금 (WAO)의 도입

▣ 1998년 : AOW를 위한 국가 저축기금 (Savings Fund) 조성법 제정

▣ 2001년 : AOW 급여지출에 대한 국고보조 투입

▣ 2006년 : 피용자 장애연금 (WAO)은 WIA (Wet Werk en Inkomen naar Arbeidsvermogen)로 대체

○ 네덜란드의 연금체계는 다음의 3층으로 구분

○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은 1층의 공적연금과 2층의 직역연금에서 모두 보장 (dual system)

층 (Pillar)	내 용
1층 - 공적연금 - 강제적용	- 노령연금 (AOW) - 유족연금 (ANW) - 장애연금 (WIA) *각각 별도의 법으로 제정
2층 - 직역연금 - 단체협약	- 연금 및 저축기금에 관한 법률 (Pensions & Savings Fund Act) 및 EU연금관리지침 (Pension Directive)에 근거 - 공무원연금제도 (ABP), 산업연금기금 (BPFs), 개별기업연금 (OPfs), 직접보험제도 등
3층 - 개인연금 - 임의가입	- 가입 유인으로 세금공제혜택 부여

○ 네덜란드 연금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기초연금과 직역연금의 균형적 발전 및 두 연금체계간의 유기적 연계 (합산하여 목표 소득대체율이 70% 되도록 연계)

※ 세계은행이 제시하는 3층 다층체계 모형에 유사한 제도로 인정받고 있음

2. 적용범위

2. 1. 1층 공적 연금 체계

▣ **기초노령연금 (AOW)**

○ 가입대상은 15~64세의 모든 거주자 (국적불문)

▣ **기초유족연금 (ANW)**

○ 가입대상은 15~64세의 모든 거주자 (국적불문)

▣ **장애연금 (WIA)**

○ 가입대상 : 피용자

2. 2. 2층 직역연금제도

○ 1952년 연금저축법에 의해 사용자는 공공부문 근로자 연금, 산별 연금 혹은 개별기업연금에 강제가입

— 전체 근로자의 약 94%가 직역기업연금에 가입 (OECD, 2009)

○ 2007년에는 강제제도에서 노사 합의에 의하여 가입을 결정하도록 하는 준 강제 제도로 바뀜 (quasi-mandatory occupational schemes)

3. 재정부담

3. 1. 1층 공적 연금 체계

▣ 기초노령연금 (AOW)

○ 재원조달은 부과방식이며 보험료(17.9%, 전액 본인부담)로 충당, 2001년부터는 급여 지급 시 부족한 재정에 대해 국고보조

※ 2005년 기준 공적연금의 수입규모는 GDP의 4.6%, 국고보조 비율은 GDP의 4.1% (SVB, 2008a)

○ 보험료 부과소득 상한 : 연 €30,631(2006년 기준), 하한선 없음

▣ 기초유족연금 (ANW)

○ 부과방식이며, 보험료(소득의 1.1%)로 충당

○ 보험료 상한선 : 노령연금과 동일

▣ 장애연금 (WIA)

○ 보험료는 전액 사용자부담 (2009년 기준 보험료율 5.7%)

3. 2. 2층 직역연금제도

○ 보험료율 : 해당부문의 단체교섭에 따른 합의에 의해 결정

— 보험료는 평균적으로 임금의 약 16.1%임. (그러나 보험료는 8%~25%까지 기업연금 기금별로 격차가 매우 크며, 보험료율의 차이는 급여의 차이, 연금제도간 인구통계학적 구조의 차이에 기인)

— 보험료는 노사분담, 고용주와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67% : 33%의 비율로 기여

※ 기업연금의 총보험료는 GDP의 2.7%수준

○ 재정방식

— 2005년 현재 적립기금은 € 730 bill 으로 GDP의 144% 수준

— 완전적립방식으로 모든 연금펀드가 적립률 100% 확보하여 건전하게 운영 중

4. 급여

4. 1. 1층 공적 연금 체계

▣ 기초노령연금 (AOW)

○ 급여는 15번째 생일에서 65번째 생일까지 50년의 완전가입기간을 기준으로 보험에 기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감액률 적용(1년당 2%)

○ 급여수준 (2010 기준)

— 최저임금(minimum income) 보장 목표 (급여수준이 매년 최저임금에 연동, 과거소득에 비례하지 않음)

— 급여 수준은 연금 가입기간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유무에 의하여

결정됨

가족유무	급여수준(월)	휴가급여[2] (월)
독신	€1,052.23	€56.97
독신(18세 이하 자녀와 거주)	€1,323.93	€73.27
부부(모두 65세 이상)	각 각 €732.84	€40.69
부부(65세 미만 배우자와 거주)	€732.84 (supplementary allowance 비수급)	€40.69
부부(65세 미만 배우자와 거주)	€1,431.42 (full supplementary allowance 수급)	€81.38

▣ 기초유족연금 (ANW)

○ 수급조건

— 사망한 가입자 조건 : 사망한 배우자가 사망 당시 유족연금에 가입 중이었던 경우

— 유족 배우자 조건 : 유족이 1950년 이전에 출생했거나,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거나, 근로능력의 45%이상 상실한 경우

— 65세부터는 기초노령연금(AOW)의 급여로 대체됨

○ 급여수준 (2010 기준)

— 유족배우자의 소득과 가족상황, 고아의 연령에 따라 차등

급여 종류	급여수준(월)	휴가급여[3] (월)
유족연금	€1,104.74	€68.70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유족	€1,351.94	€88.32
고아연금(10세 미만)	€364.93	€21.98
고아연금(10세 이상 ~ 15세)	€539.00	€32.98
고아연금(16세 이상 ~ 20세)	€713.07	€43.97

2) 휴가급여는 매년 5월 한 번에 지급함
3) 휴가급여는 매년 5월 한 번에 지급함

※ 유족의 근로소득에 따라 급여액 감액(단, 근로소득 중 최저임금의 50% 및 이를 초과하는 총소득의 1/3은 감액여부 결정시 고려되지 않음)

※ 유족 배우자의 월 소득이 €2,335.74 (2010년) 이상이면 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 **장애연금 (WIA)**

○ 수급조건

— 65세 이하 근로자가 104주 동안의 치료 및 재활 이후에도 근로능력이 35% 이상 상실된 경우

○ 급여수준

— 완전장애(IVA) : 장애 직전 소득의 75%까지 지급

— 부분장애(WGA) : 장애 직전 소득의 70~75%까지 지급 (근로를 하는 경우는 소득에 따라 급여 감액)

※ 장애연금(WIA)은 2006년부터 기존의 장애연금(WAO)을 대체하였으며, 2006년 이전에 장애가 발생하여 WAO의 급여를 수급하고 있던 장애인은 WAO의 급여를 계속 수급함

※ 네덜란드의 기본적인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피용자를 대상으로 2006년 이후 수행되고 있는 WIA(장애 정도에 따라 IVA와 WGA로 나뉨), 자영자 장애연금(WAZ), 17세 이전에 장애를 입은 경우 수급할 수 있는 장애청년보조금 (Wajong-세금을 재원으로 운영)이 있음

4. 2. 2층 직역연금제도

○ 급여체계 : 대부분이 확정급여체계(DB)

○ 급여수준 : 35~40년 가입자 기준으로 공적기초연금 급여액과 합쳐 소득대체율이 70%가 되도록 설계 (프랜차이즈 제도 franchise)

— 급여산식 = 1.75~2%×생애평균소득×가입연수 - AOW 급여

※ 평균적으로 1층 제도가 32.6% 정도이고 2층이 37.40% 수준

5. 소득재분배효과

○ 기초연금(AOW)

— AOW는 보험료의 기여에 관계없이 거주조건에 의하여 수급하므로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매우 큰 제도임

— 따라서 65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은 2%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음 (OECD, 2009)

6. 기금규모 및 운용 (ABP를 중심으로)

6. 1. 전반적 내용

○ 네덜란드 경제 및 금융 산업 개요 (2008년 기준)

— 인구 및 면적: 1,640만명 / 41,548㎢

— 총고용: 873만명

(자료: 네덜란드 통계청 http://statline.cbs.nl)

— GDP: €626.0 bill (US$ 870.6 bill) / 1인당 GDP: US$ 52,673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국제통계 -> 국민계정
주: 현지통화로 환산 시 2008년 12월 대달러 유로환율 0.719 곱하여 얻음

— 자본시장 규모: €955.9 bill (1674조원) / 주식 €279.0 bill, 채권 €676.9 bill

자료: 주식시장규모는 Euronext (http://www.euronext.com), 채권시장규모는 Bank for International Settlments(http://www.bis.org)

○ 기금개요

— 연금가입자: 약 280만명(네덜란드 정부 및 교육계 종사자 대상)

— 기금규모: €173 bill (303조원, 세계 제3위 연기금)

173bill/0.719*1259.5(2008년 12월 대달러원환율)=303조원

— GDP 대비 비율: 27.6% (2008년말)

<표 12> 기금운용 현황

(단위 : 10억 유로)

	2007.12	2008.12	2009.12
개요			
Nominal Funding Ratio	140%	89.6%	104%
총적립금	216.5	172.9	208
부채	154.7	192.9	201
총 투자수익률(연간)	3.8%	-20.2%	20.2%
자산군별 투자수익률(연간)			
채권	1.9%	0.4%	12.7%
주식	5.3%	-39.4%	35.5%
부동산	-9.4%	-30.0%	13.0%
사모펀드	29.4%	-24.5%	8.4%
상품	31.0%	-46.2%	23.2%
기타	13.2%	-5.7%	10.6%
자산배분 비중			
채권	43.4%	44.8%	-6.1%
주식 및 대체투자	51.5%	48.9%	5.7%
기타	5.1%	6.3%	0.4%

자료: ABP Annual Report 2008, Press release (ABP's financial position strengthens in second half of 2009)

— 네덜란드 국내 자본시장의 협소함으로 인해 ABP의 투자는 국내외를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함.

— 네덜란드를 포함한 유로화 통화권에 대한 투자는 2009년 말 기준으로 채권은 12.7%, 주식은 35.5%를 나타냄.

○ ABP의 과거 장기 기금운용성과

— 1993년~2009년 말까지 ABP의 연평균 기금운용 수익률은 6.7%

○ ABP의 투자철학

— ABP의 기금운용 목표는 임금상승률에 대하여 100%를 보상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목표임 ("full indexation")

— 장기적으로 실질수익과 (기대치가 미달되는) 위험을 모두 감안한 후 용인되는 수준을 투자정책에서 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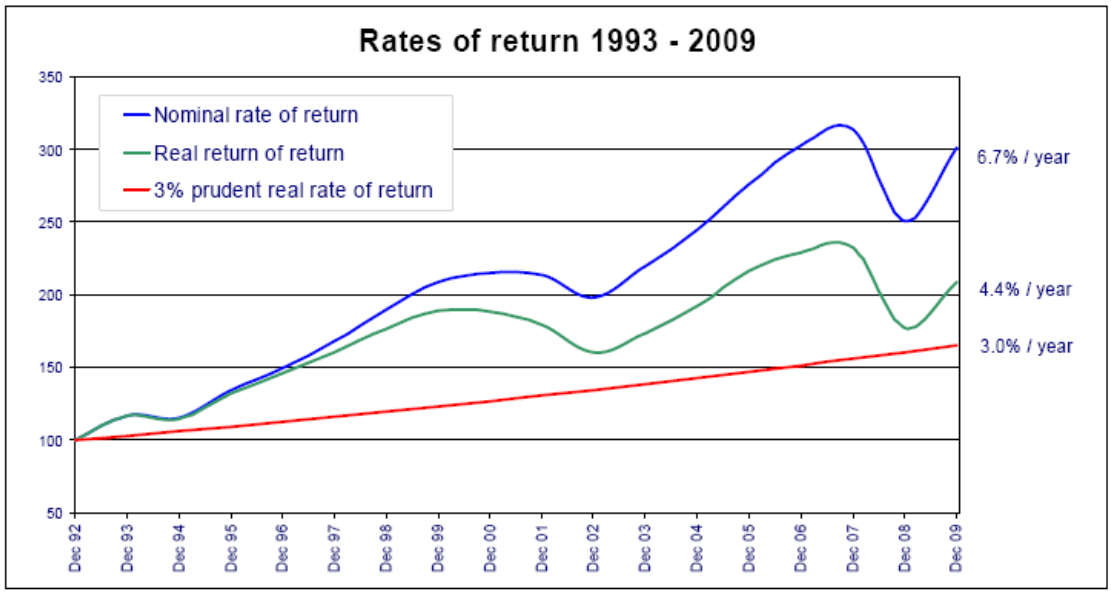

— 장기 목표수익률은 7%이며, 이는 실물자산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로서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투자다변화 : 자산, 전략, 국가 등에 대한 다변화로서 실질 투자위험을 감소시킴

— 내부 직접 운용 원칙 : 400여 명의 전문 인력 확보. 이러한 내부 직접운용을 통하여 가능한 최고 수익, 낮은 비용과 적정 위험을 구현한다고 봄

—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PGGM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공헌 및 지속가능투자(Sustainable Investment)의 원칙을 투자정책서에 명시하고 있음.

6. 2. 관리체계

▣ 전반적 감독

○ 금융감독원의 연금보험감독국(PVK)

▣ 관리운영 및 기금운용

○ 직능단체별, 기업별, 산업별 조직된 직역연기금에서 자체적인 의사결정체계를 보유함.

[그림 2] ABP의 지배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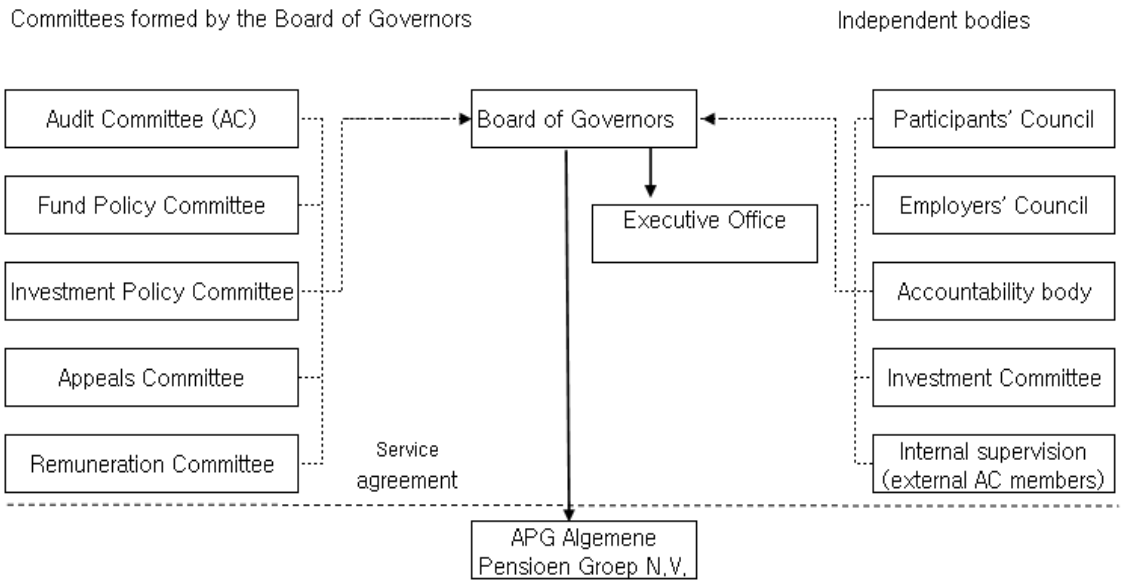

○ ABP의 지배구조는 연기금 지배, 내부감독, 공동결정, 책임의 4가지 요소로 이루어짐

○ 최고위원회(Board of Governors)

— 의장과 근로자 및 사용자 대표 각 6인 등 기금주인으로서의 대표성격을 가진 13인의 위원으로 구성

— 기금의 관리, 규정, 조항의 채택 및 수정

— 위험관리, 투자관리, 기여율 등 정책과 일치하는 기금의 관리

— APG에 대한 계약 이행 관리 감독

○ 정책수립과 공표, 관리감독, 참여자 간의 협상 등 최고위원회의 업무는 사무국(Executive office)에 의해 지원받음

○ 최고위원회에 의해 조직된 5개의 위원회는 감사, 기금정책, 투자정책, 항소, 보상 등 각 부문별 위원으로 구성

— 감사위원회 (Audit Committee): 최고위원회를 위한 준비업무를 수행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재정적 전문지식을 지원, 위험관리 체계 및 회계처리의 정확도 등을 관리 감독, 6명의 최고위원회 위원과 3명의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짐.

— 기금정책위원회 (Fund Policy Committee): 위험관리 기여율 등과 관련된 기금정책의 전략적 장기계획 준비, 의장에 의해 지명된 최고위원회의 사측대표 3명의 위원과 노측대표 3명의 위원으로 구성

— 투자정책위원회(Investment Policy Committee): 전략적 투자계획의 준비, 의장에 의해 지명된 최고위원회의 사측대표 3명의 위원과 노측대표 3명의 위원으로 구성, 정기적으로 외부 투자위원회와 의견교류

— 청원위원회 (Appeals Committee) : 기금의 조항과 규정에 관련한 의사결정 이해관계에 대해 최고위원회의 입장을 결정

— 보상위원회(Remuneration Committee) : 관리조직의 사회적 정책결정, APG Groep NV와 지분보유회사의 이사회 선출을 위한 준비작업 수행, 2명의 최고위원회 부의장과 의장에 의해 지명된 최고위원회의 사측대표 1명의 위원, 노측대표 1명의 위원으로 구성

○ 최고위원위원회는 이 뿐 아니라 독립된 5개의 위원회 자문을 받음

—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는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최고위원회의 투자정책에 대해 자문

— 노사측의 협의를 위해 2004년 고용주이사회(Employers' Council)와 가입자이사회(Participants' Council)가 설립되었으며 각각 36명으로 구성됨

○ APG Algemene Pensioen Groep N.V.

— 2008년 3월 1일, ABP는 기금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를 위해 자회사(APG Groep N.V) 설립, ABP 연금제도에 대한 모든 서비스와 실무조직을 분리시켜 APG로 이전하고 장기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 감독과 행정관리를 분리시켜 연기금의 지배구조체계 개선

- 연금일반 및 투자부문을 축으로 이루어지는 기존 조직체계 변동은 없음. APG는 투자부문, 기금제도 뿐 아니라 마케팅 등 연기금 운용 전반에 관한 업무를 포괄하는 조직.
- 향 후 APG의 업무를 보다 전문화하고 일반 자산운용사 대비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임.
- APG로의 개편의 핵심은 네덜란드 공무원 연금만을 다루는 운용조직이 아닌 기타 연기금의 자산까지도 위탁받아 운용하는 조직으로의 변화. 단, 향후 10년까지는 공무원연금의 자산만을 계속 운용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 연금조직과 배타적(Exclusive) 계약관계에 있음

— 투자부문 APG는 'AP Investments'임.

- 투자부문 이사회 Investment Board는 투자부문 전체 CEO 및 투자각 부문 CIO를 위원으로 총 5인으로 구성
- 각 부문 CIO는 자산배분,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4이며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요하는 투자사항들에 대한 결정권을 가짐

[그림 3] APG Investments 조직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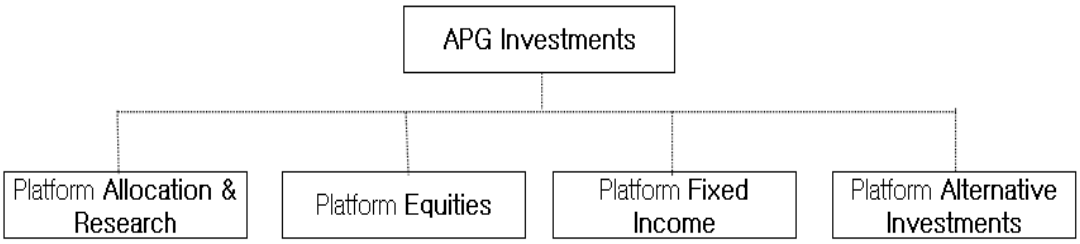

— APG는 2008년 3개의 자회사로 구성되어있으며 APG Algemene Pensioen Groep N.V의 지분 100% 소유, Loyalis N.V.의 지분

90%를 소유하고 있음. 또한 Codares N.V와 2008년 합병했으며 자산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시너지효과 창출.

[그림 4] APG Groep N.V의 지배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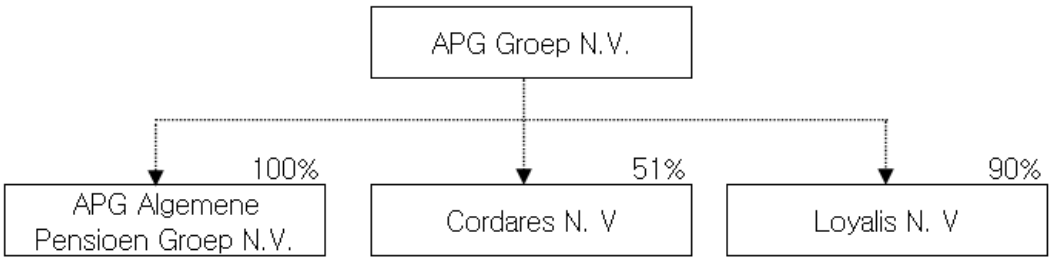

7. 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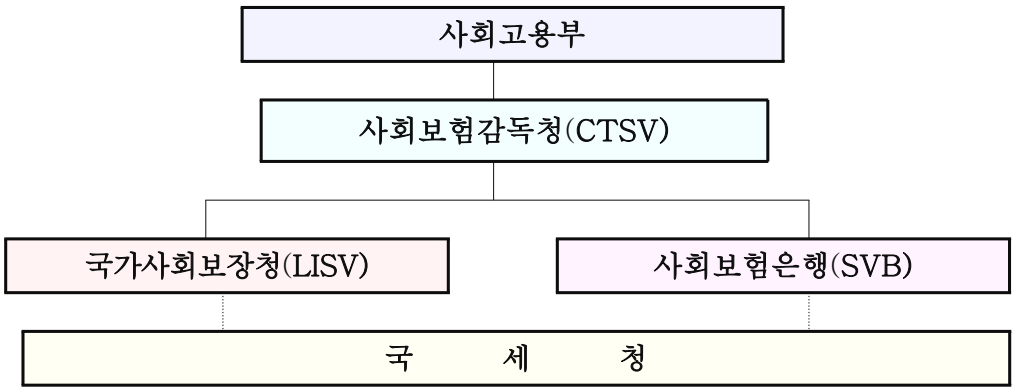

○ 사회보험감독청 (CTSV : College van Toezicht Sociale Verzekeringen) : 보험료 징수 및 현금급여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 감독

○ 사회보험은행 (SVB : Sociale Verzekeringsbank) : 노령연금 및 유족연금의 관리운영

— 사회고용부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Employment) 산하 독립 조직

○ 국가사회보장청(LISV : Landelyk Institute Sociale Verzekeringen)
: 피용자 장애연금, 실업급여, 질병급여와 관련된 보험료 징수, 급여관리 및 기금관리
* 실제 급여지급 업무는 민간회사와 위탁계약에 의거 수행

○ 국세청(The National Revnue Department) : 보험료 징수

8. 기타 사회보장제도

8. 1. 보충수당(supplementary allowance)

○ 수급조건 : 부부(동거파트너) 중 한명은 AOW수급자이고, 배우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AOW에 추가하여 지급

※ 단 2015년 1월 1일자로 65세가 되는 AOW수급자부터는 지급 중지 예정

○ 보충수당의 급여수준은 파트너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완전보충수당은 €698.58 (2010)

○ AOW 수급자의 약 85%는 보충수당을 수급함 (SVB, 2008a)

8. 2. 직역연금제도 공공부조

○ 수급자격 : 18세 이상 빈곤자(가구단위 소득자산조사),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구직노력을 해야 함

○ 급여수준 :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독신은 최대 순최저임금의 50%, 자녀 있는 독신은 70%, 부부는 100%까지 지급

9. 최근 개혁동향

9. 1. 직역연금제도 개혁 필요성 대두

▣ 인구구조의 고령화 추세

○ 2060년까지 근로인구는 일정수준 유지, 그러나 수급자는 현재 수준의 약 2배로 증가 예상

[그림 5] 경제활동참가율과 AOW 수급자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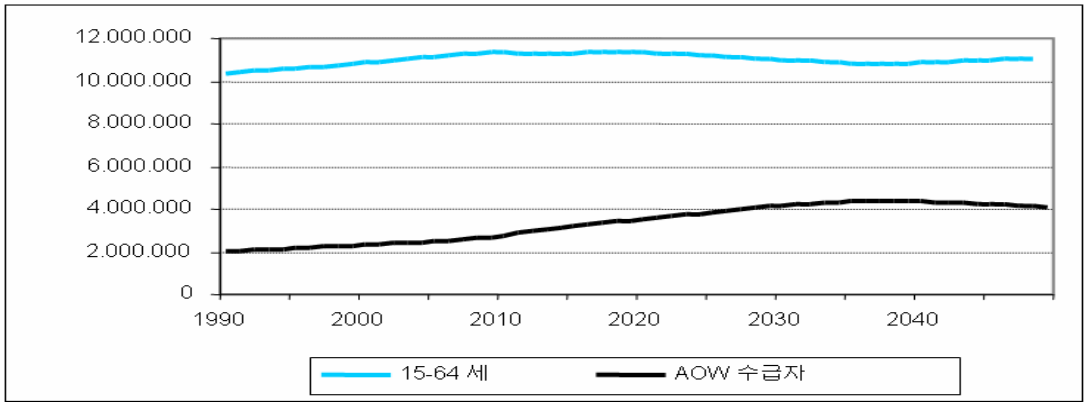

9. 2. 직역연금제도 구체적인 개혁 조치

▣ 정부의 저축기금(Savings fund) 조성 (완충 기금)

○ 고령화 피크(2035년 전후)기의 국민부담 완화 및 미래 정부부채 감축을 위해 1998년부터 정부 일반재정의 일부로 저축기금 조성

○ 2020년까지 저축기금을 비축했다가 2020년 이후부터 기금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2035년경 최대로 사용한 후(GDP의 0.8%, AOW 지출액의 12%) 2045년경에 소진 예상

○ 기금 규모는 2005년 현재 €23 bill (SVB, 2008a)

○ 1998년에 보험료 부담 상한선을 18.25%로 설정(현재 AOW 17.9%),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가일반재정투입 (2001년부터)

○ 국고보조 비율은 GDP의 4.1% (2005) (SVB, 2008a)

— Central government grant : 3.6%

— BIKK : 0.5%

9. 3. 현재 고려되고 있는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대책

○ 급여 삭감 : 정치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보험료 부담 상한선의 상향조정 : 사회 연대감의 문제

○ 수급연령의 점진적 상향조정 예정 : 65세 → 67세

— GDP의 0.7% 정도 비용감소 효과 발생, 그러나 장애연금 등 타 사회보장지출의 증가로 수급연령인상에 따른 국민부담 인하효과는 거의 상쇄될 것으로 예측

— 따라서 조기퇴직을 제한하고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는 제반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예, 조기퇴직 관련 사회보장 및 세제지원 축소, 고령자 장기고용 유도 등)

10. <참고자료>

ABP Annual Report 2008, Press release (ABP's financial position strengthens in second half of 2009)

European Commission, 2009, *Joint Report on Social Protection and Social Inclusion 2009*

MISSOC, 2009

OECD, 2009, *Pensions at a Glance 2009*

SPC(the Social Protection Committee), 2008, *Privately Managed Funded Pension Provision and their Contribution to Adequate and Sustainable Pensions*

SVB, 2008a, *The Dutch State Pension : Facts and Figures*

-----, 2008b, *The Dutch State Pension : Past, Present and Future*

III. 미국의 공적연금제도

1. OASDI 제도의 변천과정

▣ 1935년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Act) 제정 : 퇴직연금 (65세)

▣ 1939년 : 가급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추가

▣ 1940년 : 최초 급여발생

▣ 1956년 : 장애연금, 조기노령연금 지급 추가

▣ 1983년 : 제도개혁

○ 재정안정화 조치

— 연금급여의 물가연동방식 조정을 통한 급여인하, 연금수급개시 연령의 상향조정(65세에서 67세로 2003년부터 2027년까지 조정), 조기노령연금 급여인하

○ OASDI의 적용확대(연방공무원 및 일부 지방공무원 등)

2. 적용범위 - 가입자규모(Coverage)

○ 21세가 된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62세가 되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40년간을 가입기간으로 함

— 이 기간에 납부한 기여를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

— 그러나 사회보장세는 소득이 있으면 연령과 관계없이 납부하며, 퇴직연금을 받은 후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기간의 소득이 높으면 이전의 낮은 소득 대신 교체하여 급여를 높여 줌

○ OASDI의 가입규모

— 경제활동인구 기준 2009년 94% 가입

• SSA's Fiscal Year 2009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3. 재정부담

○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1983년 사회보장법 개정에서 고소득 연금수급자의 경우 사회보장 연금액의 절반에 소득세를 부과하여 OASDI신탁기금으로 활용

○ OASDI 보험료율은 12.4%이며, 이 중 퇴직 및 유족연금 급여계정에 10.6%가, 장애연금 급여계정에는 1.8%가 배분됨

— 초기 보험료율 2%에서 출발했으며, 자영자는 1951년부터 제도에 적용

— 자영자는 피용자 보다 낮은 보험료율이 적용되었으나 1985년부터 동일하게 적용

○ 피용자·사용자는 2010년 기준으로 연 소득 $106,800을 상한으로 하여 소득의 6.2% (OASI+DI)를 각각 부담하고, 자영자는 피용자와 동일한 소득 상한을 두고 소득의 12.4% 전부를 본인 부담

<표 13> 사회보장세율(OASDI+ HI)

구분	OASI	DI	HI	사회보장세율 (OASI+DI+HI)
피고용인/고용주(각각)	5.3%	0.9%	1.45%	7.65%
자영업자	10.6%	1.8%	2.9%	15.3%

주 : 미국의 건강보험인 Medicare는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이나 일정 장애를 지닌 자, 모든 연령의 최종단계 신장병(투석이나 이식을 요함)을 가진 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며 연금과 달리 보험료 납부를 위한 소득상한이 없음. 급여는 입원보험인 HI(Part A:Hospital Insurance)와 의료보험(Part B:Medical Insurance) 그리고 약처방보험(Prescription Drug Coverage)가 있음. HI(Medicare Part A)는 별도의 보험료가 필요 없이 가입자의 HI 보험료에 의하여 그와 그 배우자에게 제공되며, MI(Medicare Part B)는 매월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특진과 외래진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을 제공함. 약처방보험은 2006년 1월 1일 도입되었으며 매월 별도의 보험료를 내야 함. 약처방보험에 가입하면 약처방 시 낮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

○ 20010년 기준 1크레딧을 얻으려면 소득 $1,120에 대한 보험료

납부를 해야 하며, 1년에 최대로 얻을 수 있는 4크레딧을 얻으려면 소득 $4,480에 대한 기여를 해야 함

4. 급여

○ 노령연금

— 최소가입기간 40분기 또는 10년 이상 가입한 자로 2010년 현재 66세에 완전연금 수급, 단 62세부터 감액된 조기노령연금 수급 가능

— 급여액의 산정

• 1단계 평균소득의 계산 (Average Indexed Monthly Earnings ;AIME): 21세가 시작되는 년도의 다음 역년 (曆年) 1월 1일부터 62세가 되는 해 전년도 12월 31일까지의 40년 중 소득이 낮은 5년을 제외한 기간의 재평가된 전체소득의 합을 35년으로 나눈 가입기간 평균소득 계산

• 2단계 급여액 산정 (Primary insurance amount; PIA)

: PIA = AIME 중 $744까지 × 0.9 + $744~$4,483 × 0.32 + $4,483 이상 소득 × 0.15

※ 위의 각 구간은 2009년 기준임. 해당 구간은 매년 임금상승율을 반영 조정함

— 퇴직연금 급여상한 (2009년 완전퇴직연령에 퇴직한 근로자 기준): 월 $2,323

— 2009년 65세 이상 노인의 90%가 수급자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총 연금액은 $6,650억임

• ‘40(0.7%), ’50(16.4%), ‘60(61.6%), ’80(91.4%), ‘00(91.1%)

○ 장애연금은 기여조건을 충족하고 소득활동이 불가능하면 지급

— 퇴직연금 수준에 준하도록 급여산정

○ 유족연금은 60세 이상, 50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지급

— 퇴직연금액과 동일

○ 부양가족연금: 퇴직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자에 대하여 그의 배우자, 자녀 등 피부양자 각각에 대하여 50% 수준의 부양가족연금 지급. 단, 그 총액은 상한이 있음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수급자 150~188%, 장애연금수급자 100~150%)

○ 월 평균급여수준

— 수급자 전체 평균은 $942이며, 퇴직연금과 장애연금은 각각 월 평균 $1,173, 그리고 $1,115 수준임

<표 14> OASDI 월 평균 급여수준 (2008년 기준)

구 분	신규 수급자($)	기존 수급자 (12월 기준)($)
수급자 전체	942	1,054
퇴직 근로자	1,173	1,153
배우자(가급 급여)	420	569
자녀(〃)	536	568
장애 근로자	1,115	1,063
배우자(가급 급여)	293	286
자녀(〃)	294	318
유 족		
비장애 배우자(60세 이상)	918	1,112
장애 배우자(50세 이상)	671	684
자녀 양육 배우자	814	835
유족 자녀	749	745
유족 부모	914	979

출처: 『Fast Facts & Figures About Social Security, 2009』, SSA.

<표 15> OASDI 급여수준의 변화 (중위소득자 기준 소득대체율)

구 분	1956	1966	1976	1986	1996	2006	2007
장애자[1)]	-	33.7%	45.7%	43.5%	43.7%	43.6%	43.4%
퇴직자[2)]	28.3%	28.4%	41.6%	41.9%	42.9%	41.4%	40.3

주: 1. 장애자는 45세 기준. 장애급여는 1957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므로 1956년 자료는 없음.
2. 퇴직자는 65세 기준.
자료 : SSA's FT Performance Accountability Report, 2006, 2007.

○ 급여종류별 수급자 규모와 구성

— 2008년 12월 전체 수급자 수는 약 5,089만여 명이며, 급여별 수급자 구성은 퇴직연금 수급자가 69%로 가장 많고, 장애연금 18%, 유족연금 13%, 부양가족연금 10% 순임

<표 16> OASDI 수급자 규모 (2008년 12월 말 현재)

구 분	수급자(천명)	비중
전 체	50,898	100
퇴직 근로자와 피부양자	35,170	69
근로자	32,274	63
배우자와 자녀	2,896	6
장애 근로자와 피부양자	9,273	18
근로자	7,427	15
배우자와 자녀	1,846	4
유족	6,456	13

출처: 『Fast Facts & Figures About Social Security, 2009』, SSA.

5. 소득재분배효과

○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

— 제도 시행 초기 수급자일수록 미래세대로부터 소득이전을 많이 받고 있음(평균소득자 기준)

<표 17> OASDI 출생연도 코호트별 내부수익률과 수익비

출생 연도별 코호트	실질 내부 수익률	수익비			생애 순이전 (2001년 불변가치, 억달러)		
		이자율에 대한 가정			이자율에 대한 가정		
		물가 상승률과 동일	연금부과 대상 소득 증가율과 동일	기금 수익률과 동일	물가 상승률과 동일	연금부과 대상 소득 증가율과 동일	기금 수익률과 동일
1901	10.9	8.1	3.7	7.7	1,301	2,074	3,231
1910	7.9	5.5	2.6	4.6	2,036	2,380	4,226
1920	5.4	3.5	1.8	2.0	2,375	1,773	2,444
1930	3.6	2.5	1.3	1.0	2,233	823	161
1940	2.9	2.2	1.2	0.8	2,771	570	-935
1950	2.8	2.2	1.3	0.7	5,210	1,314	-1,568
1960	2.5	2.0	1.3	0.8	6,599	1,525	-1,475
1970	2.5	2.1	1.3	0.9	6,947	1,694	-600

주: 수익비는 2001년 기준 현재가치 총 납부보험료 대비 총 급여 배율, 생애 순이전은 각 코호트별 총 급여에서 총 납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의 2001년 기준 현재가치임.

자료 : Dean R. Reimer, Cohort-Specific Measures of Lifetime Social Security Taxes and Benefits, ORES Working Paper Sereis No. 110,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2007. 12.

○ 소득계층간 소득재분배 효과

— 2008년도 평균임금지수(Average Wage Index) 대비 소득수준별 소득대체율

소득수준	AWI의 45% 수준의 근로자	AWI의 100% 수준의 근로자	AWI의 160% 수준의 근로자
급여의 소득대체율	57.6%	42.7%	35.5%

출처: SSA on-line(http://www.ssa.gov/OACT/TR/2009/lr6f10.html#foot7)(2010.2.11.)

6. 기금규모 및 운용

○ 사회보험관련 기금에는 사회보장 신탁기금 (Social Security Trust Funds)과 의료보장 신탁기금 (Medicare Trust Funds)이 있음

— 사회보장 신탁기금은 다시 노령유족연금 신탁기금 (Trust Funds for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OASI)과 장해연금 신탁기금 (Trust Funds for Disability Insurance: DI)으로 나뉨

○ 여유 신탁기금자산은 원칙적으로 美정부에 의해 발행된 채권 (미재무성 증권: Treasury Bill)에 투자되거나, 美정부에 의해 원금과 이자가 보증된 특별채권 (special obligations)에 투자

○ 2008년 기금 현황

— 2008년 급여총액 GDP 대비 4.3% (OASI 3.6%, DI 0.8%), 적립금액 GDP 대비 17.02%

— OASDI 관리 비용: 2008년 지출 총액의 0.9% ($57억)

— 기금소진년도 2037년 (2009 Trustees Report)

<표 18> 기금현황

(단위 : 억 달러)

구분	OASI	DI	OASDI
2007년말 자산	20,236	2,149	22,385
2008년 수입	6,955	1,098	8,053
2008년 지출	5,093	1,060	6,153
2008년 순자산증가	1,793	9	1,802
2008년말 자산	22,029	2,158	24,187

출처: 『TRUSTEES ANNUAL REPORT 2009』, Table II.B1

7. 관리체계

○ 사회보장청은 OASDI와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특별 보훈급여를 관리함

동 프로그램의 급여지급관련 서비스는 사회보장청 산하의 지구사무소(field office)에서 함

<표 19> 사회보장청 조직 및 직원 규모

조직구성	직원규모
본청, 지역총괄사무소 10개, 지구사무소 1,332개, 전산센터 6개, 텔레서비스센터 36개, 프로그램서비스센터, 심사청구총괄사무소 10개, 심사청구소 138개소, 4개 심사출장소	-사회보장청: 약 6만 5천여 명 -주의 장애판정서비스조직: 16,500명 ・장애판정은 주에서 하며, 재정은 사회보장청에서 담당 (2008년 12월 말)

※ 장애인, 맹인, 65세 이상 노인 중 저소득층에게 소득조사를 통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SSI는 일반세를 재원으로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임(요구호가족 임시부조; TANF, 의료부조; Medicaid 및 식권; food stamp 프로그램은 주에서 시행)

8. 기타 사회보장제도

○ 생활보조프로그램(SSI)

— 수급조건: 자산조사에 기초한 공공부조프로그램, 1972년 시행

— 급여수준: 월 최대 급여

• 1인기준 $674, 2인기준 $1,011 (2010년)

9. 최근 개혁 동향

○ 2009년 1크레딧을 얻으려면 소득 $1,090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 기준이 $1,120으로 증가함

○ 장애연금 OASDI의 소득활동 기준 변화

— 비시각장애인: 월 $980(2009년) → 월 $1,000(2010년)
— 근로시도기간: 월 $700(2009년) → 월 $720(2010년)
출처: http://www.ssa.gov/pubs/10003.html

10. <참고자료>

SSA(2009), *Annual Statistical Report on the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Program, 2008*, SSA Publication No.13-11826.

SSA(2009), *Annual Statistical Supplement to the Social Security Bulletin, 2008*, SSA Publication No.13-11700.

SA(2009), *Fast Facts & Figures About Social Security, 2009*, SSA Publication No. 13-11785.

SA(2009), *Income of the Population 55 or Older, 2006*, SSA Publication No. 13-11871

SSA(2009), *SSA's Fiscal Year (FY) 2009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SSA(2009), *The 2009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And Federal Disability Insurance Trust Funds*, May 12, 2009. 111th Congress, 1st Session, House Document 111-41.

SSA's FT Performance Accountability Report, 2006, 2007.

Leimer, Dean R.(2007), *Cohort-Specific Measures of Lifetime Social Security Taxes and Benefits*, ORES Working Paper Series, No.110.

_____,(2004), *Historical Redistribution under the Social Security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and Disability Insurance Programs*. ORES Working Paper No.102.

<웹 사이트>

http://www.ssa.gov/OACT/TR/2009/lrIndex.html

http://www.ssa.gov/policy/regular_publications.html

http://www.ssa.gov/pubs/10003.html

IV. 스웨덴의 공적연금제도

1. 제도의 변천과정

▣ 1913년 : 자산조사방식 조세조달의 기초연금(1층) + 보험방식 적립식(개인전액부담)의 비례연금(2층) 도입

▣ 1946년 : 1·2층 제도를 통합하여 보험료조달(사용자전액부담)의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전환

▣ 1960년 : 2층제도로 부분적립식의 비례연금(ATP) 재도입 및 무연금·저연금 수급자를 위한 소득조사 보충제도 실시

▣ 1998년 : 새로운 공적연금제도 도입

○ 기초연금과 ATP를 폐지하고,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scheme; NDC)방식의 소득비례연금(Income pension: IP) + 완전적립식 개인저축계정방식의 부가연금(Premium pension: PP)으로 전환

○ 저연금·무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초보장제도로서 종전의 보충연금(Supplementary pension)을 대체하는 최저보증연금(Guarantee pension) 도입

— 1938~1953년 출생자는 보충연금/최저보증연금이 적용

— 1937년 이전 출생자는 보충연금만 적용

▣ 2001년 : 사회보험혜택 확대

○ 스웨덴에 거주하거나 근로활동을 하는 모든 개인에게 사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험관련 법규 개정

▣ 2003년 : 유족연금(Survivor's pension)제도의 개편

○ 2003년 이후 연급수급권자의 사망 유족에 대한 연금제도가 개정됨.

▣ 2009년 : 연금액의 적정성과 연금제도의 경제적 효율성 제고

○ 65세 이상 고령자 소득 SEK 363,000까지 세금 감면. 노령연금 수급자의 95%가 혜택을 봄

○ 연금제도의 경제적 효율성 증대를 위해 사업주의 사회보장기여(Social security contributions)분을 1%p 감면

▣ 2010년 : 공적연금관련 부서 통합 (2009년 통합작업 시작)

○ 연금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관련부서 통합

— 부가연금관리청(Premiepensionsmyndigheten; PPM)이 폐지되고, 2010년 1월 1일부로 스웨덴 연금청(Pensionsmyndigheten, Swedish Pension Agency)이 신설되어 공적연금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게 되었음

2. 적용범위 - 가입자규모 (Coverage)

○ 적용범위

— 가입대상은 스웨덴에 거주 및 근로여부에 따라 결정

- 16세 이상의 모든 피고용자와 자영업자 (IP와 PP 동일)
- 스웨덴 시민권 획득여부에 관계없이 스웨덴에 거주하면 가입가능
- 3년 이상 스웨덴에 거주하지 않아도 EU/EEA에 거주한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음.

— 실업, 질병, 장애와 관련된 사회보장급여수급자(사회보장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납부)

— 자녀양육, 군복무, 교육 중에 있는 자(가상적 소득에 기초하여 국고가 보험료납부)

- 적용연령의 하한 및 상한이 없음

○ 가입자 규모

— 2009(2008)년 기준, 약 583만 7천 명(581만 7천 명)

- 16세~59세 까지 공적연금가입자 (다른 사회보험 가입도 포함)
- 2008년 스웨덴 총인구 약 924만 명임

3. 재정부담

○ 보험료율: 18.5%

— 이 중 16%는 IP제도, 나머지 2.5%는 PP제도의 재원으로 사용

— 실제 근로자의 기여(contribution)는 임금소득, 실업수당, 그리고 각종 사회보험수당을 합한 소득(pensionable income)의 7% 수준이며 사업주는 10.21%를 부담함. 자영자는 본인 전액부담

- 법적인 기여율 18.5%와 실제 기여율 17.21%의 차이는 18.5%는 연금 기여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소득(pension base=pensionable income+pensionable amounts)에 근거한 부담비율을 의미
- Pensionable amounts: 다음과 같은 경우 산정됨. (1) 미성년자녀에 대한 육아기간 (2) 군복무기간 (3) 학자금을 받은 학업기간 (4) 소득관련 질병이나 행동장애에 의한 보상금.

○ 소득하한 및 상한 (2009년)

— 연금 기여액 산정을 위한 소득제한선 (과대과소 기여 방지)

— 하한: 물가기준액의 42.3% 이하소득 (SEK 18,104, €1,689)

— 상한: 기준소득액의 7.5배 (SEK 381.750, €35,611)

- 기준소득액 (Income base amounts): 종전제도인 기초연금의 산정기준소득으로 이용되었던 금액 - 연 SEK 50,900
- 물가기준액 (Price base amounts): 연 SEK 42,800

○ 재정운영방식

— IP: 부과방식(Pay-as-you-go)

• 보험료율 안정을 위해 정부운용의 완충기금 Buffer Funds (6개의 AP펀드) 보유

— PP: 적립방식(Funded)

• PP의 기금은 정부가 운용하는 1개의 펀드 (AP7)와 다수의 민간금융회사가 운용하는 Funds에서 운용

• 각 펀드는 개인이 선택 가능

[그림 6] 재정방식으로 구분한 스웨덴 연기금 및 연금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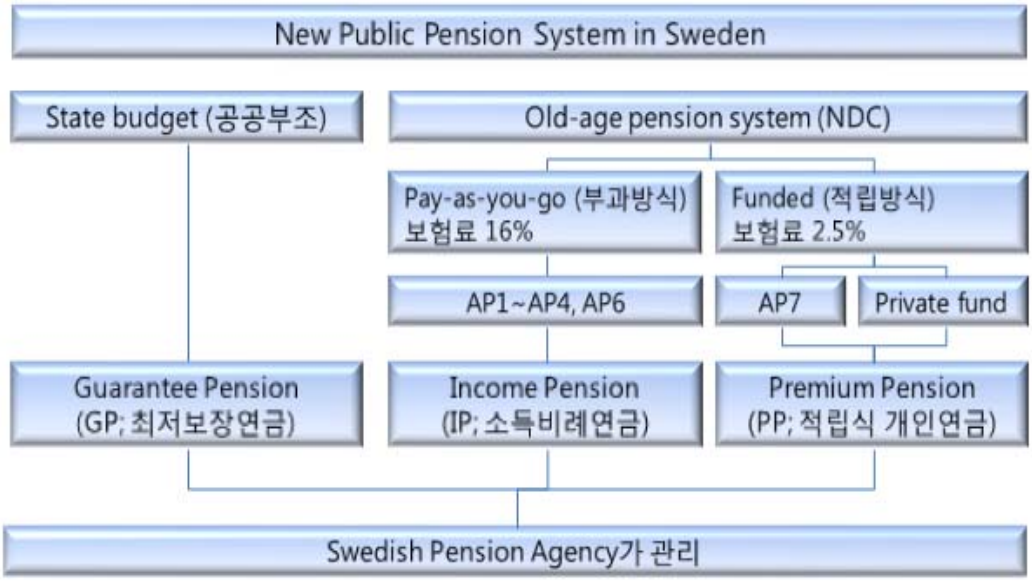

주: "AP"는 독립된 연금기금의 명칭을 뜻함.

4. 급여

○ 연금산식 및 연금액의 조정

— IP 연금액 = (총기여액+가상이자) / 퇴직시점의 잔여수명

— PP 연금액 = (총기여액+시장수익) / 퇴직시점의 잔여수명

— 이자: IP의 경우는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정부가 정하는 '가상적 이자율'을 적용하며, PP의 경우는 시장수익률 적용

• 가상적 이자율: 실질 소득상승률 (3년 평균 명목소득상승률 - 3년 평균 물가상승률)에 연동

— 수급 후 연금액의 조정 (Income indexation: 소득지수): 실질 소득상승률 - 1.6% (실질 잠재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수급조건 및 연령

— 최소가입기간은 없으며, 노령연금의 경우, 61세 이후 수급가능

○ 급여종류

— 노령연금(IP, PP)

- 1998년 연금개혁 이후 조기노령연금이 폐지됨 (즉, 61세 이전 연금 수급 불가)

— 최저보장연금(Guarantee pension)

- 공적연금이 DB에서 DC로 전환됨에 따라 무연금 및 저연금의 고령자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보완 및 강화가 필요했음
- 종전의 보충연금제도의 수급요건을 큰 폭으로 완화한 제도
- 소득 및 자산조사 대신 연금소득만 조사 (즉, 연금외의 기타소득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음)
- 현재 778천 명 정도가 최저보증연금 수급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의 약 47%에 해당 (2008년)
- 재원 : 국고

<표 20> GP 급여관련 세부 사항

	내용
수급요건	(1) 65세 이상 (2) 스웨덴에 최소 3년 이상 거주하는 무연금자 또는 저연금수급자
지급액	(1) 연금소득(IP+PP)이 최저보증연금액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형태 (2) 최저보증연금액은 거주기간 및 결혼여부에 따라 달라짐 · 40년 거주 - 완전 최저보증연금액 보장 · 단, 거주기간 1년 미달 1/40씩 감액되고, 부부인 경우 11% 추가감액 · 완전 최저보증금액: 단신 - 2009(2008) 월 7,579(7,278) SEK, 부부- 2009(2008) 월 6,777(6,492) SEK · 2008년 기준으로 근로자 월평균소득의 25.8% 수준 (단신)

— 부분연금(Partial pension)

- 완전연금액의 1/4, 1/2, 3/4 만큼 연금수급을 선택할 수 있음
- 61세 이후, 근로를 계속 하면서 수급이 가능 (재취업시 부분연금 수급대신 다시 노령연금가입도 가능함)

○ 출생연도 및 연금종류별 수급자 규모 (2009년 말 기준)

— 2009년 전체 공적연금수급자는 약 185만 8천명 수준임

- 61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84.6%

— 1937년생 이전: 약 106만 7천명 (GP: 56만 2천명 포함)

— 1938년생 이후: 약 75만 7천명 (GP: 19만 9천명 포함)

— IP: 약 74만 9천명 (중복 수급자 포함)

— PP: 약 64만 3천명 (중복 수급자 포함)

— 유족연금: 약 34만명 (GP: 1만 8천명 포함)

— <표 54>에서 보면 남성과 여성의 연금수급자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음 (1인 1연금 제도에 근접)

<표 21> 최근 5년간 공적연금 수급자 추이

(단위: 명)

	2009		2008		2007		2006		2005	
	IP	PP	IP	PP	IP	PP	IP	PP	IP	PP
남	380,310	319,271	319,418	265,842	260,418	213,337	203,345	161,658	153,132	117,111
녀	369,306	323,711	308,779	271,169	249,288	219,133	192,873	167,762	143,584	121,720
총계[1)]	1,858,130		1,809,400		1,762,885		1,720,616		1,688,077	

자료: 스웨덴 연금청 통계

주: 1) 다른 공적연금 수급자도 포함.

○ 급여수준

— PP는 DC제도이므로 총 연금액 (IP+PP)은 수익률 (경제성장률 및 시장수익률)과 수급연령에 따라 변할 수 있음

<표 22> 급여수준 산정 예시

	연금액 산정 예시	
	가정	산정 금액
IP	65세 은퇴 1.6% 가상이자율→annuity divisor[1)]를 16으로 감소시킴 기대여명: 19년 (연금수급 당시의 남녀 평균기대여명을 반영) 연금기여액: 2.5백만 SEK	연 급여액 =2.5백만/16=156,250 SEK 월 급여액 =13,020 SEK
PP	(1)위의 방식과 유사하나 기대여명을 예측하여 적용하는 것이 다름. (2) 가상이자율이 아닌 시장수익율 적용	

자료: Annual report of the Swedish pension system 2009

주: 1) Annuity divisor 계산방식은 자료를 참고

5. 소득재분배 효과

○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

— IP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므로 특정조건하에서는 세대간 소득재분배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으며,

— PP는 DC이므로 세대간 재분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 인구증가율, 경제성장률이 증가하는 경우, 기여율이 높아지는 경우

→ 현세대가 미래세대보다 유리

○ 세대내 소득재분배 효과

— PP는 기본적으로 소득계층간 재분배가 없음

— 다만, 군복무기간, 학업기간, 자녀양육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국고에서 부담하므로 집단간 (예: 군복무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간의 재분배가 이루진다고 할 수 있음

— 주로 최저연금보증제도를 통해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음

6. 기금규모 및 운용

▣ IP연금의 기금규모

○ IP연금과 관련하여 버퍼 (buffer)역할을 하는 연금기금: 6개 펀드 (AP펀드라고 함) 로 균등 분할하여 운용

• 단, 현재 AP5 펀드는 존재하지 않음

○ 5개 AP가 운용 중인 기금규모는 2008년 말 약 7,070억 SEK (한화 약 105조원 상당) (1SEK=148.61원, 2008.1.31기준)

• GDP 대비 약 22%

○ 전체 연금부채 대비 약 10% 정도를 충당하고 있음

○ 연도별 기여액 및 기금총액을 합한 총 자산의 부채대비 비율은 거의 1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금융위기로 인한 손실로 0.96까지 하락

[그림 7] 연금부채 대비 기금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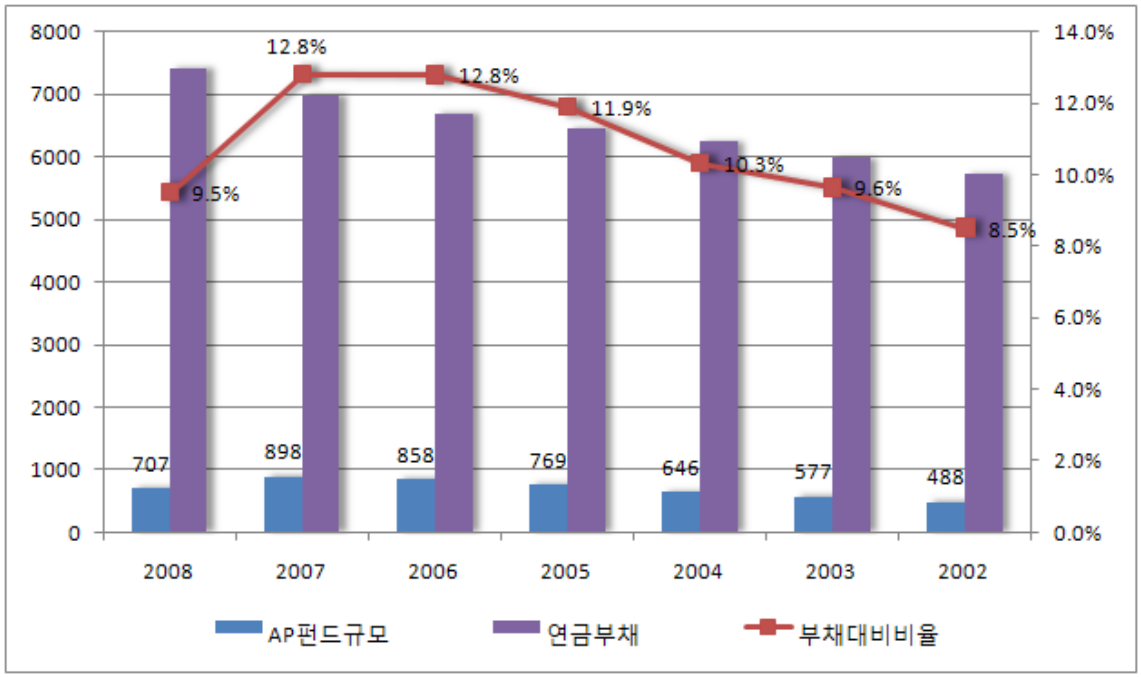

주: AP 펀드 규모는 AP1~AP6의 기금액 합계임.
자료: Orange report 2008.

[그림 8] Balance Ration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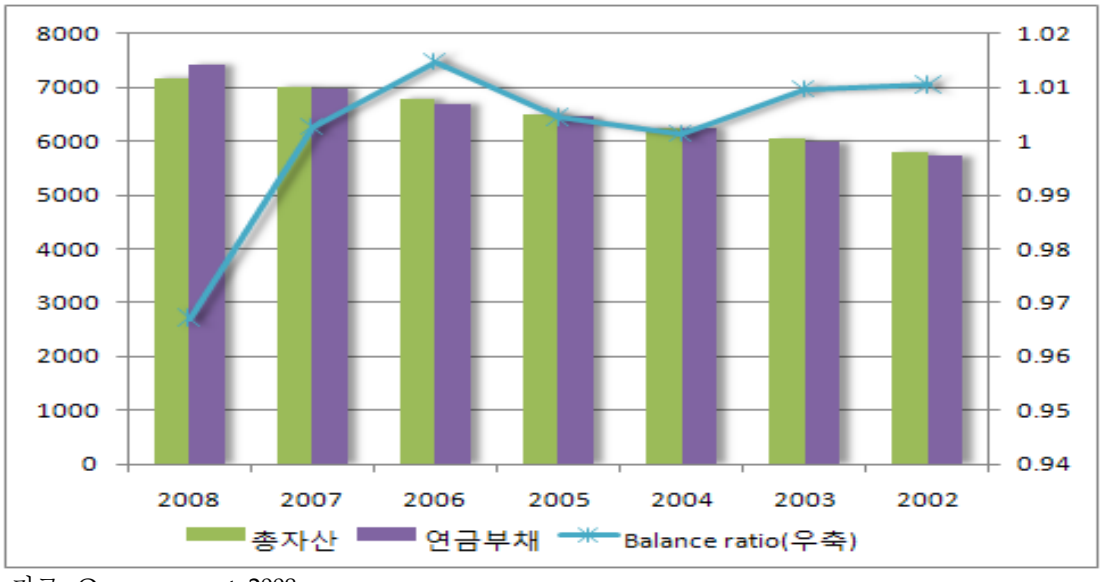

자료: Orange report 2008.

○ 개혁 이전에는 부과방식 부분에 대해 4개의 독립된 연금관리기

구에 6개의 상이한 기금위원회로 구성됨

— 제1~제3 국가연금기금은 채권과 같은 이자수익이 있는 유가증권 투자

— 제4~제5 국가연금기금은 주식에 투자

— 제6 국가연금기금은 스웨덴의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특수 기금으로 개혁 이후에도 잔존함

○ 2000년 5월 1일부터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기금은 4개의 독립적이고 경쟁적인 기금으로 변환되어 제1, 제2, 제3, 제4 스웨덴 국가연금기금이 됨

— 각 AP fund에 균등배분 (단 6th AP fund는 정책적 결정)

[그림 9] 2004-2008년 AP1~AP6 펀드 총수익률 (비용차감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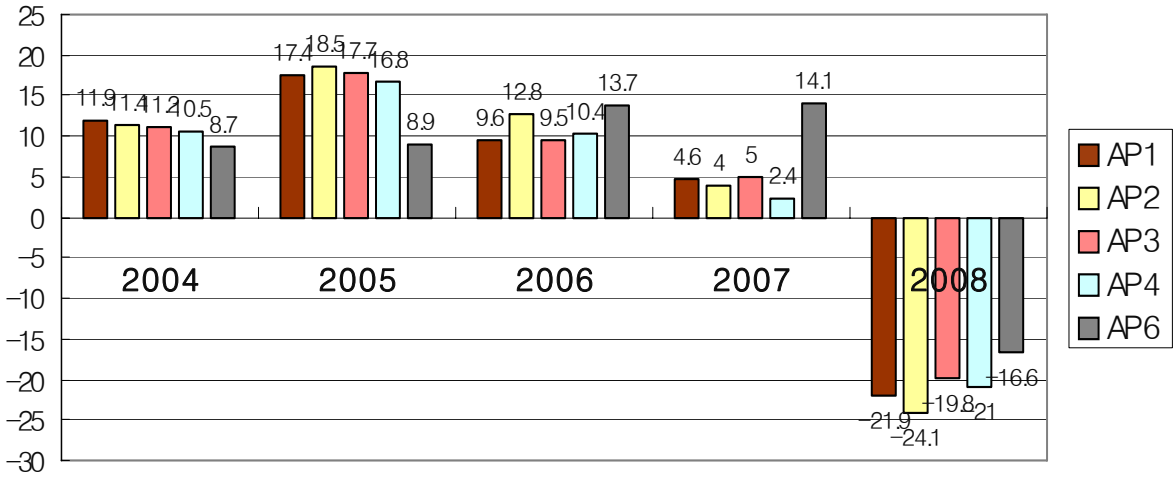

자료: Orange report 2008.

○ PP제도의 기금규모와 수익률

— 2008 말 2,310억 SEK

• GDP 대비 7.3%(AP7 및 민간운용 PPM fund 총규모)

— 2008년 정부운용의 펀드(AP7)의 수익률은 -36.2%(비용차감 이후수익률)

<표 23> Income Pension Fund 및 Premium Funds의 규모 및 수익률

(bill SEK*, %)

구분	규모		수익률	
	2007	2008	2007	2008
1st AP fund	218.8	171.6	4.6 (4.8)	-21.9 (-21.7)
2nd AP fund	227.5	173.3	4.0 (4.2)	-24.1 (-24.0)
3rd AP fund	224.9	181.0	5.0 (5.1)	-19.8 (-19.7)
4th AP fund	207.3	164.7	2.4 (2.5)	-21.0 (-20.8)
6th AP fund	19.6	16.4	14.1	-16.6
계	898.1	707	-	-
Sweden GDP**	3,063.1	3,154.6	-	-
GDP 대비	29.32%	22.41%	-	-
7th AP fund (Premium Pension)	90.1	64.3	4.7	-36.2
Other funds****) (from PPM)	217.8	166.6	-	-

자료: 스웨덴 통계청(www.scb.se)

주: *) 비용차감 이후 수익률 기준, ( )안은 비용차감 이전 수익률

**) 민간기금운용사 가입된 Premium Funds 합

▣ 자산배분

○ 주어진 위험수준 하에서 최대의 장기 수익률 창출 목표

○ AP펀드는 ALM Study를 통하여 전략적 벤치마크 자산배분

— 50년 Time Horizon

— SSIA (Swedish Social Insurance Agency)에서 제공되는 시나리오와 가정을 기초로 수행함

— ALM을 통한 목표수익률을 각 펀드에 부여

※ AP펀드(AP1~AP4)의 투자제한 (2001.1.1.부터 발효)

◦ 자산의 최소 30%는 저위험의 채권에 투자
◦ 비상장증권에의 투자는 자산의 5%가 상한
◦ 외환익스포져 한도는 40%
◦ 스웨덴 기업에 대한 주식 비중은 스웨덴 전체 주식시가 총액의 2%가 상한
◦ 스웨덴 개별기업에 대하여 해당 기업 의결권의 10% 초과 보유 금지
◦ 자산의 최소 10%는 위탁운용

[그림 10] Income Pension Fund 및 Premium Funds의 자산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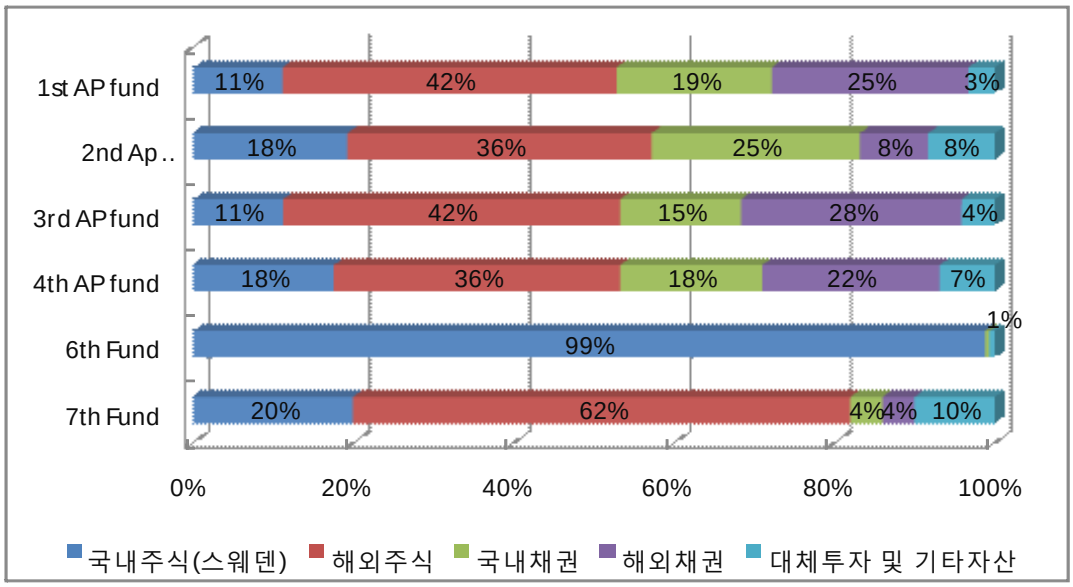

주: 2008년 말 기준. 6th AP fund는 스웨덴 중소기업에 투자되는 특수연금
자료: Sweden pension Annual Report 2008,AP7 Annual Report 2008.

7. 관리체계

○ 기금운용체계 (Sweden national Pension Funds Act에 규정)

— 각 펀드는 독립체제로 법률에 의해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사회에 의해 펀드의 조직과 경영을 책임

— 각 기금은 9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가지고 있으며 9명 모두 정부에 의해 임명되며, 그중 2명은 고용주단체, 2명은 피고용자 단체에서 추천된 사람으로 구성

— 스웨덴정부가 사용자와 고용자 단체가 추천한 이사 외 위원 중에서 의장 및 부의장을 지명 (임기는 1년이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각 AP Funds는 매년 재무성장관 (Ministry of Finance)을 통해 그 성과를 국회에 보고

— 기금운용성과 평가는 외부기관 (CEM: Cost Effectiveness Measurement) 에 의해 이루어짐

— 정부에 의해 지명된 외부감사를 통한 감사를 수행

[그림 11] AP funds의 일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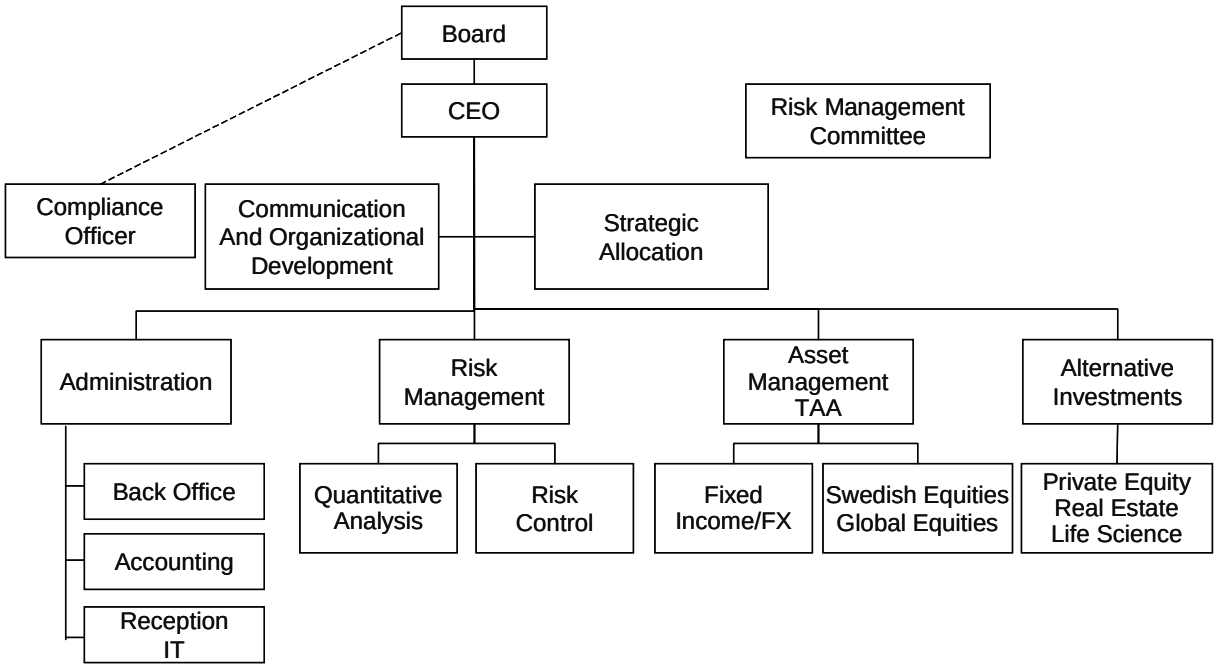

[그림 12] 스웨덴 1st-pillar Pension별 기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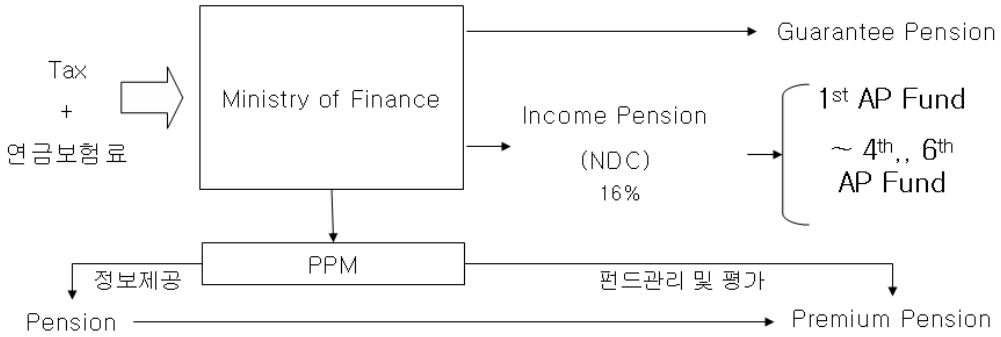

주: PPM은 2010년 1월 1일 이후 폐지되고, 스웨덴 연금청(Pensionsmyndigheten)이 관리하고 있음.

8. 공적연금관련 기타 사회보장제도[4)]

○ 연금 또는 급여가 국가연금체계(Swedish national pension system)내에서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체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제도를 의미함

— 일부제도는 1998년 연금개혁 이전에 국가연금체계에 편입되어 있었음 (장애연금, 유족연금)

○ 유족연금(Survivor's pension): 2003년 이후 급여체계가 새롭게 정비됨

— 고아(자녀)연금(Child pension, barnpension)

- 18세 이하의 자녀가 부모 어느 한쪽이나 모두를 잃었을 때, 자녀에게 연금수급권이 주어짐 (자녀가 18세에 도달할 때까지 지급)
- 한편, 자녀가 있는 유족인 경우, 자녀가 18세 이후라도 정규과정 또는 상급학교의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20세가 되는 해 6월 까지 연금이 연장 지급됨

— 전환연금(Adjustment/adaptation pension, Omställningspension)

- 배우자나 법적동거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인 배우자가 65세 이하일 경우, 12개월간 Adjustment pension을 받게 됨. 만약 유족인 배우자가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추가로 12개월 동안 연금(extended adjustment pension)이 지급되고, 가장 어린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 지급됨.

— 미망인연금(Widow's pension, Änkepension)

- 전환연금과 미망인연금 수급자는 동시에 최저보증연금도 수급할 수 있음. (단, 1945년 이후에 출생자는 최저보증연금을 받지 못함)

○ 질병 및 활동장애 보상금(Sickness and activity compensation)

— 1999년 연금개혁이후, 노령장애연금(Old age disbility pension)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장애급여는 노령연금체계(Old age

4) 부가급여(Ancillary Benefits)라고도 함. 위의 급여외에 저연금 무연금 65세 이상 노인(특히 이민자를 중심)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금(Maintenance support for elderly persons)이 있음.

pension system)로 부터 분리되어 국민의료보험체계(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로 편입됨.

— 따라서, 30세~64세 사이에 발생한 장애에 대한 급여지급은 국민의료보험체계 하에서 지급됨

○ 주택보조금 (Housing allowance for pensioners)

— 저연금수급자를 위한 부가급여로 소득 및 자산조사를 통해 지급

— 월 최고 4,500 SEK (특별한 경우, 월 5,700 SEK 까지 지급)

— 완정노령연령에 도달한 자에 한해 지

9. 최근 개혁 동향 (2000년 이후)

○ 자동재정균형장치 (Automatic balancing of PAYG system)의 도입(2002년)

— 부과방식 (PAYG)으로 운영되는 IP의 재정은 예측하지 못한 경제 및 인구변수의 변화로 재정이 균형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자산 (기여금포함) 대비 부채비율이 1미만으로 하락하면 자동적으로 1이상으로 회복할 때까지 이미 지급된 연금은 소득지수(income indexation) 대신 소득지수보다 낮은 수지균형지수(balance indexation)에 의거하여 조정됨

• 수지균형지수 = 소득지수 - (1 - 부채자산비율)

○ 연금급여방식 조정

— 급여산정 산식의 기준소득을 소득이 가장 좋았던 20년 평균소득에서 생애평균소득으로 변경

— 평균기대수명의 변화에 따라 연금급여액을 자동조정

— IP의 연금수급개시연령을 탄력적으로 적용 (일반적으로 61세~67세 사이에서 수급자가 선택하게 됨)

○ 연금급여의 적정성(Adequacy) 향상

— 최저연금액(Minimum pension)을 6.4% 증액

— 2009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 소득 SEK 363,000 까지 세금 감면

• 이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9도%에 해당

○ 연금제도의 경제적 효율성 증대

— 2009년부터 사업주의 사회보장기여(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분을 1%p 감면

○ 공적연금 및 법적 DC 제도관련 부서 재편

— 부가연금관리청(Premiepensionsmyndigheten; PPM)이 없어지고 2010년 1월 1일부로 스웨덴 연금청(Pensionsmyndigheten, Swedish Pension Agency)이 신설되어 공적연금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게 되었음

• 노령연금 (Old age pensions- Income Pension, Premium Pension)

• 유족관련 급여 (Survivor)

• 고령자를 위한 주택제공 (Housing for senior citizens)

• 근로자 장애연금 (Work injury annuity in the form of a work injury annuity for survivors and funeral)

• 특별 연금 크레딧 (Special Pension Credit)

• 배우자 보충급여 (Spouse Supplement)

10. <참고자료>

Annual report of the Swedish pension system 2009
Orange report 2008.
Pension at a Glance 2009, OECD
Sweden pension Annual Report 2008,AP7 Annual Report 2008.

<웹 사이트>
http://ec.europa.eu/employment_social/missoc
http://www.forsakringskassan.se/sprak/eng
http://statistik.forsakringskassan.se/portal/page?_pageid=93,1&_dad=portal&_schema=PORTAL
http://www.oecd.org/els/social/workincentives
http://www.pensionsmyndigheten.se/Publikationer.html
http://www.pensionsmyndigheten.se/Garantipension.html
http://www.pensionsmyndigheten.se/Statistik.html
http://www.sante-sports.gouv.fr/IMG/pdf/rfas200304-art12-uk.pdf

V. 영국[5]의 공적연금제도

1. 제도의 변천과정

▣ 1908년 : 최초 노령연금제도 도입

○ 자산조사 방식의 무기여 정액 급여

○ 7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대상

▣ 1925년 : 기여방식 노령·과부·고아연금제도 도입

○ 육체 근로자와 연소득 £250 이상인 자 대상

○ 기여방식연금;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

○ 급여는 65세부터 70세까지 5년간 정액 지급

▣ 1946년 : 정액기여 정액급여의 국민보험 도입

○ 국민보험법에 의하여 보편적 국가연금제도 도입

○ 정액기여-정액급여 (하나의 보험료로 모든 국민보험급여 수급)

▣ 1961년 : 부가연금제도 (GRP; Graduated Retirement Pension)도입

○ 매우 낮은 수준의 소득비례연금을 기초연금에 추가

○ 한편, 가입자가 기업연금으로 적용대체 (contract-out) 선택 가능

▣ 1978년 : 법정소득비례연금 (SERPS; Statutory Earnings Related Pension Scheme) 도입

5) 여기서 영국은 England, wales, Scotland, Northern Ireland로 구성된 United Kingdom을 의미하나, 이중 Northern Ireland는 앞의 3 지역인 Great Britain과 다소 독립적으로 제도를 운영함.

○ GRP를 기여와 급여수준이 높은 SERPS로 대체,

○ 자녀나 가족원을 돌보는 자 등에 대한 가사책임보호제도 (가입 크레딧 인정) 도입.

▣ 1986년 : 공적연금의 국가책임 축소와 재정안정화 추구

○ SERPS의 적용대체 범위를 기업연금에 이어 개인연금까지 확대

○ 법정소득비례연금의 급여수준 삭감

▣ 1995년 : 여성 퇴직연금 수급개시연령을 2010~2010년까지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

○ 유럽연합의 권고 수용

▣ 1999년 (법 개정, 2002년 적용) : 저소득층 소득보장 강화 및 사적연금 역할강화

○ SERPS를 국가이층연금제도 (State Second Pension; S2P)로 대체

○ 저소득층 급여수준 상향조정, 저소득층의 기여기록 휴대 등 사적 연금수급권을 강화하는 보관연금제도 (Stakeholder pension) 및 최저소득보장제도 (Minimum Income Guarantee) 도입

▣ 2002년 : MIG의 연금크레딧제도로 대체

○ 사적 저축이 있을 때 공적소득보장 혜택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도록 저축크레딧 추가

▣ 2007년 : 공적연금 급여수준의 적정화와 수급연령 상향조정

○ 기초연금 급여수준의 적정화

— 현재 완전연금을 위한 기여기간이 남자 44년, 여자 39년인 것으로부터 2010년부터 둘 다 30년으로 변경[6)]

— 2012년부터 물가연동에서 소득 (earnings) 연동으로 급여 조정

— 가입기간에서 제외시켜주는 가정책임보호 (Home Responsibilities Protection;HRP) 제도를 12세까지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1주에 20시간 이상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사람에 대하여 주 단위의 가입 크레딧제도 (National Insurance Credits)로 변경

○ 국가이층연금 (State Second Pension; S2P) 의 급여를 소득비례에서 점진적으로 정액으로 전환

— 2007년부터 저소득 가입자는 실제 소득이 더 낮아도 소득하한으로 소득을 가정하여 소득의 40%를 급여로 지급 (중간이상 소득자는 사적연금으로의 적용대체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보호)

— S2P는 2010년부터 장기 장애인과 돌보미 (carers) 에 대하여 최초로 가입 크레딧을 제공하는 등 가입기간 크레딧 대폭 강화 및 2030년 소득비례연금 폐지를 목표로 연금정액화 추진개시

○ 국가연금 수급연령은 2024년부터 2년간 1세, 2034년부터 2년간 1세, 2044년부터 2년간 1세씩 올려 65세에서 68세로 조정

— 여성의 수급개시연령은 2010년부터 2년에 1세씩 조정되어 2020년까지 65세로 점진적으로 연장된 후, 남녀 동시에 수급개시연령이 조정됨

▣ 2008년 : 사적연금 가입의 활성화

○ 자동 가입 '개인계좌'제도의 도입

— 2012년부터 적격 기업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못한 22세부터 국가연금 수급개시연령까지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 가입 후 탈퇴는 근로자가 선택 가능하며, 모든 사용자는 피용자

6) 기존 제도에서는 완전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남자는 16세부터 65세까지 44년, 여자는 60세까지 39년의 기여를 해야 한다(여성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가입의무연령 및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 다만 일정수준의 저소득 근로기간, 실업수당 수급기간, 기여방식 장애연금 등의 수급기간, 60~64세 남자는 가입크레딧이 제공되었다. 또한 자녀나 장기질병 환자, 장애인 가족 등을 돌보는 기간 등은 가입해야 하는 노동기간(의무기여기간)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제공했다. 그러나 완전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의무기여기간은 20년이라는 제한이 있었다.

의 적격 사업장연금제도에 최소 3%를 기여하도록 요구됨 (기여하는 소득에 상한이 있음)

— 피용자가 4%를 보충하고, 정부에서 세제혜택을 통해 약 1% 보조

— 2005년 소득기준으로 년 £3,600의 기여 제한이 있으며,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하여 근로자의 기금 인출과 유입을 일반적으로 금지

2. 적용범위 - 가입자규모 (Coverage)

○ 적용범위

— 공적연금 급여가 포함되는 국민보험 당연적용범위: 16세 이상 연금수급연령 전까지의 일정한 소득 이상인 자

○ 가입자 규모

— 2004년 현재 국민보험 가입기간인 근로연령기간에 해당하는 인구의 78.6%가 경제활동인구

— 가입자 분포 (2005년)

- 근로자 25백만명, 사용자 1.7백만명, 자영자 3백만명
- 임의가입자 50만명

— 2007년 4월/2008년 3월 기준으로 1년 내내 보험료 납부자 28.9백만명, 크레딧 등에 의한 가입자격취득자까지 합하여 총 33.4백만명 (http://statistics.dwp.gov.uk/asd/stpp_cq.asp) 이며, 이는 연금가입대상연령인구 (16세~남 64세, 여 59세) 38백만명 (Population statistics Statistical Bulletin, 8. 2009) 의 87.9%

- 동년기준 S2P 1년간 가입년수 자격취득자는 23.2백만명

○ 국민보험 기여 인정 크레딧제도 (2010년 4월 6일 기준)

— 기초연금 기여 인정 크레딧 (National Insurance Credits)

- 실업기간으로 관련 공적급여 수급

- 질병으로 인하여 공적 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 16, 17, 18세인 년도, 적격 훈련기간
- 배심원활동기간
- 출산과 관련된 급여를 받거나 저임금 근로로 인한 세금크레딧을 받는 기간
- 잘못 투옥된 기간
- 60~65세인 남자 (여성의 수급연령조정기간 동안 시행) 등은 기여기간으로 인정
- 가정을 돌봄에 따라 근로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 (HRP) ⇒ 2010년 4월 5일까지는 이 기간은 가입의무기간에서 제외해 주었으나 (따라서 급여산정 시 분모 기간이 작아짐), 2010년 4월 6일부터 기여기간크레딧으로 통일하고 크레딧 기간 확대함. 이러한 기간은 1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면서 아동수당을 받는 기간 (자동 크레딧), 승인된 양육돌보미 (foster carer) 이며 크레딧 신청기간, 주 20시간 이상 환자나 장애인을 돌보면서 크레딧을 신청한 기간, 장애급여를 받는 기간 등으로 HRP는 22년으로 기여인정기간을 제한하며, 세부 인정사항을 계속 발전 중임
- 2010년 4월 6일부터 크레딧년수 제한 폐지

— 국가2층연금 (State Second Pension) 의 기여기간 인정제도

- 2010년 4월 6일부터 기초연금 가정 돌봄 기간에 제공되는 국민보험 기여 크레딧을 동일하게 적용
- 2010년 4월 5일까지는 6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자녀를 돌보고 있거나,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돌보면서 가정책임보호 또는 돌보미수당에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 기초연금, S2P 모두, 1년 중 기여기간과 기여인정기간이 함께 발생할 경우 2010년 4월 6일부터 조합 가능

3. 재정부담

○ 재정방식: 부과방식, 적립금은 2개월 급여 지급분 보유

○ 보험료의 징수

— 공적연금 보험료는 별도로 징수되지 않고 국민보험 (National Insurance) 에 포함되어 일괄적으로 징수됨.

• 통합보험료에 의하여 연금을 포함한 모든 사회보험 급여수급

○ 보험료 부과방식

— 근로소득과 자영소득에 부과하며,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보험료 납부 하한소득 보다 낮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음

—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대상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뉨 (표 참조). 그 외의 유형으로 1A, 1B 등이 있음

• 1A유형: 사용자가 납부, 회사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등 피용자에게 제공하는 보조적 급여 (fringe benefits) 에 대해 납부

• 1B유형: 원천과세징수 결산협약을 한 사용자가 납부

• 또한 1977년 주부나 미망인이었던 자로 1977년 5월 12일 이전에 1유형의 감율 보험료 및 2유형 보험료 무납을 신청한 경우 계속 이 규정 선택 가능

<표 24> 국민보험 가입유형 및 보험료 부담수준

(2010. 4.6~2011. 4.5)

기여 유형	소득수준	피용자	사용자
제1유형 (근로소득)	주 £0-£97이하	보험료 납부제외	납부 제외
	주 £97초과-£110[2]	0%	0%
	주 £110초과-£844	11%	12.8%
		민간연금 적용대체 시 환불율 1.6%	봉급연계제도대체 시 환불율 3.7% 확정기여형연금대체 시 환불율 1.4%
	주 £770초과 소득[3]	급여 비산정	좌동
	주 £844 초과 소득[4]	1% (적용대체시 1%)	12.8% (적용대체시 12.8%)
혼인한 여자 감율보험료	£110~£844	4.85%	
	£844 초과소득	1%	
제2유형 (자영 저소득)	연 £5,075이하	납부 제외	
	연 £5,075-£5,715	주 £2.40	
제3유형 (임의가입)	소득이 없는 자 등	주 £12.05	
제4유형[1] (자영 고소득)	연 £5,715 - £43,875	8%	
	연 £43,875 초과	1%	

주: 1. 단, 4유형은 2유형에 추가하여 징수됨

2. 이 구간(Lower earnings limit)의 근로소득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지만 주 £110 소득(Primary threshold)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해줌. 기초연금은 하한소득에 대한 보험료 납부로 수급권을 얻을 수 있으나 소득비례연금은 하한소득을 초과한 소득에 대한 보험료 납부로 수급권을 획득하므로 이 구간 소득인 자는 기초연금만 수급

3. 2007년 개정법에 의하여 2009년 4월부터 '급여산정 상한소득'(Upper acruals point)제도를 도입하였음. 이로 인하여 £770 이상 소득에 대한 보험료납부는 급여산정 시 인정되지 않고 급여는 £770까지 인정하여 산정되고 국가연금제도로부터 민간연금으로 적용대체(contracting out) 시 보험료 환불대상소득도 £770까지임

4. 상한소득한계(Upper earnings limit)까지는 국민보험 보험료로 다양한 기여형 보험급여 지급에 사용하고, 그 이상 보험료 1%는 NHS 국민보건서비스 재원으로 사용

○ 1유형: 사용자 기여 상한은 본래부터 없었고, 피용자는 보험료납부 상한소득이 있었으나 2003년부터 폐지

— 과거 소득상한에 해당되던 금액 이상의 소득 (2010년 £844 이상) 에는 1%의 보험료 부과 (국민보건서비스<NHS>에 대한 비용지원을 위하여 신설)

○ 2유형: 자영소득 (비용을 제외한 수익) 이 있는 경우, 연 £5,075~£5,715 이하이면 주 £2.40의 낮은 정액의 기여를 함

— 일정 수준 이상의 자영 고소득에 대한 정률보험료인 4유형에 대해서도 기여의 소득상한선을 2003년부터 폐지

○ 3유형: 소득활동을 하지 않거나 1, 2유형 기여대상이 되는 소득이 없는 자로서 영국에 거주하는 16세 이상 연금수급개시연령 이전인 자가 임의로 납부하는 보험료

○ 2003/04년도 징수액: £750억 (이 중 1유형 보험료가 95%차지)

○ 1~4유형 보험료 납부에 따라 받는 다음과 같이 보험급여종류가 다름

<표 25> 보험료 납부유형별 수급급여종류

보험료 유형	수급 급여종류
1유형 보험료	국가기초연금 (Basic state pension), 법정소득비례연금(SERPS) 및 국가2층연금 (S2P), 유족급여 (Bereavement benefits), 구직급여 (Contribution-based jobseeker's allowance), 산재급여 (Industrial disablement benefit), 출산급여 (Maternity allowance, Statutory maternity pay), 상병급여 (Statutory sick pay), 장애급여 (Incapacity Benefits)
2유형의 보험료	국가기초연금, 유족급여, 출산급여 중 출산수당 (Maternity allowance), 장애급여
3유형 보험료	국가기초연금, 유족급여
4유형 보험료 1A, 1B 보험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4. 급여

▣ 기초노령연금 (Basic state retirement pension)

○ 수급조건

— 기여 또는 크레딧에 의한 가입인정기간 (Qualifying years) 에 비

례하여 정액으로 지급

— 2010. 4. 5까지 남성의 경우 근로기간 (Working Years) 인 44년, 여성의 경우 39년 (최대근로기간 각각 49년, 44년에서 5년을 뺀 년수) 을 기여하거나 가입기간이 인정되어야 완전연금을 수급하나, 2007년 법 개정으로 2010년 4월 6일부터 30년 가입 또는 국민보험 credit 인정 시 완전연금 수급가능

— 수급연령은 남자 65세, 여자 60세 (2010~2020년 65세로 조정)

○ 기초연금 급여산식 (2010년 4월 6일 부터)

— 완전연금액 × 기여년수 (+ 기여인정년수) × 1/30

○ 급여수준

— 완전기초연금은 2009.4.6/2010.4.5 현재 기준으로 주당 £95.25 (완전기초연금은 평균소득대비 15~16% 수준임)

— 기여년수가 짧아 자신의 기여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급여수준이 낮은 경우 배우자의 기여에 의해 배우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완전배우자연금은 주 £57.05 (완전연금의 약 60%)

— 80세 이상으로 국가연금이 없거나 적고 일정한 거주조건 충족 시 £57.05의 노인연금 수급

— 2008. 9월 현재, 남성 수급자의 0.2% (10만명 미만), 여성 수급자의 34% (2.3백만명) 는 완전기초연금의 60%이하를 받음. 남성은 대부분 완전연금을 받으나 여성은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감액된 연금을 받음

— 국가기초연금은 2010년부터 물가연동에서 임금연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향후 급여수준 적절성 향상

<표 26> 2012~2050년 소득/물가기준 국가기초완전연금

년도	개혁 후 (물가→소득연동으로 변경)		개혁 전 (물가연동)
	2009/10 소득기준	2009/10 물가기준	2009/10 물가기준
2012	97	101	101
2020	97	116	102
2030	97	142	103
2040	97	173	105
2050	97	211	106

자료: Pension Trends, 23 June 2009(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표 5.8, 통계자료 DWP 산출

○ 수급자 규모

<표 27> 영국 공적 노후소득보장 수급자 규모

65세 이상 인구 ('05. 6)	국가연금(A) ('06. 8)	연금크레딧(B) ('06. 8)	B/A
963만명 (전 인구 16%)	1,169만명 (12.3백만) (남 65세, 여 60세 이상)	273만명	23%

주: 2007-08년 국가연금 수급자는 12.3백만명(DWP Statistics), 연금수급자 수는 3.2백만가구
자료 : DWP Pension Statics, Population Trends,
Statistical Summary Feb. 2007, National Statistics, UK

▣ 국가이층연금 (State Second Pension; 이하 S2P)

○ 1999년 법개정으로 법정소득비례연금 (SERPS)을 대체한 S2P를 2002년 4월 6일부터 적용

— SERPS 급여산식

- (수급전년도 기준으로 재평가된 개인의 매년 소득의 평균액 - 소득하한액) × 수급시점 승율 (0.2~0.25)×기여기간÷제도도입인 1978년부터 수급시점까지의 년수
- 재평가 기준 : 소득하한선의 증가율

— S2P 급여산식

- 2010년 4월 5일까지 ⇒ 국가평균임금 증가에 연동되는 소득선을

새롭게 설정하여 소득계층별로 다른 소득대체율을 적용함으로써 저소득층은 유리하고 (소득대체율 40% 적용), 중간소득 (중하계층 소득대체율 10%, 중상계층 20% 적용) 이상은 불리하도록 급여수준을 설정함으로써 저소득층만 제도에 남도록 설계하여 적용

- 2010년 4월 6일 수급개시연령이 되는 자부터 변경 ⇒ 급여산정을 위한 3개 차등 소득구간에서 위의 두개 소득구간을 통합하여 하위 소득구간 (LET 또는 PET 이하 2010년 기준 주 £110) 은 매년당 1주 £1.6 정액급여, 상위소득구간 (LET부터 UAP까지 2010년 £110~주£770) 까지는 소득비례급여 지급
- UAP는 주 £770으로 고정되어 2030년까지 서서히 LET가 UAP 수준이 되면서 소득비례급여부분이 저절로 사라짐. 소득비례급여는 [(UAP까지의 개인의 보험료납부소득 - LET 소득) × 0.1×1/완전연금 수급 가입년수)] ⇒ 10%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하며 완전연금 수급 가입년수에 대하여 1년 가입 시 1주에 해당하는 급여를 의미 (수급권 발생 전년도 기준 과거소득을 임금상승률로 재평가하여 급여산정)

※ 소득구간 명칭
- LEL (Low Earnings Limit): 기여를 하지 않아도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최저한의 소득기준으로 그 해 적용되는 주당 하한소득 (2010년 4월 6일부터 £97) 에 52 (1년치) 를 곱한 것임. 1998년 법개정 전에는 이 기준이 기여하한소득이었으나 법개정을 통해 저소득층 소득보장을 위한 가상적 기준소득으로 적용됨
- LET (Low Earnings Threshold) 또는 Primary Threshold: 기여를 하는 최저한의 소득기준 (2010/11년도 £110)
- SET (Secondary Earnings Threshold): 중간소득선이었으나 2008년부터 LET와 통합(2010/11년도 £110)
- UAP (Upper Accrual Point): 급여산정 소득상한선 (2010/11 주 £770)
- UEL (Upper Earnings Limit): 2008/09년도까지 적용되던 급여산정 소득상한선이며, 피용자의 보험료율 11%가 적용되는 소득상한선

▣ 부가연금 (Graduated Retirement Benefit)

○ 1961년부터 1975년까지 시행되었던 제도로 당시 기여를 했던 자

의 경우 2006/07년 기준으로 남자는 보험료 매 £7.50마다, 여자는 £9마다 10.20 펜스의 급여를 부가로 받음

▣ 적용대체 (Contract-out)제도

○ 강제가입인 2층 체제에서 공적연금인 S2P를 대체할 수 있는 사적연금으로는 기업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보관연금(Stakeholder pension)이 있음

○ 2007년 개정된 연금법에 의하여 향후 확정기여방식 연금으로 적용대체는 인정하지 않을 예정

○ 또한 적용대체의 경우 보험료 환불 (rebate) 소득상한은 Upper Accural Point까지의 소득이며, 근로자 보험료 환불율은 1.6% (즉 LET~UEL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11%-1.6% = 9.4%만 국민보험료로 납부), 사용자 확정급여형 연금에 대한 환불율 3.7%, 확정기여형 연금에 대한 환불율 1.4% 적용

<표 28> 부가적 소득비례 국가연금1) 수급자 수와 평균급여액 (2008. 8)

	남	여	전체
수급자 수 (백만명)[1)]	4.1	6.1	10.2
평균급여액 (주당£, gross)	61	22	36
중위수 급여액 (주당 £, gross)	60	9	22

주: 부가적 국가연금은 Gradual Retirement Pension, Statutory Earnings Related Pension Scheme, State Second Pension (적용내, 적용대체 다 포함)

자료: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Pension Trends, 표 5.5, 2009. 6. 23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표 29> 유형별 기초연금과 부가연금 수급형태 (‘10. 4.6)

개인유형별	2010	2020	2030	2040
자격년수 30년 이상 피용자	완전기초, 부가	완전기초, 부가	완전기초, 부가	완전기초, 부가
자격년수 30년 이상 자영자	완전기초, 무 부가	완전기초, 무 부가	완전기초, 무 부가	완전기초, 무 부가
크레딧에 의한 자격년수 30+ 비근로자	완전 기초, 무 부가	완전기초, 무 부가	완전기초, 무 부가	완전기초, 무 부가
2010. 4월 전 약간/무 HRP를 가진 돌보미	약간/무 기초, 약간/무 부가	완전/ 약간 기초, 약간 부가	완전/ 약간 기초, 약간 부가	완전기초, 부가

자료: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Pension Trends, 표 5.11 ‘09. 6. 23

5. 소득재분배 효과

○ 소득계층간 재분배

— 영국의 공적연금의 소득계층간 재분배수준은 낮게 설계되어 유지되어 왔으나, 현 정부 이후 이를 강화하였음.

- 1998년 제도개혁 이전에는 기초연금은 실질적으로 정액기여

— 정액급여의 형태를 취했고, 소득비례연금은 기여와 기입기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했음. 다만 저소득층 (근로자, 자영자 모두)은 적은 정액보험료만 납부하고, 고소득층은 정률보험료를 기여한 후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 모두 동일하게 다양한 종류의 정액 국민보험 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소득재분배효과는 있었음

- 1998년 제도개혁 이후 저소득 근로자나 기여기간 부족인 자에 대해 다양한 가입기간 크레딧제도를 발전시킴
- 또한 국민보험은 정률 보험료에 정액급여형태로 발전됨에 따라 저소득층일수록 적게 내고 많이 받게 되므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

— 2007년 기여와 급여와의 연계를 훨씬 약화시키도록 국가연금을 개혁하여 2030년경에는 모든 국민이 빈곤선을 넘는 정액연금을 수급하도록 함으로써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 또한 저소득층이나 기여가 어려운 자는 대부분 국민보험크레딧의 수혜자이므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 2007년 제도개혁 전후 소득계층별 급여수준의 변화를 보면 개혁 전에는 저소득층의 공적연금 수준이 점점 하락하지만 개혁을 통하여 기초연금은 일정한 급여수준을 유지하고, 전체적으로도 모두 급여수준이 개선됨

[그림 13] 개혁 전 2009/10 소득기준에서 국가기초연금과 부가연금수준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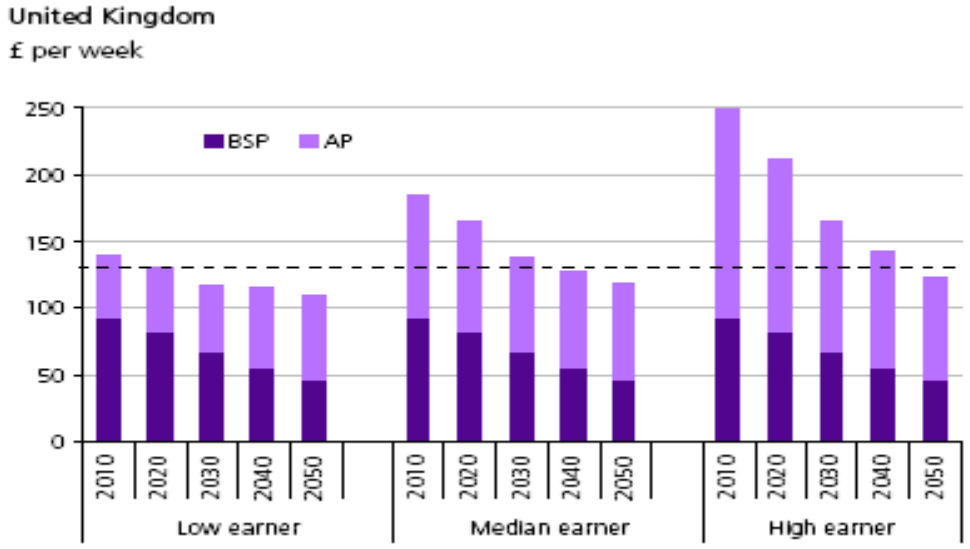

자료: Pension Trends 23 June 2009(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figure 5.9, 통계산출 DWP

[그림 14] 개혁 후 2009/10 소득기준에서 국가기초연금과 부가연금수준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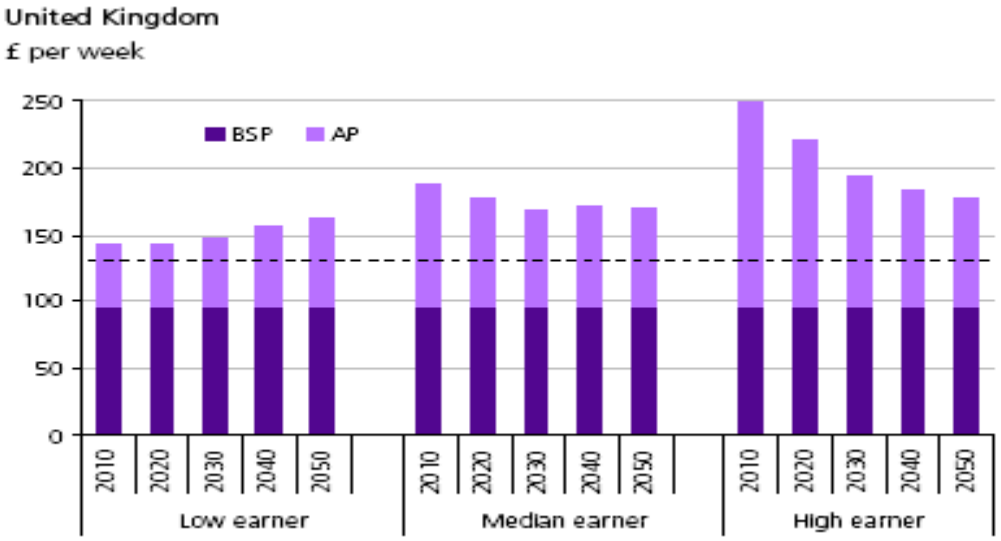

자료: Pension Trends 23 June 2009(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figure 5.10, 통계산출 DWP

6. 기금규모 및 운용

<표 30> 기금주요통계

(2009.03.31 기준)

	s179	FRS17	Full buy out	Technical provisions
Total number of schemes	6,885	6,885	6,885	6,885
Total assets (£	780.4	780.4	780.4	780.4
Total liabilities (£	981.0	834.2	1351.6	1109.5
Aggregate funding position (£	-200.6	-53.8	-571.2	-329.1
Total balance for schemes in deficit (£	-216.7	-93.2	-572.3	-
Total balance for schemes in surplus (£	16.0	39.3	1.1	-
Funding level	79.5%	93.5%	57.7%	70.3%

Source: PPF/The Pensions Regulator
Table 4.1 Key funding statistics as at 31 March 2009

Pension Protection Fund, The Purple Book 'DB PENSIONS UNIVERSE RISK

PROFILE2009', The Pensions Regulator.

<표 31> Top 5 Pension Funds By Region

명칭	금액(십억)
British Telecommunications plc	31.34 £
Universities Superannuation Scheme Ltd.	21.69 £
Railways Pensions Trustee Company Railways Pension Scheme	20.40 £
Royal Mail Pensions Trustees Ltd.	20.25 £
Electricity Supply Pension Scheme	19.18 £

http://www.pensionfundsonline.co.uk/public/index.aspx#4

○ 최근 Pension Protection Fund(PPF)조사에 따르면 Defined Benefit(DB)이 151억 파운드의 적자 발생

7. 관리체계

○ 공적연금은 급여지급업무와 징수업무가 구분되어 운영

— 급여지급: 급여종류별로 담당하는 관리조직이 다르나 모두 노동연금성 산하에 있음

• 퇴직연금과 연금크레딧 등 노인에 대한 급여서비스는 연금관리청(The Pension Service)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유족급여와 장애급여는 직업관리청 (The Jobcentre Plus)에서 관장

※ 유족급여와 장애급여는 퇴직이전 연령층에게 지급하며 유족급여는 피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1년간만 지급함. 퇴직연령 유족은 배우자의 기여기록으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음. 장애급여는 소득활동 심사 후 지급하되, 단기 저율, 단기 고율 지급과정을 거친 후 장애발생 1년 후부터 지급.

— 보험료 징수: 국세청 (Her Majesty Revenue&Customs) 담당

• 국민보험료의 징수는 원래 사회보장성 산하의 징수청에서 담당했

으나 1999년 조직개편을 통하여 국세청에 업무 이관

○ 2001년 사회보장성은 노동행정을 합하여 노동연금성으로 개편

— 2002년 노동연금성 산하의 급여청을 폐지하고 서비스 대상 연령 계층별로 6개의 하위급여관리조직으로 개편함. 관리운영 조직체계와 각 조직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Department for Work & Pension

○ 소득보장제도 운영은 1966년 보건사회보장성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curity) 의 책임이었으나, 1988년 이 부서가 보건성 (Department of Health) 과 사회보장성 (Department of Social Security) 으로 분리되면서 사회보장성이 운영

— 2001년 Department for Work & Pension으로 조직개편

▣ The Pension Service

○ 2003년 급여청 폐지 후 The Pension Service 신설. 주요업무는

— 국가연금 (기초, 소득비례연금) 및 연금크레딧 급여액 산출

— 연금급여 지급업무

— 가입자에게 연금에 관한 정보 제공 등

▣ 국세청 (Her Majesty Revenue&Customs)

— 국민보험 보험료 징수

— 적용제외제도 (contracted-out system) 관리

— 징수기록 관리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등을 담당

8. 기타 사회보장제도

○ 연금크레딧

— 연금크레딧은 1999년 도입된 최저소득보장제도를 대체한 것으로 2007/08 연금크레딧 수급가구 2.7백만가구 (그 중 2.1백만 가구 보장크레딧 수급), 수급자는 3.3백만명

— 연금크레딧은 60세 이상으로 영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2010년부터 2010년까지 65세 이상으로 수급연령이 점진적으로 조정

— 소득조사를 통하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며, 60세 이상이고 일정 소득이하면 guarantee credit, 65세 이상이며 일정 소득 이하이고 저축액이 있다면 savings credit만 또는 guarantee credit와 savings credit 둘 다 적용 가능

— 보장크레딧은 소득보장선까지 급여를 채워주며, 저축크레딧은 보장크레딧이 보장하는 소득 근처의 소득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저축액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보장선보다 소득이 다소 높아도 수급이 가능 (저축 장려 목적)

— 보장크레딧: 2009/10년 단신인 경우 주당 £130, 부부면 주당 £198.45까지 소득을 보장(장애에 대한 수당이나 주택을 위한 임대비용 별도 지급)

— 저축크레딧: 2009/10년 기준 단신 최대 주 £22.40, 배우자가 있으면 최대 주 £27.03의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저축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소득상한선은 주 단신 £181, 부부 £266

<표 32> 공적급여수준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소득대체율)

(단위: %)

	평균소득	평균노령연금	최저소득보장	완전기초	최저임금
영국 (2004년)	100	남 23.7 여 15.3	(Pension Credit) 22.5	17.1	40.6

○ 노인에 대한 부가급여는 동절기 연료수당, 80세 이상 정액무기여 급여, 성탄절 보너스,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 비용환급 등이

있음

○ 저소득층은 연금 크레딧 수급을 통하여 소득향상 혜택이 큼

[그림 15] 1999년 이래 현 정부에서의 연금수급자 계층별 공적소득관련 급여 지급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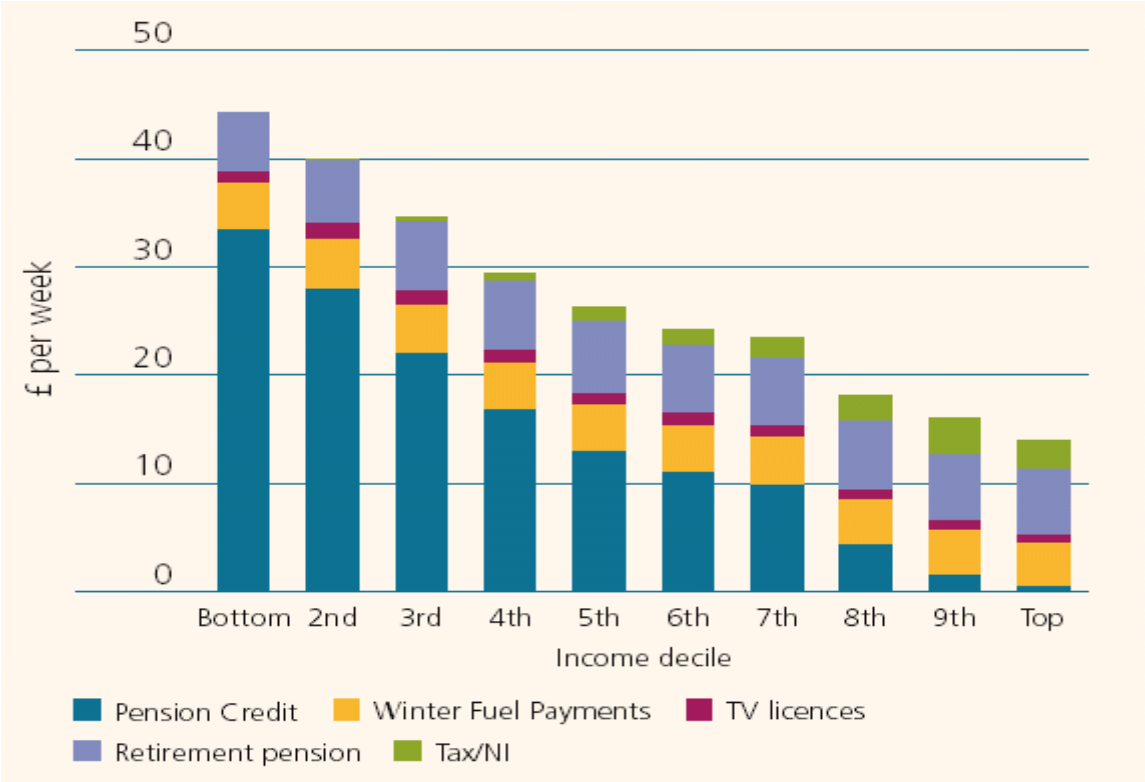

주 1: 2006/07 정책에 의한 급여수준을 2006/07년 물가수준으로 재평가한 1997/98 급여수준과 비교
2: 연금 크레딧은 주택급여와 지방세급여의 효과를 포함
자료 : DWP Policy Simulation Model

9. 최근 개혁 동향 (2007년 정부 제도개혁안)

▣ 영국은 대처정권 이래 공적연금의 민영화, 급여수준의 지속적 삭감 등을 통하여 성공적인 공적연금 재정안정화를 이룸

○ 이에 따라 주요 관심사는 공적연금의 낮은 급여수준으로 인한 노인빈곤이 되었음

▣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현 노동당 정부는 1999년 이후 저소득층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일정하게 확보하도록 하는 많은 조치를 취하였음

○ 그럼에도 여전히 노인빈곤문제가 만족할 만큼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퇴직을 위하여 스스로 저축하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선택

○ 2006년 5월 정부는 "퇴직 시 소득보장: 새로운 연금제도를 향하여"란 백서를 발간한 후 이를 기초로 2007년과 2008년 연금개혁

▣ 주요 제도개혁내용

○ 개인계좌의 도입

○ 피용자: 년 £5,000~33,000 소득구간 소득의 4%를 기여

○ 사용자: 동일한 소득구간에 대하여 최소한 보험료 3% 납부 (매년 1%씩 3년을 거쳐 단계적 보험료율 상승 예정이나 추가적 보완조치 강구 가능)

○ 정상적감세의 형태로서 추가적으로 1%가 더 기여되도록 함

※ 피용자는 신규 개인계좌 또는 최소급여지급조건 (국가2층연금급여)이 충족된다면 자동으로 기업연금에 가입

▣ 국가연금을 보다 단순하고 보다 관대하게 개혁하여 연금 수급자가 국가 성장의 열매를 나누도록 함

○ 기초연금의 연동방식을 2012년부터 평균임금상승율로 변경

○ 국가 2층연금은 기초연금 위에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하되, 2010. 4. 6일부터 일정한 정액 (1년 가입 당 주 £1.6) 에 소득비례에 낮은 승율 (10%) 을 적용하고 급여산정 소득을 묶어 놓음으로써 (£770) 점진적으로 정액급여로 변경

▣ 2010년부터 국가연금을 보다 공정하고 수용가능하게 개혁

○ 사회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되, 권리와 책임간 관계는 유지하도록 기여원칙 개혁

○ 이를 위하여 국가기초연금의 기여기간을 30년으로 축소하고, 가사책임보호크레딧을 새로운 자녀양육크레딧으로 대체하며 주당 20시간 이상 중증장애인 간병에 대하여 새로운 기여크레딧 제공 도입 등 사회기여 크레딧 강화

○ 기초연금의 제1기여조건 (최소한 50주 기여원칙) 을 폐지하고 최소기여 없이도 자녀양육 또는 중증장애 간병기간만으로 기여자격을 얻도록 함

○ 기타 국가기초연금과 국가2층연금 수급조건을 보다 단순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 노동기간 연장

○ 수명연장에 따라 국가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연령을 2024년부터 2년간 65세에서 66세로 상향조정 후 다시 2034년부터 2년간 1세를 올리고 그 다음 2044년부터 2년간 1세를 상향조정하여 68세로 함)

○ 그러나 연금크레딧은 수급개시연령은 65세로 유지하여 저소득자 평균수명이 짧은 것을 배려

▣ 사적 연금 규제환경 개선

○ 확정기여연금과 개인연금으로의 적용대체 (contracting out) 제도를 폐지함

- 이는 사적연금의 혜택을 적게 받는 저소득층 근로자가 국가2층연금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함

▣ 주요 개혁효과

○ 사적연금

— 약 1000만명의 저소득자는 자신이 저축하지 않기로 적극적으로 결정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새로운 개인계좌를 통하여 저축을 하게 됨

— 개인저축계좌의 낮은 운영비용으로 인하여 퇴직 시 연금기금은 25% 이상의 가치가 증가

○ 공적연금

— 2010년 퇴직연령 (60세) 에 도달하는 여성의 70%가 완전기초연금을 받게 됨 (현재는 30%)

— 2025년 국가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는 남자와 여자의 90% 이상이 완전기초연금을 받게 됨 (개혁이 없다면 약 80%가 완전연금 수급)

— 2050년 국가기초연금은 물가연동을 한 것에 비하여 2배의 가치를 갖게 됨

— 연금개혁으로 연금크레딧 수급자격이 있는 연금수급자는 2050년까지 약 1/3 정도 감소함

○ 재정효과

— 장기적으로 비용이 더 들게 됨. 2008년 전체 공적연금지출은 GDP 대비 5.2%이며, 개혁을 하지 않았다면 공적연금의 장기적 가치하락으로 인하여 2050년에는 GDP 대비 4.1%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공적연금의 개혁으로 비용은 GDP대비 2.6%가 더 증가하여 2050년 전체 공적연금지출은 GDP대비 6.7%로 추정

<표 33> 영국 국가연금개혁으로 인한 비용추계

(단위 : %)

개혁비용	2008	2012	2020	2030	2040	2050년
연금크레딧 개혁	0.0	0.2	0.6	0.9	1.3	1.9
국가기초연금 개혁	0.0	0.0	0.3	0.8	1.3	1.5
국가 2층연금 개혁	0.0	0.0	0.0	0.1	0.2	0.2
국가연금수급연령변경	0.0	0.0	0.0	-0.3	-0.5	-1.0
국가연금 개혁 전체 비용	0.0	0.3	0.8	1.6	2.2	2.6
개혁결과 총연금지출	5.2	5.2	5.2	5.9	6.5	6.7

자료 : DWP(2006. 5), Security in retirement: towards a new pensions system, UK

10. <참고자료>

Beer, Alex(2006), UK Pensions and Pension Reform, Urban Institute Conference on Social Security Reform Proceeding paper.

DWP(2006. 5), Security in retirement: towards a new pensions system, UK.

DWP(2006. 5), National Pensions Debate Final Report, UK.

DWP, Pension Statics, Population Trends, Statistical Summary Feb. 2007, National Statistics, UK.D

DWP(2006. 12), Personal accounts: a new way to save.

DWP(2007), Policy Simulation Model.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Pension Trends(2009. 6. 23, 2008. 6. 13, 2005. 10. 27)

- , Statistical Bulletin, 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s, 2008-based(2009. 10. 21).

Pensions Act 2007 Chapter 22, UK.

Pension Trends, 23 June 2009(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표 5.8, 통계자료 DWP

Pensions Policy Institute(2007. 2), Incentives to save and means-tested benefits, UK.

Pension Service(2009. 11), State Pensions, your guide.

Scottish Life, The state Second Pension Explained.

Pension Service, 2007/08 Pension Service Annual Report.

UK funding update: DB deficit improves to £15bn, 2010.

<웹 사이트>

http://www.direct.gov.uk

http://www.dwp.gov.uk/pensionsreform

http://www.hmrc.gov.uk/ni/index.htm

http://www.hmrc.gov.uk/rates/nic.htm

http://statistics.dwp.gov.uk/asd/stpp_cq.asp

http://www.thepensionsregulator.gov.uk/pensions-reform.aspx

VI. 일본의 공적연금제도

※ 일본의 인구, 경제일반(2008년 기준)[7]

인구수	1인당 GDP	자영자비율	기대수명 (2006년)	연간 인구 증가율	노인부양비율 (2006년)[8]
127,690천명	$33,628	13.0%	82.6세	-0.0005%	37.0%

1. 제도의 변천과정

▣ 1942년 : 사업장 남성근로자 대상으로 노동자연금보험법 실시

▣ 1944년 : 후생연금보험법으로 개칭 (여성노동자 적용)

▣ 1961년 : 국민연금 도입 (자영자, 5인 미만사업장 근로자, 농민 등)

▣ 1985년 : 현행 국민 (기초) 연금, 후생연금, 공제연금으로 체계화

▣ 1999년 : 후생연금 급여율 5% 인하, 연금급여를 물가에만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환, 소득비례연금 수급개시연령의 단계적 상향조정 (60세(2013년)→65세(2025년))

▣ 2004년 : 연금수준 (소득비례연금) 점진적 인하 및 국민/후생연금 보험료의 점진적 인상

▣ 2007년[9] : 70세 이후 소득활동 시 후생연금의 지급정지제도 시행 (노령후생연금과 임금의 합계가 48만엔이 초과하는 경우에 전액 또는 일부정지), 노령 후생연금 연기지급제도 시행 (66세 이후 수령하도록 신청가능)

7) http://www.mhlw.go.jp/
8) Pensions at a glance 2009
9) http://www.sia.go.jp

▣ 2010년[10] : 5천만건의 개인의 연금기록이 매칭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2010년부터 새로운 관리기관을 두어 사회보험청 (Social Insurance Agency) 을 일본연금기구로 재편

2. 적용범위 - 가입자규모 (Coverage)

○ 국민연금: 후생연금 적용사업소에 고용된 70세 미만인 자,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이 외의 20세 이상 60세 미만(외국인 포함)인 자

○ 후생연금: 70세 미만의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2002년 이전 65세 미만)

※ 법인 사업장의 경우 피용자 수에 관계없이 모든 업종에 적용

○ 공제연금제도 : 공무원, 사립학교 교사 및 피용자, 농업, 산림업, 어업협동조합의 피용자 등을 위한 특별제도

[그림 16] 공적연금제도 체계 및 가입자 규모(2008년 3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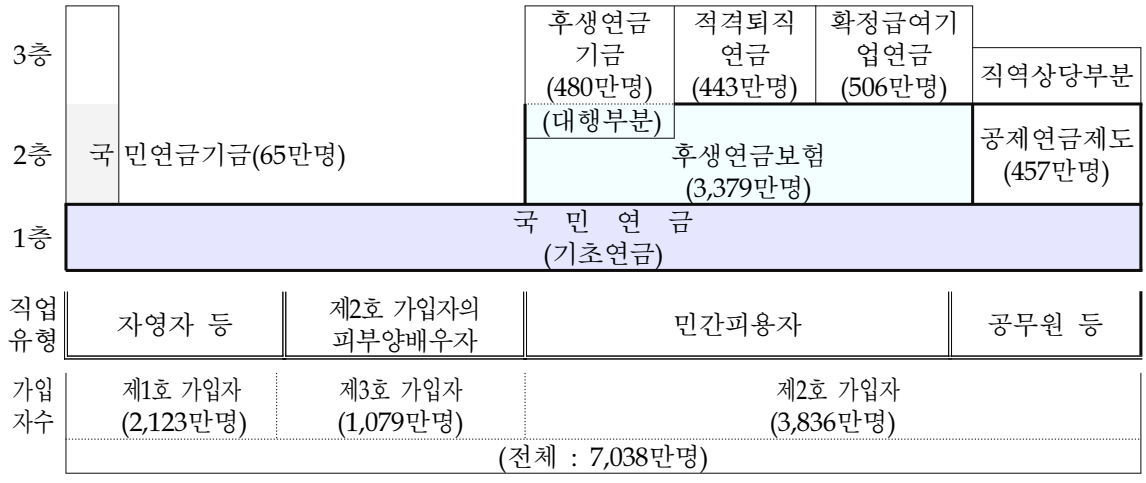

주 : 1. 제1호 가입자 : 20세이상 60세미만 자영자, 농민, 학생 등
2. 제2호 가입자 : 민간피용자, 공무원 등
3. 제3호 가입자 : 민간 피용자와 공무원 등의 배우자
4. 국민연금기금 : 후생연금 및 공제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자영자 등의 제1호 피보험자를 위한

10) Pensions at a glance 2009, http://www.sia.go.jp

추가연금제도
5. 후생연금기금 : 국가에서 운영하는 후생연금보험의 일부를 국가를 대신하여 지급함과 동시에 기업의 실정에 따라 독자적인 추가급여를 실시

자료: Outline of the Japanese Pension System, 일본 후생노동성

3. 재정부담

○ 국민연금 (부과방식) 보험료[11)]

— 제1호 가입자: 14,660엔 (2009년)

※ 2008년 4월부터 매년 280엔씩 인상 2017년 이후 16,900엔

— 제2호 및 제3호 가입자: 별도로 납부하지 않음 (후생연금보험과 공제연금에서 재정 부담)

— 정부보조: 급여비용의 1/2

— 징수업무: 연금사무소 (일본연금기구 산하)에서 일괄징수 (2002년 4월 이전에는 당해연도분의 보험료는 시정촌이 징수)

○ 후생연금 (기초연금부분 포함) 보험료[12)]

— 노사 절반씩 부담: 13.934%(2004년) → 15.704%(2009년) → 18.3%(2017년)

※ 2004년 10월부터 매년 0.354%씩 인상⇒2017년 이후 18.30%

— 표준보수월액의 상한 및 하한 각각 620천엔, 98천엔

※ 보험료율 적용변경: 2003년 4월 이후 총보수제 도입 (상여 등을 일반보험료 부과대상)

— 징수업무: 사업장에서 연금사무소 (일본연금기구 산하) 로 납부

4. 급여

○ 국민연금[13)]

11) http://www.sia.go.jp
12) http://www.sia.go.jp

— 노령기초연금 수급조건: 보험료 납부기간이 25년 이상이고, 최소한 65세에 도달해야 지급 (단, 60세에서 64세 사이에 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경우 감액)

— 노령기초연금 급여산식(연간)

$$= 792{,}100\text{엔} \times \frac{\text{보험료 납부월수} + \text{보험료 전액면제 월수}\times 4/8 + \text{보험료 1/4납부 월수}\times 5/8 + \text{보험료 반액납부 월수}\times 6/8 + \text{보험료 3/4납부 월수}\times 7/8}{40(\text{가입가능연수})\times 12}$$

※ 792,100엔은 연금액의 물가연동제에 따라 전년도 노령기초연금액에 대한 물가상승률 적용으로 결정

— 노령기초연금 급여수준 (2009년 기준)

• 노령기초연금은 근로자 월평균소득의 약 16.8% (최대 20.8%)수준

※ 일본 정규직 직원의 월평균 임금은 2009년 기준 316.5천엔

— 연금수급자 규모 (2004년 재정추계결과)

• 노령기초연금 2,760만명, 장해기초연금 160만명, 유족기초연금 10만명 (2010년)

• 노령기초연금 수급자 대비 피보험자 비율은 추계기간 (2060년 까지)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

※ 피보험자수/수급자수 => 2.4(2010년), 2.0(2015년), 1.3(2060년)

○ 후생연금[14]

— 노령후생연금 수급조건

• 노령기초연금 수급조건을 충족하고 후생연금보험 가입기간이 있는 자 중 60세이상(60세(2013년) → 65세(2025년))

— 노령후생연금 급여산식 (A+B)

13) http://www.sia.go.jp, http://www.mhlw.go.jp/
14) http://www.sia.go.jp

• 2003년 3월까지의 가입기간분 (A)

=> 평균 표준소득월액 × 승률 (7.657/1000～7.125/1000) × 후생연금가입기간(월수) × 슬라이드율(0.988)

※ 승률은 생년월일에 따라 상이

• 2003년 4월 이후의 가입기간분 (B)

=> 평균 표준소득월액 × 승률 (5.890/1000～5.481/1000) × 후생연금 가입기간 (월수) × 슬라이드율 (0.988)

※ 2003년 이후 승률이 낮아진 것은 급여산정 소득기준이 변경되어 승률을 낮추어야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임

— 노령후생연금 급여수준 (2009년 기준)

• 노령후생연금은 근로자 평균소득의 36.7% 수준

— 연금수급자 규모 (2004년 재정추계결과)

• 노령후생연금 1,310만명 (25년 이상 가입), 장해후생연금 40만명, 유족기초연금 520만명 (2010년)

• 노령후생연금 수급자는 2040~2050년을 기점으로 증가 후 감소

5. 소득재분배 효과 (세대간)

○ 국민연금 (생애기간, 2010년 기준시점)

— 70세가 되는 1940년생: 300만엔 보험료 부담, 5,500만엔의 국민연금 수령 (4.5배)

— 20세가 되는 1990년생: 2,300만엔의 보험료 부담, 3,500만엔의 국민연금 수령 (1.5배)

○ 후생연금 (생애기간, 2010년 기준시점) : 기초연금 포함

— 70세가 되는 1940년생: 900만엔 보험료 부담, 5,500만엔의 후생연

금 수령 (5.1배)

— 20세가 되는 1990년생: 5,900만엔의 보험료 부담, 13,600만엔의 후생연금 수령 (2.3배)

※ 세부사항은 부록 1참조

6. 기금규모 및 운용

▣ 기금 규모 및 운용 현황

○ 후생연금 및 국민연금 적립액 운용현황

— 2008년 말 현재 약 129조엔의 적립금 보유

— 현재 적립금은 시장운용, 재정투융자채권 (이하 "재투채") 인수, 재정융자자금에의 예탁 등 세 가지 방법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 (이하 "독립행정법인", GPIF) 설립 이후 기존 구연금복지사업단으로부터의 승계자산분은 타 기관으로 이전됨

<표 34> 연금적립금 규모 (2008년 말 기준)

(단위: 억엔, %)

구분	합 계		
		후 생 연 금	국 민 연 금
자산액	1,288,881	1,166,496	71,885
수익률	-6.86	-6.88	-7.29
GDP 규모	5,376,210		
GDP 대비 비중	24%		

주: 1. 승계자산은 구자금운용부에서의 차입금을 원금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산액에는 계상하지 않음
2. 승계자산 관련 수익액은 후생연금 및 국민연금의 적립금의 평균잔고에 의해 배분
자료 : 2008년 연금적립금 운용보고서, 후생성, 2009.08.

<표 35> 적립금 전체의 운용수익률 현황 (2008년 말 기준)

(단위 : %)

합 계	수익률		-6.86
		시장운용분(운용수수료등공제후)	-7.07(-10.06)
		재투채인수분	0.23(1.18)
		재정융자자금예탁분	0.06(0.57)
		승계자산분	-0.08
후생연금	수익률		-6.83
		시장운용분(운용수수료등공제후)	-7.05(-10.06)
		재투채인수분	0.23(1.18)
		재정융자자금예탁분	0.06(0.58)
		승계자산분	-0.08
국민연금	수익률		-7.29
		시장운용분(운용수수료등공제후)	-7.48(-10.06)
		재투채인수분	0.25(1.18)
		재정융자자금예탁분	0.02(0.31)
		승계자산분	-0.08

주 : 괄호 내는 각 자산의 수익률이고, 괄호 외는 적립금전체에 대한 수익률
자료 : 2008년 연금적립금 운용보고서, 후생성, 2009.09.

○ 후생연금 및 국민연금 시장운용분 운용현황

— GPIF[15]는 후생노동대신이 기탁한 후생연금 및 국민연금의 적립금을 후생노동대신이 정한 「운용기본방침」에 의거해서 시장에서 운용함

— 운용기본방침에 제시된 포트폴리오에 의거해 국내채권을 중심으로 국내외의 주식 등을 일정정도 포함한 분산투자 실시

— 시장운용은 민간 운용기관 (신탁은행 및 투자고문업자)을 활용하고, 운용기관을 통해서 운용대상자산 (국내채권, 국내주식, 외국채권, 외국주식, 단기자산의 5개 자산) 마다 각 연도별 자산구성 비율의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관리 및 운용

— 또한 재정융자자금특별회계가 발행한 '재투채'를 인수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운용분과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음

15) 2006년 4월 1일 부로 연금자금운용기금이 해체되고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으로 새롭게 출발. GPIF(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 영문 명칭은 계속 사용함

<표 36> GPIF 운용 기금 규모

(단위 : 억 엔, %)

구 분	자산배분현황		시장규모 대비 비중	
	금액	투자비중	시장규모	대비비중
국내채권	618,887	66.9%	11,052,100 (A)	5.60%
국내주식	113,986	12.3%	3,053,500 (B)	3.73%
외국채권	100,135	10.8%	na	na
외국주식	90,781	9.8%	na	na
단기자산	1,608	0.2%	na	na
계	925,397 (C)	100.00%	14,105,600 (A+B)	8.38% (C+D)/(A+B)
재투채 인수분 (시가)	250,888 (256,410)(D)			

자료 : 2005년 자금운용업무개황서, 2006.07.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
주식시장 규모- http://www.world-exchanges.org/WFE/home.Asp
채권시장 규모 - http://www.bis.org

— 연간 수익률은 2003년 이후 양의 수익률을 거두다가 2007년 이후 음의 수익률을 기록

<표 37> 연도별 시장운용분 수익률 현황

(단위 :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시장운용분 수익률	4.60%	14.37%	4.75%	-6.41%	-10.03%

자료 : 2008년 자금운용업무개황서, 2009.07.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

— 2007년 및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매우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함

<표 38> 시장운용분 운용수익률 현황 (2009년 3월말 기준)

(단위 : %)

구분	수익률
국내채권	1.35 %
국내주식	-35.55 %
외국채권	-6.75 %
외국주식	-43.21 %
단기자산	0.53 %
계	-10.04 %
재투채 인수분	1.18 %

자료 : 2005년 자금운용업무개황서, 2006.07.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

○ 후생연금 (기초연금부분 포함) 재정추계 (2009년 가격 기준)

— 2009년 누적 적립액: 144.4조엔 (적립배율: 4.1배)

※ 2009년 연간 수입 34.9조엔 (보험료 23.8조엔, 운용 2.1조엔), 지출 35.8조엔

— 재정추계 방향: 2100년에 적립배율이 1이 될 때 까지 기금고갈이 되지 않도록 조정 (최종 보험요율: 18.3%)

○ 국민연금 재정추계 (2009년 가격 기준)

— 2009년 누적 적립액 : 10.0조엔 (적립배율: 2.1배)

※ 2009년 연간 수입 4.8조엔 (보험료 2.2조엔, 운용 0.1조엔), 지출 4.7조엔

— 재정추계 방향: 2100년에 적립배율이 1이 될 때 까지 기금고갈이 되지 않도록 조정 (최종 보험료: 16,900엔)

※ 세부사항은 부록 2참조

○ 자산배분

—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된 자산구성비중 (기본포트폴리오) 등 운용의 기본방침에 따라 자산 운용

— 운용의 기본방침은 민간경제활동에의 영향에 유의하면서, 특정

운용방법에 집중되지 않도록 안전성과 확실성을 가지고 운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용되어야 한다고 법에 명시

— 2009년 목표 기본포트폴리오는 다음과 같음

<표 39> 2009년 기본포트폴리오

(단위 : %)

기대수익	기대위험	국내채권	국내주식	외국채권	외국주식	단기자산
3.37%	5.55%	67%	11%	8%	9%	5%
괴리허용폭		± 8%	± 6%	± 5%	± 5%	-

자료 :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 2009년도 계획, 2009.4.

▣ 기금운용체계

○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 (GPIF;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

— 2006.4.1일자로 "연금자금운용기금"에서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으로 변경 (영문명칭은 동일)

• 명칭의 변경 뿐만 아니라 기금운용지배구조도 변경됨

— 독립행정법인 내부에 운용위원회 설치

— 후생연금 및 국민연금 적립금의 시장운용분을 운용하며 국내채권 passive 운용분 이외에는 모두 외부 위탁운용

[그림 17] 독립행정법인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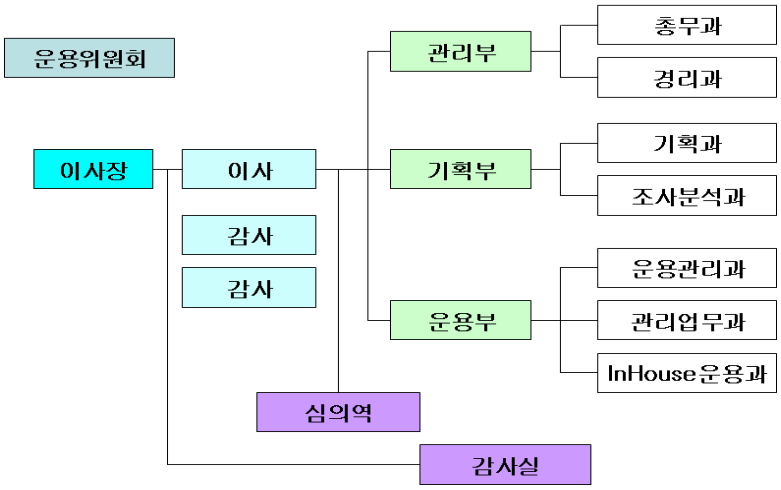

○ 운용위원회

— 경제·금융에 대한 전문가 중에서 후생노동대신이 임명한 위원으로 구성 (11인 이내)

— 중기계획 등을 심의, 운용상황 등 관리운용업무 실시상황 감시

※ 개혁 이전에는 후생성의 사회보장심의회 연금자금운용분과회의에서 기금운용전반에 대한 자문, 질의에 대한 의견제시 등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연금자금운용분과회의 대신 좀 더 강력한 기능을 가진 운용위원회를 독립행정법인과 같이 둠으로 해서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게 됨

○ 후생성

— 후생노동대신은 독립행정법인이 달성해야할 운용수익률 등의 운용목표나 업무운영의 효율화와 같은 중기목표를 정하여 법인에 지시

— 후생노동성의 평가위원회는 매년 법인의 업무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업무개선 등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

7. 관리체계

○ 국민연금사업은 후생노동성의 관할임

○ 일본연금기구(비공무원형의 공법인)는 공적연금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

○ 기금운용에 있어서는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이 주체적으로 관리함

8. 기타 사회보장제도

<표 40> 공적연금과 공적부조 수급자 규모 (2006년 기준)1)

(단위 : 천명, %)

65세 이상 인구(A)	공적연금		공적부조	비율		
				B/A	C/A	D/A
26,604	국민연금(B) 24,968	후생연금(C) 24,043	공적부조(D)	93.9	90.4	

주 : 1. 60~64세인 일부 조기후생노령연금 수급자가 포함되었음. 공적부조는 60세 이상 수급자임.
자료: www.stat.go.jp, www.sia.go.jp

○ 공적연금 급여수준과 공적부조 수급률의 관계

— 공적연금의 평균 급여수준이 53.5% (국민+후생 연금) 로 높은 편이며 공적부조의 비중은 매우 낮음

— 이는 공적부조의 수급조건이 엄격하고, 공적부조보다는 기초연금에 국고지원을 주력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

○ 최저생계비 수준 (2003년 기준)[16)]

— 동경에 거주하는 4인가구 (부부 20~40세 + 초등학생 자녀 6~8세 + 유아 3~5세) 의 최저생계비는 월 197,290엔

— 동경에 거주하는 일인가구 (20~40세 건강한 가구) 의 경우의 최

16) 류정순,「한일 공공부조제도 비교」, 한일공공부조제도비교국제포럼 발제자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04.

저생계비는 월 83,570엔

※ 일본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약 40%, 생계보호수준 (급여수준) 은 이보다 매우 낮음 (일반근로자 평균소비 60%수준) 따라서 일본의 공공부조 수혜자 수는 전 국민의 1% 가량 (김재원 한양대 교수, 자유기업원 'NGO 모니터'에서 '최저생계비 보장 수준, 선진국보다 높아' 2005.4.22)

<표 41> 평균소득 대비 연금급여수준 (월, 독신기준, 2009년 기준)1)

평균소득	평균노령연금	최저연금	최고연금 (급여상한)	최저임금	빈곤선
100	국민: 16.8 후생: 36.7	국민: 13.0(Full Pension 5/8)	국민 : 20.8	-	25.7

주 : 후생연금 평균은 기초연금이 제외되어 있음. 최고연금은 국민연금은 40년 가입 완전기초연금 기준. 최저연금은 최소가입기간 25년으로 산출. 최저임금은 지역별, 산업별 시간당으로 책정. 최저생계비는 68세 독신 東京의 부조선정기준

<표 42> 공적부조 수급조건

소득	자산	부양의무자	비고
-근로 및 사업소득, 연금 등 사회보장급부, 가족 등 이전소득 -거택 또는 시설거주별, 지역별 급지, 가구구성, 연령에 따른 선정기준차별운영	-예금, 적금, 보험, 부동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판결 시 3촌	모든 연령에 일반적용 제도로 운영

9. 최근 개혁 동향 (2000년 이후)

▣ 2001년 주요 개정내용

○ 2001년 관리운용체계의 개혁

대장성이 배제되고 주무부서인 후생노동성이 직접기금을 관장하고, 연금복지사업단이 해체되고 연금자금운용기금이 적립기금을 예탁 받아 운용

— 1996년 대장성 개편안 (권한축소, 감독기능 분리) 이 확정되기 전까지 후생연금보험 및 국민연금의 여유자금은 대장성에 예탁되어 관리운용되었으나 개혁이후 원 소관부처인 후생노동성으로 이관

• 적립기금의 운용으로부터 대장성의 역할 배제되었고 단지 기존 예탁되어 있던 재정융자자금이 전액 반환되는 2008년까지 잔여기금

반환 및 잔여기금에 대한 이자지급만을 담당

— 2001년부터 기금을 관리하던 연금복지사업단이 해체되고 연금자금운용기금이 새롭게 조직되어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적립기금을 직접예탁 받아 운용

▣ 2004년 주요 개정내용

○ 연금개혁의 배경: 후생연금 재정파산 위험

— 고령화에 따른 연금수급액 증가

—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보험료 부담 세대수 감소

— 전후 경제성장기 연금수급액의 과도한 인상

— 연금 및 연금기반시설의 방만한 운용에 따른 연금자산의 감소

○ 개혁의 주요골자

— 경제·사회 변화와의 조화 및 지속 가능한 제도로서의 신뢰 확보

• 미래 근로세대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안정적 노년소득을 보장하는 공적연금으로서의 적절한 급여수준을 확보

• 사회·경제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빈번한 제도개선이 필요치 않은 지속 가능한 제도 구축

— 다양한 생활 및 노동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연금제도의 구축

• 다양한 생활 및 노동 행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 구축,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공헌을 연금제도에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사회적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크레딧 적용 및 확대)

○ 개혁의 구체적 내용: 재정안정화 방안

— 국민연금의 국고부담의 인상

— 재정검증의 실시

• 적어도 5년마다 연금재정의 현황 및 약 100년 (재정균형기간)에 걸친 연금재정의 검증을 실시

— 보험료 및 급여수준 조정

- 후생연금 및 국민연금 보험료 단계적 인상 후 장래 보험료 수준 고정
- 급여수준 자동 조정 및 후생연금 급여수준을 적어도 현역 근로세대 평균수입의 50%를 상회토록 조정

▣ 2006년 주요 개정내용

○ 2006년 관리운용체계의 개혁

개혁의 목적은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책임소재를 명확화 하기 위함이며, 신설된 독립행정법인은 구 연금자금운용기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나 형태적으로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상당히 독립적인 형태를 갖춤

— 2001년 12월 19일 의결된 '특수법인등정리합리화계획'에 따라 연금자금운용기금을 해체하고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을 2006년 4월부터 신설 운영

— 신설된 독립행정법인은 기존 연금자금운용기금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나 전문성 및 책임소재를 좀 더 명확화하기 위해 기능상 독립을 꾀함(기금운용체계는 "7. 자산배분 및 기금운용체계" 참조)

— 기금운용은 시장운용분에 대한 관리운용업무 외의 기존 연금복지사업단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모두 타 기관으로 이전하거나 폐지

- 현재 과도기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그린피아 관리업무 등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양되거나 철거되었으며 2005년 말까지 전부 철수
- 가입자에 대한 융자업무 및 교육자금 대부에 대해서는 2006년 이후부터는 신규 주택융자를 중단하고, 기존의 주택융자채권 및 교육자금 융자알선 관리 및 회수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독립행정법

인 복지의료기구가 승계하여 관리 회수를 실시하도록 업무 이관

[그림 18] 2006년 기금운용관리체계 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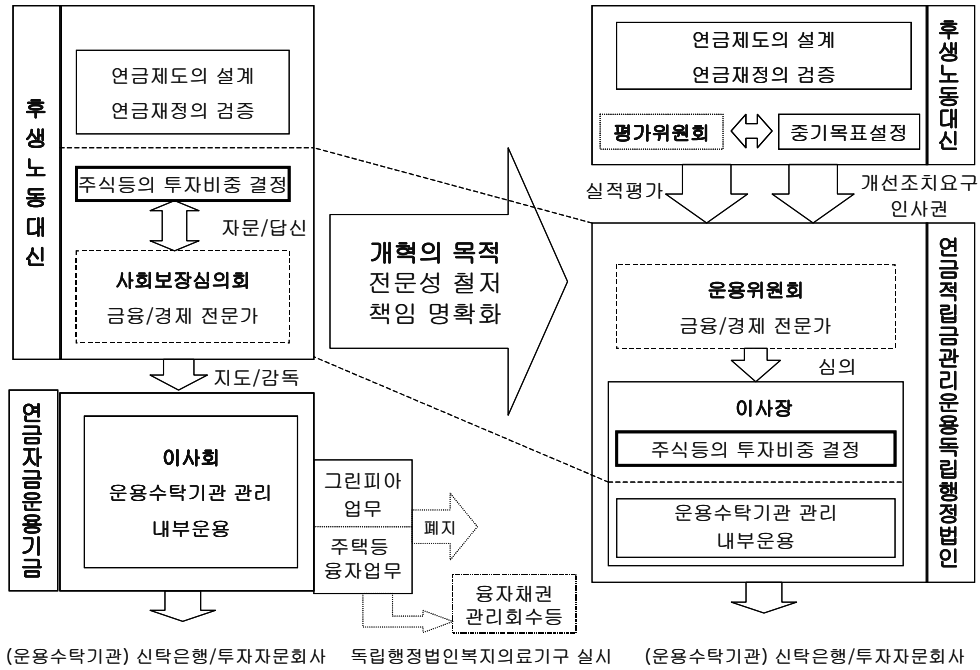

부록 1.

세대별 보험료 부담액과 연금 급부액(2009년 추계결과

▣ 2007년 주요 개정내용

○ 70세 이상 소득활동자에 대한 노령후생연금의 지급정지

— 노령후생연금과 임금의 합계액이 48만 엔을 초과할 경우 노령후생연금의 일부 및 전부가 지급정지 (1937년 4월 1일 이전 출생자 제외)

○ 66세부터 증액하여 받을 수 있도록 노령후생연금 연기지급제도 시행

○ 이혼 시의 후생연금분할제도 도입

— 2007년 4월 1일 이후 이혼한 경우 혼인 기간 중의 후생연금액을 당사자 간 합의비율에 따라 나눔

▣ 2010년 주요 개정내용

○ 사회보험청을 일본연금기구(공적연금의 운영업무 담당)와 전국건강보험협회(건강보험사업 담당,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대상)로 재편하여 운영

○ 2010년 6월 민주당은 '2010 참의원 선거공약'을 발표

— 연금기록소실 문제를 2011년까지 집중적으로 다루고 가입자가 본인의 수급예정액을 알 수 있도록 '연금통장'을 만듬

— 연금보험료의 유용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 연금제도의 일원화와 월액 7만엔의 최저보장연금을 실현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근본적 개혁

○ 정부는 민주당의 선거공약을 토대로 '신연금제도 기본원칙'을 발표

— '안심・납득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목표로 7개의 기본원칙이 제정됨

— ① 연금일원화 원칙: 전 국민이 동일한 하나의 연금제도에 가입하는 것

② 최저보장의 원칙: 최저한도의 연금액을 보장할 것

③ 부담과 급부 명확화 원칙: 부담과 급부 관계가 명확한 구조일 것

④ 지속가능 원칙: 장래에도 모두가 부담할 수 있고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등, 지속가능한 제도로 만들 것

⑤ '사라지지 않는 연금'의 원칙: 연금기록이 확실한 관리와 가입자 본인에 의한 확인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 것

⑥ 미납・미가입 제로의 원칙: 연금보험료의 확실한 징수에 의해 무연금자를 없애는 것

⑦ 국민적 의론의 원칙: 국민적 의론 하에 제도설계를 실시할 것

— 정부는 초당파적 협의를 요청하고 있으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또한 최저한도의 연금액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을 둘러싸고 야당과 첨예한 대립 중임

10. <참고자료>

Outline of the Japanese Pension System, 일본 후생노동성
Pensions at a glance 2009
2009년 일본재정추계 관련자료.
2008년 연금적립금 운용보고서, 후생성, 2009.08.
2008년 연금적립금 운용보고서, 후생성, 2009.09.
2005년 자금운용업무개황서, 2006.07.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
2008년 자금운용업무개황서, 2009.07.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
2005년 자금운용업무개황서, 2006.07.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 2009년도 계획, 2009.4.

<웹 사이트>
http://stats.oecd.org/index.aspx
http://www.sia.go.jp
http://www.mhlw.go.jp
http://www.stat.go.jp
http://www.bis.org
http://www.world-exchanges.org/WFE/home.Asp

부 록

부록 1. 세대별 보험료 부담액과 연금 급부액(2009년 추계결과)

<부표 1> 국민연금의 세대간 소득재분배

2010년 기준연령(출생년도)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액 ①	연금급부액②	배율 ②/①
70세 (1940년생)	300(300)	1,300(1,400)	4.5
60세 (1950년생)	500(500)	1,400(1,300)	2.7
50세 (1960년생)	900(700)	1,700(1,400)	1.9
40세 (1970년생)	1,300(1,000)	2,100(1,500)	1.6
30세 (1980년생)	1,800(1,200)	2,700(1,800)	1.5
20세 (1990년생)	2,300(1,400)	3,500(2,200)	1.5
10세 (2000년생)	3,000(1,700)	4,600(2,500)	1.5
0세 (2010년생)	3,900(1,900)	5,800(2,900)	1.5

<부표 2> 후생연금 (기초연금 포함)의 세대간 소득재분배

2010년 기준연령 (출생년도)	후생연금(기초연금을 포함)				
	보험료 부담액①	연금급부액 ②	배율 ②/①	65세 이후 급부분 (재계시)	
				연금급부액 ②	배율 ②/①
70세 (1940년생)	900(900)	5,500(5,600)	6.5	4,300(4,300)	5.1
60세 (1950년생)	1,300(1,200)	5,200(4,700)	3.9	4,600(4,200)	3.4
50세 (1960년생)	2,200(1,800)	6,200(5,100)	2.9	6,100(5,000)	2.8
40세 (1970년생)	3,200(2,400)	8,000(5,900)	2.5	8,000(5,900)	2.5
30세 (1980년생)	4,500(3,000)	10,400(7,000)	2.3	10,400(7,000)	2.3
20세 (1990년생)	5,900(3,600)	13,600(8,300)	2.3	13,600(8,300)	2.3
10세 (2000년생)	7,700(4,200)	17,600(9,700)	2.3	17,600(9,700)	2.3
0세 (2010년생)	9,800(4,900)	22,500(11,200)	2.3	22,500(11,200)	2.3

주 : 후생연금이 소득비례연금이지만 제도 개정에 따른 선후세대간의 소득재분배는 발생

부록 2. 후생/국민연금의 재정전망(2009년 추계결과)

<부표 3> 국민연금 재정전망(2009년 재정계산)

년도	보험료 월액 (2004년도 가격, 엔)	수입(조엔)			지출 합계* (조엔)	수지 차감 잔액 (조엔)	년도 말 적립 금 (조엔)	년도말적립금 (2009년도가격) (조엔)	적립 배율
		합계*	보험 료수 입	운용 수입					
2009	14,700	4.8	2.2	0.1	4.7	0.1	10.0	10.0	2.1
2010	14,980	4.9	2.2	0.2	4.7	0.2	10.2	10.1	2.1
2011	15,260	4.9	2.2	0.2	4.7	0.1	10.3	10.3	2.2
2012	15,540	4.9	2.2	0.2	4.8	0.1	10.4	10.5	2.1
2013	15,820	5.1	2.3	0.2	5.0	0.1	10.5	10.3	2.1
2014	16,100	5.4	2.4	0.3	5.2	0.1	10.7	10.2	2.0
2015	16,380	5.7	2.5	0.3	5.4	0.2	10.9	10.0	2.0
2020	16,900	6.6	2.9	0.5	6.1	0.5	13.0	10.6	2.0
2025	16,900	7.3	3.2	0.6	6.6	0.7	16.3	11.7	2.4
2030	16,900	8.0	3.4	0.8	7.1	0.9	20.6	13.1	2.8
2040	16,900	9.5	3.6	1.2	8.7	0.8	29.9	14.9	3.4
2050	16,900	11.5	4.0	1.5	10.9	0.5	36.6	14.2	3.3
2060	16,900	13.3	4.4	1.6	13.0	0.3	40.6	12.3	3.1
2070	16,900	14.7	4.8	1.6	14.8	-0.2	40.8	9.7	2.8
2080	16,900	16.0	5.4	1.5	16.4	-0.4	37.8	7.0	2.3
2090	16,900	17.3	6.1	1.3	17.9	-0.6	33.0	4.8	1.9
2100	16,900	18.7	6.7	1.0	19.7	-1.0	25.1	2.8	1.3

주 : 1. 장기적인(2009년도~)경제 전제(임금상승율 2.1%, 물가상승률 1.0%, 운용 이율 3.2%, 가처분소득상승률 2.1%(단, 2017년도까지는 1.9%))
2. [적립정도]란 전년도 말 적립금의 당년도 지출 합계에 대한 배율
3. [2009년도 가격]이란 임금 상승률에 따라 2009년도 가격으로 환산
4. *에는 국민연금의 기초연금각출금에 해당하는 국고부담이 포함

<부표 4> 후생연금 재정전망(2009년 재정계산)

년도	보험요율 (대비 총 보수, %)	수입(조엔)			지출(조엔)		수지 차감 잔액 (조엔)	년도말 적립금 (조엔)	연도말 적립금 (2009년도 가격) (조엔)	적립 정도
		합계 *	보험료 수입	운용 수입	지출계*	기초 연금 갹출금				
2009	15.704	34.9	23.8	2.1	35.8	13.1	-0.9	144.4	144.4	4.1
2010	16.058	35.0	24.7	2.5	36.7	13.5	-1.7	142.6	141.1	3.9
2011	16.412	36.7	26.2	2.7	37.8	13.9	-1.1	141.6	141.7	3.8
2012	16.766	38.5	27.6	2.8	39.2	14.4	-0.7	140.9	141.3	3.6
2013	17.120	40.4	28.9	3.1	40.4	15.0	-0.1	140.8	138.3	3.5
2014	17.474	42.5	30.3	3.6	41.3	15.7	1.2	142.0	135.4	3.4
2015	17.828	44.8	31.7	4.1	42.6	16.3	2.1	144.2	132.5	3.3
2020	18.30	53.3	36.9	6.8	45.7	18.1	7.6	172.5	140.6	3.6
2025	18.30	59.5	40.8	8.6	48.6	19.2	10.9	219.9	158.5	4.3
2030	18.30	66.1	44.5	11.1	52.3	20.5	13.8	284.2	181.0	5.2
2040	18.30	78.5	49.1	16.5	67.3	25.5	11.2	417.1	207.5	6.0
2050	18.30	90.4	54.1	20.2	82.9	31.9	7.5	507.7	197.3	6.0
2060	18.30	101.2	59.8	22.5	97.6	37.6	3.6	562.5	170.8	5.7
2070	18.30	109.6	65.2	22.6	112.8	43.4	-3.3	561.3	133.1	5.0
2080	18.30	116.7	72.4	20.3	124.2	47.8	-7.5	502.5	93.1	4.1
2090	18.30	123.9	81.2	16.6	135.6	52.3	-11.7	406.4	58.8	3.1
2100	18.30	129.9	90.7	10.3	149.8	57.8	-19.9	247.2	28.0	1.8

주 : 1. 장기적인(2009년도~)경제 전제(임금상승율 2.1%, 물가상승률 1.0%, 운용 이율 3.2%, 가처분소득상승률 2.1%(단, 2017년도까지는 1.9%))
2. [적립정도]란 전년도 말 적립금의 당년도 지출 함계에 대한 배율
3. [2009년도 가격]이란 임금 상승률에 따라 2009년도 가격으로 환산
4. 후생연금기금의 대행 부분을 포함하며, 후생연금 전체의 재정 전망
5. *에는 후생연금의 기초연금각출금에 해당하는 국고부담이 포함

VII. 캐나다의 공적연금제도

1. 제도의 변천과정

▣ 1951년 : 노령보장법 (Old Age Security Act) 제정으로 1952년부터 OAS (Old Age Security) 시행

▣ 1966년 : 소득비례연금인 캐나다 연금제도 (Canada Pension Plan: CPP) 및 퀘벡연금제도 (Quebec Pension Plan: QPP) 시행

▣ 1967년 : OAS 보충을 위한 소득보충보장제도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GIS) 도입

▣ 1975년 : 배우자수당제도 (Spouse's Allowance: SA) 도입, 2000년 이후 수당 (Allowance) 및 유족배우자수당제도로 재편

▣ 1989년 : OAS제도에 고소득층 급여반납제도 (clawback) 도입

▣ 1996년 : OAS제도의 적용범위에서 고소득층 제외

▣ 1998년 : CPP 재정안정화 및 투자정책 확립을 위한 제도개혁

▣ 2000년 : OAS와 CPP 적용이 동성의 관습법상의 파트너에게 확대

▣ 2009년 : 조기연금의 감액과 연기연금의 증액율을 2016년까지 점진적으로 조정하여 급여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함 ("Economic Recovery Act," Dec. 12, 2009)

2. 적용범위 -가입자 규모 (Coverage)

▣ 1층 기초보장 부문 (OAS 및 GIS)

○ OAS

— OAS제도는 65세 이상으로 18세 이후 10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한 모든 국민들에게 정액급여를 제공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임

— 1989년 급여반납제도* 도입, 1996년 7월 이후 급여반납대상자에게 원천적으로 반납해당분을 지급안함(준보편적 프로그램으로 전환)

◈ **급여반납제도** (clawback of OAS benefits)

○ 1989년에 OAS제도에 도입되었으며, 고소득자들은 급여의 일부를 다음해 봄에 소득세 신고 시 반납하도록 하는 제도

— 당시 $50,000이상의 소득의 $1당 15센트를 반납해야 하며, 순소득 $72,521을 초과하는 사람은 소득세 정산 시에 OAS 급여 전부를 반납하도록 함

○ 급여반납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1989년에 OAS 수급자의 4%였고 2000년까지 5%로 증가하였고 2007년에는 7.2%에 이름.

— 1989년 이후 급여반납을 위한 기준소득($50,000)은 부분적으로 물가인상에 따라 연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반납 실질 기준소득이 계속 하락하게 되어 점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급여반납의 적용을 받게 됨

— 1996년 7월 이후에는 연방정부가 급여지급시 반납분을 미리 제하고 급여 지급

— 2009년 현재 기준소득은 $66,335이며 이 기준소득 이상 소득의 15%는 다음해 OAS에서 삭감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소득이 $107,692 이상이면 OAS 급여액이 없음

○ GIS 수급자격

— 2009년 기준 연소득 $15,672 (독신기준) 미만인 경우 수급자격 발생

— 수급기준인 연소득에는 OAS, GIS, Allowance 급여는 비포함, 근로소득 및 임대소득, CPP 급여 및 사적연금급여 등은 포함

○ Allowance and Allowance for the Survivor(유족배우자 수당)수급자격

— 캐나다에 거주하는 60~64세이면서 18세 이후 10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하고 일정한 소득기준(<표 41> 참조)에 해당되어야 함

※ 배우자는 사실혼 포함, 2000년부터 동성 배우자도 포함

— 65세 이후에는 OAS 및 GIS 수급자로 전환됨

▣ 2층 소득비례연금 (CPP 제도)

○ 캐나다 연금제도 가입대상은 18세 이상 70세 미만의 모든 캐나다 근로자 (공무원, 경찰 포함, 농업노동자, 임시직 노동자 등은 제외) 와 자영자로서 연간 근로소득이 $3,500 이상인 자 (퀘벡주는 독자적인 공적연금제도 QPP 운영)

3. 재정부담

▣ 1층 기초보장 부문 (OAS 및 GIS)

○ OAS 및 GIS의 재정

— 연방정부 부담, 2007년도 기준 $325.69억 지출 (OAS, GIS, 수당에 대한 지출규모, GDP 대비 약 2%)

— 일부 주들 (약10개 주) 에서는 연방정부의 기초연금 외에 지방정부의 보조금이 추가됨

▣ 2층 소득비례연금 (CPP 제도)

○ CPP는 본래 부과방식이었다가 1998년 개혁을 통해 사전적립(5년치 급여지급분)으로 전환, 보험료와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충당

○ 보험료율은 2003년 이후 9.9% (근로자·고용주 각 4.95%씩 부담, 자영자 본인 전액 부담)

○ 보험료 대상소득은 연간 $3,500 이상 $46,300까지의 소득 (2009년 기준)

4. 급여

▣ 1층 기초보장 부문 (OAS 및 GIS)

○ OAS 급여수준 (뒷면 <표 41> 참조)

— 40년 거주시 완전연금 (full pension) 이 주어지며, 거주기간이 미달될 경우 연 1/40만큼씩 감액되는 부분연금 수급

— 2009년 기준 평균월급여액은 $489.54, 최고월급여액은 $516.96으로 평균소득의 약 15% 수준이며, 순소득 $66,335 이상 노인은 초과소득 $1당 15센트의 급여상실, $107,692 이상인 사람은 무급여 (급여수준은 매월 1, 4, 7, 10월에 물가연동), 과세대상소득임

— 수급자 중 약 5%는 감액된 급여를 받고, 2%만이 무급여자

○ GIS 급여수준

— 2006년 기준 최대 월 $652.51 (독신), 평균 월 $452.61이며 추가소득이 있는 경우 매 $2당 $1만큼 급여감소, 비과세대상소득임 (아래 그림 및 <표 41> 참조)

[그림 19] 수급자 소득수준 및 GIS 급여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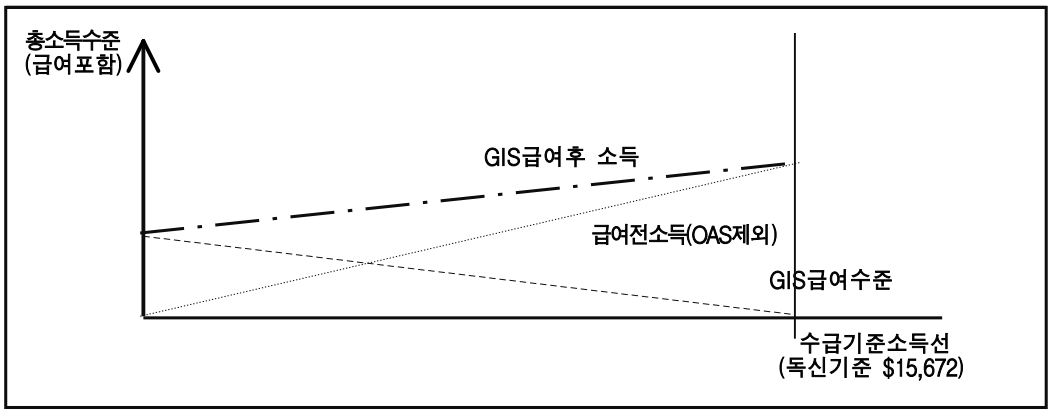

<표 43> OAS 및 GIS 급여 (2009년 7-9월 기준)

연령	급여종류	수급자	월평균급여 (2009년 3월)	월최대 급여	최대 연간소득
65세 이상	OAS	모든 수급자	$489.54	$516.96	*
	GIS	독신	$452.61	$652.51	$15,672
		수급자 배우자	$283.04	$430.90	$20,688
		비수급자 배우자	$433.71	$652.51	$37,584
		수당수급자 배우자	$368.57	$430.90	$37,584
60 ~ 64세	수당(Allowance)	모든 수급자	$386.27	$947.86	$28,992
	유족배우자 수당	모든 수급자	$593.84	$1,050.68	$21,120

주: * 급여환수제도, $66,335부터 감액
자료: 캐나다 인력개발국

○ Allowance and Allowance for the Survivor(유족배우자 수당) 급여수준

— 2009년 7월 기준 유족배우자의 경우 월 $1050.68이며 급여는 CPI에 따라 물가 연동, 조세부과대상에서 제외 (<표 41> 참조)

▣ 2층 소득비례연금 (CPP 제도)

○ 노령연금

— 급여산정은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과거 5년간의 연간 최대소득

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그 이후에는 물가인상에 따라 연동

— 급여수준은 월평균소득의 25% 수준 (2008년 기준 최대 노령연금액은 월 $884.58)

— 평균소득 산정시 소득이 낮거나 없는 기간은 가입기간의 15%까지의 기간만큼 제외 인정, 추가로 7세미만 아동 양육기간동안의 소득이 낮거나 없는 기간에 대해서도 평균소득계산시 제외

— 65세 수급시 100% 급여수준을 기준으로, 60~64세까지는 미달한 개월수에 따라 월 0.5%pt만큼 급여 감소, 65세 이상 70세까지 급여 연기시 초과한 개월수에 따라 월 0.5%pt만큼 급여 증가 (연금수급기간에 영속적으로 적용)

○ 장애연금

— 영속적 장애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한 사람들에 대해 지급되며, 수급자격은 과거 6년 중 4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자

— 급여는 정액급여부분과 소득비례급여부분으로 구성되며 정액급여부문은 모든 장애연금수급자에게 정액으로 지급, 소득비례급여부분은 노령연금의 75% 수준. 장애연금은 65세가 되면 노령연금으로 전환

○ 유족연금

— 수급조건은 사망한 가입자가 보험 가입 가능한 기간 중 1/3이상을 보험료 납부하거나 (최소 3년 이상 기여), 10년 이상 기여하여야 함

— 급여수준은 배우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사망한 가입자의 노령연금의 60%, 65세 미만인 경우는 급여액이 정액급여와 소득비례급여로 구성되는데 정액급여는 장애연금의 정액급여보다 훨씬 작고 소득비례부분은 사망한 가입자의 노령연금의 37.5%

○ 사망일시금

— 사망한 가입자의 장례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망시에 지급되는 일시금으로 급여액은 월노령 연금급여액의 약 6배에 해당

○ 노령연금 수급자 약 3,382천명, 유족연금 990천명, 장애연금 307천명 (2007년 기준)

<표 44> CPP의 수급자 및 급여수준

(단위: 월액, $, 천명)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최대 급여액	평균 급여액	수급 자수	최대 급여액	평균 급여액	수급 자수	최대 급여액	평균 급여액	수급자 수
2009	908.75	492.81	3,382	1,105.99	803.24	307	545.25	319.82	990

주: 유족연금의 최대급여액은 65세를 기준으로 한 금액임. 급여종류별 수급자 수는 07년 6월 기준임.
자료: HRSDC(2009), "Annual Report of Canada Pension Plan 2008~2009"

5. 소득재분배효과

▣ OAS와 GIS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

○ OAS와 GIS의 재원이 조세로 이루어지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이 존재

— 한편, OAS는 고소득층에게 OAS의 일부를 반납에게 함으로써 세대내 소득계층별 소득재분배 기능도 존재

• C$66,335~C$107,692 이상 노인은 초과소득 $1당 15센트의 급여상실(clawback), C$107,692 이상인 사람은 무급여 (2009년 기준)

— 아울러 GIS도 자산조사를 통한 선별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세대 간 소득재분배뿐만 아니라 세대내 소득계층별 소득재분배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

• 연간소득이 1인(2인)기준 C$15,672(C$37,584)이하 경우에만, GIS를 수령할 수 있음 (2009년 기준)

▣ CPP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

○ CPP는 소득비례연금제도로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은 없으나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소득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관계로 세대내 소득계층별 소득재분배 기능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 2009년 보험료 부과를 위한 최대 연간소득(maximum pensionable earnings)은 C$46,300이며, 이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보험료 제한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음 ([그림 24] 참조)

— 2012년부터 연금액 산정을 위한 가입기간 계산 시, 저소득 또는 무소득 상태 기간을 가입기간에서 최대 8년(2014년)까지 제외하도록 하여, 근로 중단에 따른 연금액 감소현상을 완화하도록 함 (General drop-out provision)

[그림 20] 소득계층별 연금수준과 총소득대체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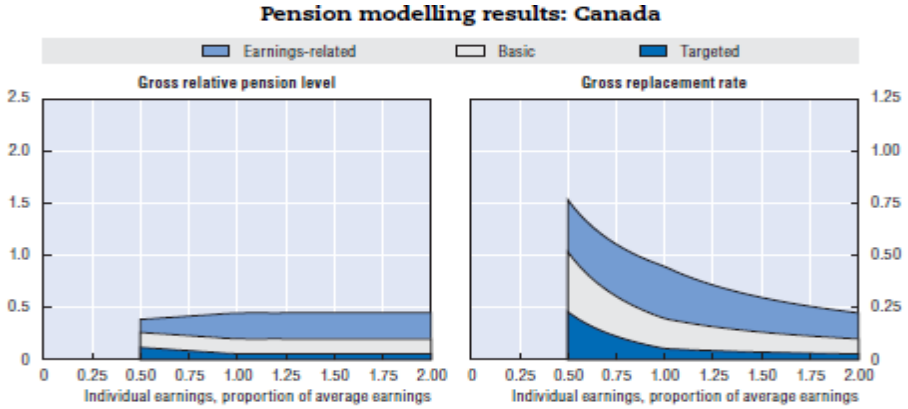

자료: OEDC (2009), "Pension at a Glance 2009"

6. 기금규모 및 운용

▣ 2층 소득비례연금 (CPP 제도)

○ CPP는 원래 부과방식으로 설계되었으나 1998년부터 사전적립 방식으로 변경하고 CPPIB (CPP Investment Board)를 설립하여 기금운용을 위임함

○ CPPIB는 CPP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Crown corporation)으로서 정부와는 거리를 두고 있음

— "CPP의 재정상태와 급여지급을 위한 유동성을 고려하는 한편,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것을 법에서 정하고 있음

—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CPPIB는 비유통 국채만을 보유하던 CPP 기금의 투자대상을 1999년부터 주식, 사모증권, 부동산 등으로 다변화하기 시작함

— 2004년 4월에 CPP 및 CPPIB 법령을 개정하여 정부가 관리하던 국채를 3년에 걸쳐 CPPIB로 모두 이관키로 함

○ 기금운용 현황 (회계연도는 2009년 3월말 기준)

— 2009년 3월말 현재 적립금액은 1,055억불 (GDP의 6.58%)

<표 45> 기금운용 현황

(단위 : 10억 캐나다 달러)

	2009.3	2008.3	2007.3
개요			
CPP 기금	105.5	122.7	116.6
(GDP비중, %)	(6.58)*	(7.66)	(7.61)
순보험료수입	6.6	6.5	5.5
투자수익	-23.8	-0.4	13.1
투자수익률			
연간	-18.6	-0.3	12.9
4개년 평균	1.4	9.0	13.6
자산배분(비중,%)			
주식	44.0	51.8	57.8
사모증권	13.4	10.9	7.0
채권	28.6	25.5	25.0
현금성자산	-0.8	-	0.3
물가연동자산	14.7	11.7	10.1
합 계	100.0	100.0	100.0

주: 기금 관련 수치는 매년 3월 말 기준
GDP비중은 2008~2009년은 2008년말, 2007년은 2007년말 GDP기준으로 계산
자료: 기금관련 수치는 각 연차보고서, GDP는 국가통계포털

○ CPP 기금은 2016년까지 2,460억불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추계에 따르면 2022년까지 16년간은 보험료수입이 급여지출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동안 기금이 계속 적립되어 CPPIB가 투자운용해야 할 것임

[그림 21] CPP 기금 자산의 추정

(단위 : 십억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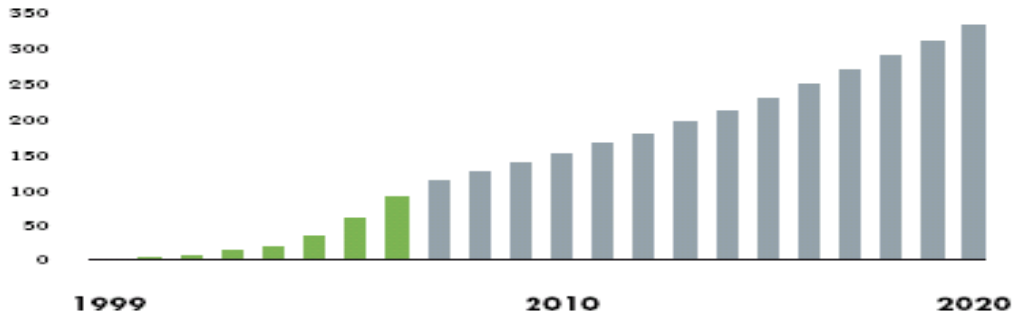

○ CPP의 지배구조를 보면 그 최상층에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재무장관들로 구성된 CPP Stewards가 있어서 CPPIB의 Board of Directors를 책임지고 있음

— 3년마다 CPP에 대한 감사를 시행 (Federal/Provincial Triennial Review of the CPP)

— 여기서 CPP의 Management는 Stewards 앞에서 현행 Governance 구조와 투자정책, 운용절차 등이 다른 대안보다 우수함을 입증해야 함

— 그 외에도 Stewards의 책임과 권한에는 분기별 실적보고를 받고, 항시 연방재무장관이 특별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매 6년마다 외부감사에 의한 특별조사를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음

○ CPPIB는 정부와는 독립된 투자의사결정을 내리며 CPPIB의 Board of Directors는 CPPIB의 Management를 책임지고 있음

— Directors가 Management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Directors가 깊은 이해와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어서 내외부 전문가들이 CPP의 변화하는 투자전략과 그에 부수되는 위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Director들을 교육하고 있음

— 또한 내부에서 개발한 CPP Reference Portfolio는 운용체제 내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 투자활동이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지 파악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즉, 전략적 의사결정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책임관계 정립에 기여함

— CPP의 Management가 정부관료가 아닌 오직 투자재무나 운용감독에 경험이 풍부한 Board of Directors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Board of Directors는 Stewards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구조가 독립성과 책임성의 균형을 보장해 주게됨

[그림 22] CPP의 지배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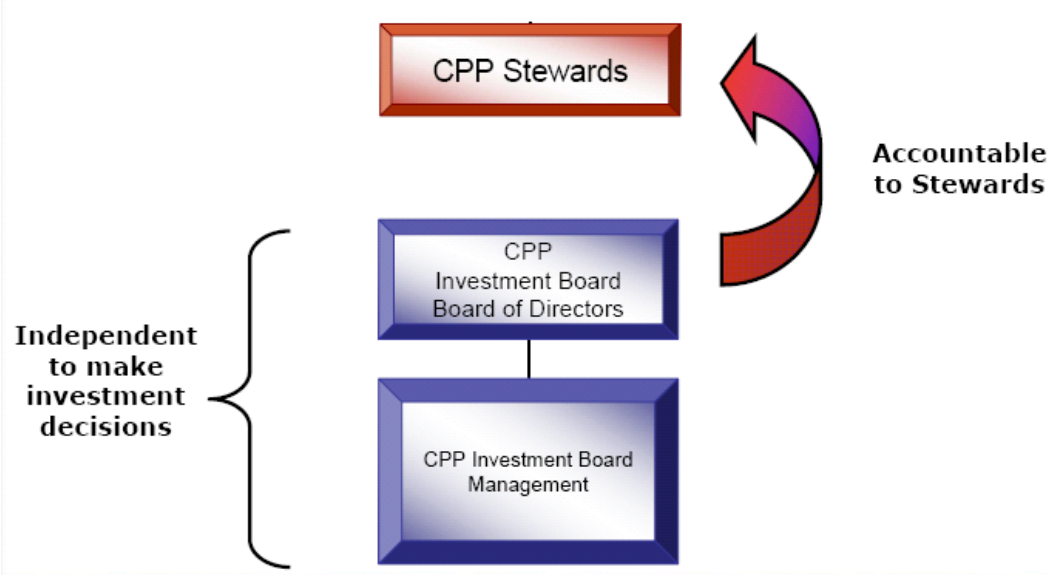

7. 관리체계 (구조 및 관리체계)

▣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조

○ 캐나다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는 크게 1층의 OAS, GIS 및 Allowance, 2층의 소득비례연금 (CPP/QPP)으로 구성

○ OAS는 캐나다 연금제도의 기초를 형성하는 보편적 정액연금

프로그램으로서, 65세 이상 거의 전체 노인에게 정부조세에 의해 정액급여 지급

※ 캐나다 정부의 공식문건에서는 OAS를 캐나다의 가장 큰 공적연금(public pension)이라고 명명

○ 노인을 위한 공적부조는 GIS, 수당 (및 유족배우자 수당) 등으로 구성

— GIS는 65세 이상의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들에 대해 소득을 보충해주는 일종의 노인들에 대한 사회부조 제도

— 수당(및 유족배우자 수당)은 60-64세의 저소득층 노인들을 지원하는 상대적으로 작은 제도

○ 소득비례연금제도는 연간기초소득공제소득 이상의 근로소득을 가진 전국민을 대상으로 가입자의 보험료 기여에 의해 소득비례급여를 지급하는 CPP제도

— 단 퀘벡주는 독자적인 소득비례연금제도로서 QPP 운영 (CPP와 거의 동일한 구조와 내용을 가짐)

[그림 23] 캐나다 연금체계 (200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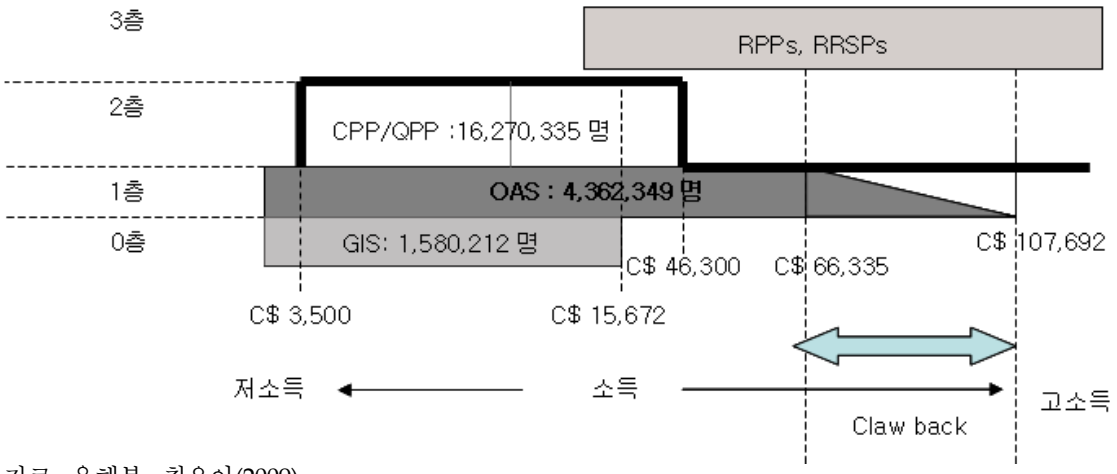

자료: 우해봉, 최은아(2009)

▣ 연금 관리체계

○ 인적자원 및 사회개발부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에서 OAS, CPP, GIS의 급여 관장, QPP는 퀘벡 연금위원회에서 관장

※출처: http://www.hrsdc.gc.ca

○ CPP의 보험료는 국세청에서 징수

○ 연방 및 주정부의 재정장관들 (CPP Stewards)은 3년에 한번씩 연금재정상황을 점검, 급여 및 보험료 조정에 대한 보고서 제출

8. 기타 사회보장제도

▣ 질병 및 출산(Sickness and Maternity)

○ 적용대상자: 연방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 자영어민(self-employed fisherman)

— 단, 자영어민 이외의 자영업자 및 퀘벡주 거주 자영업자는 제외

○ 급여의 성격: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을 통한 현금급여와 조세를 통한 진료 및 병원 서비스 제공(universal system)

○ 재원: 사회보험의 경우, 실업 보험료를 통해 충당됨

○ 급여의 종류: (1) 질병급여(sickness benefits), (2) 출산급여(maternity benefits), (3) 특별육아급여(compassionate care benefits)

○ 수급요건: (1), (2) 마지막 급여청구 이후 또는 지난 52주간 적어도 600시간 상당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3) 질병급여 또는 출산급여의 보험료 수급요건과 동일하나, 중병(a grave illness)을 앓는 자녀의 간호를 위해 임시휴직을 한 경우에 지급

○ 급여수준: 급여수준에 관련 기준은 급여종류별로 차이가 없으나 지급기간에는 차이가 있음 (<표 94> 참조)

— 단, 출산급여의 경우, 퀘벡주는 평균주급의 70%를 18주간 지급하며 특별육아급여의 경우, 주급 상한선은 최대 연간소득 C$62,000을 기준으로 산정됨

<표 46> 급여종류별 급여수준 및 지급기간 비교

	질병급여	출산급여	특별육아급여
급여수준	질병발생 직전 26주간 평균주급의 55%[1)]	좌동 (출산 직전)	좌동 (단, 주급은 최대 C$447까지 지급)
지급기간	15주	15주 기본, 최대 45주[2)]	6주

주: 1) 저소득층(소득공제 후, 연간소득 C$25,921 이하)인 경우, 추가적으로 가족수당이 지급됨
2) 출산 및 입양 후 (양)부모에 의한 양육 시

▣ 산재보험 (Work injury)

○ 적용대상자: 자영업자, 중앙 및 지방공무원, 무소득 배우자, 프로 운동선수 또는 스포츠클럽 직원*을 제외한 모든 임금근로자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적용대상자는 다를 수 있음

○ 급여의 성격: 사회보험 급여

○ 재원: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산업별로 위험정도에 따라 보험료 차등 적용)

○ 급여의 종류: (1) 일시장애급여(temporary disability benefits) (2) 영구장애급여(permanent disability benefits), (3) 근로자의 료급여(workers' medical benefits), (4) 유족급여(survivor benefits)

○ 수급요건: 최소 수급요건은 없음

○ 급여수준: (1), (2) 총임금의 75%~90%까지 지급 (4) 일반적으로 연금 형태로 지급되며, 그 수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름

▣ 실업급여 (Unemployment benefits)

○ 적용대상자: 중앙 및 지방공무원, 자영어민을 포함한 모든 임금근로자

— 단, 자영어민이외의 자영업자는 제외

○ 급여의 성격: 사회보험 급여

○ 재원: 피용자의 경우, 적용대상 소득의 1.73% (퀘벡주의 경우, 1.38%)에 해당하는 보험료. 사용자는 2.42% (퀘벡주의 경우, 1.93%)

○ 수급요건: 실업 직전 년도에 420~700시간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지방자치단체별 실업률을 기준) 또는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시 900시간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보험

료를 납부

○ 급여수준: 실업 직전 26주간 평균주급의 55%를 14주~45주간 지급. 저소득층(소득공제 후, 연간소득 C$25,921 이하)인 경우, 추가적으로 가족수당이 지급됨

▣ 가족수당(Family allowances)

○ 적용대상자: 모든 캐나다 거주인

○ 급여의 성격: 공공부조

○ 재원: 조세

○ 급여의 종류: (1) 캐나다자녀세제혜택(Canada child tax benefits) (2) 전국민자녀양육급여(universal child care benefits)

○ 수급요건: (1)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18세 미만의 자녀 (소득조사 필요) (2)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는 6세 미만의 자녀

* 보호자(primary caregiver): 시민권자, 영주권자나 난민지위를 획득한 자, 적법한 캐나다 거주자

○ 급여수준: (1) 첫 번째 자녀-최고 C$3,383, 두 번째 자녀-최고 C$3,144, 그리고 세 번째 자녀 이후-최고 C$3,087 (2) 월C$100, 연간 C$1200까지 지급 (세금 부과)

9. 1998년 연금개혁의 주요내용

○ 인구구조 및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 및 후세대 부담증가에 따른 세대 간 형평성 조정 문제 해결을 위해

— 기초연금 축소 (실패), 보험료율 인상, 새로운 투자정책 확립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 단행

▣ 기초연금 개혁

○ 구조적 개혁 시도

— 정부는 OAS와 GIS, 노인대상 조세감면제도들을 통폐합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대상효율성을 높이고 고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감소시켜 재정절감 목적으로 단일의 선별적 공적부조제도 (가족소득 기준)인 “시니어 급여 (Senior’s Benefit)” 제도 제안

— 각계의 반대로 도입 실패, 반대이유는 보편적 연금 (OAS) 이 소득조사에 의거한 사회부조로 전락한다는 것, 중산층 이상 노인들의 노후소득 감소,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 저해 등임

[그림 24] 시니어 급여와 현재 제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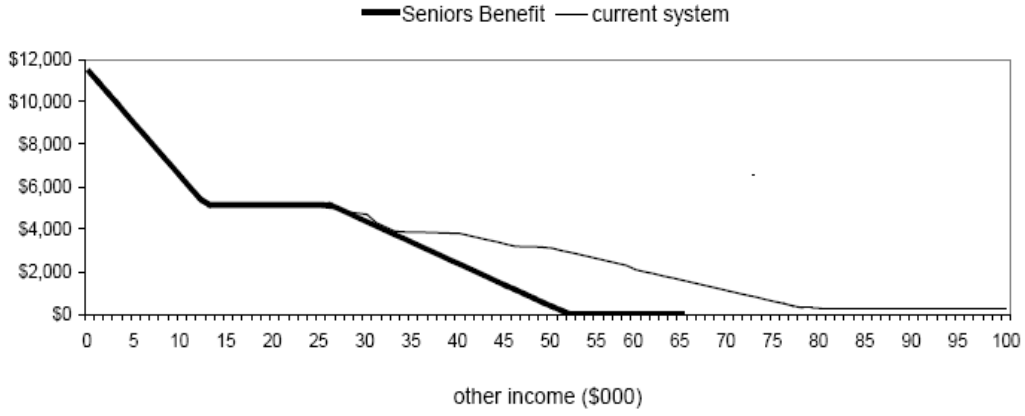

▣ 소득비례연금에 대한 재정안정화 조치

○ 보험료율 조기인상

— 보험료율을 본래 2016년 10.1%에서 2030년 14.2%로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개혁으로 1998년 6.4%에서 2003년 9.9%로 단계적 인상

— 이는 보험료 조기인상으로 보험료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게 함으로써 연기금 적립을 도모하고, 투자수익을 통해 2003년 이후 보험료율을 9.9%의 '안정적 상태의 보험료율 (Steady state rate)'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 (연 7%의 수익률 기대)

[그림 25] CPP 피용자의 보험료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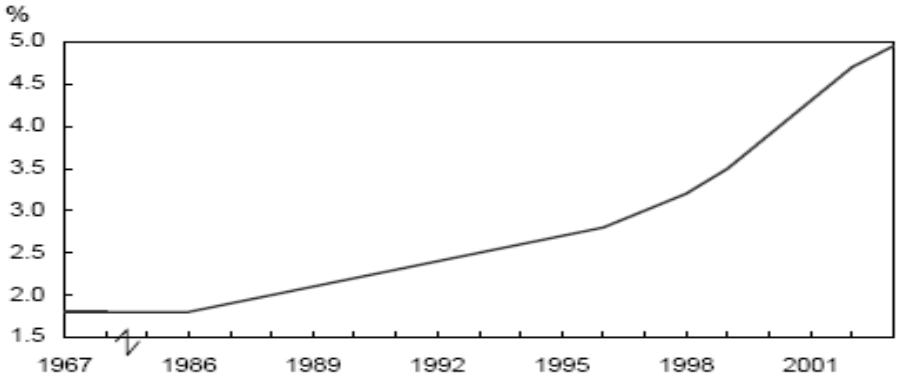

자료: Chawla & Wannell(2003). A C/QPP overview.

○ 급여산정기준 변화

— 급여기준으로서 과거 3년간의 연간최대연금수급소득의 평균 → 과거 5년간 평균으로 변경

○ 이러한 개혁에 따라 보험료 수입을 증가시키고 연금급여를 감소시켜 CPP의 재정은 향후 2075년까지 9.9%의 보험료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

— 자산/지출율 (차년도 지출에 대한 당해연도 말의 자산 비율, Asset/ Expenditure Ratio)은 1999년에 1.19로 떨어졌다가 2017년 이후 5~6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

[그림 26] CPP의 자산/지출율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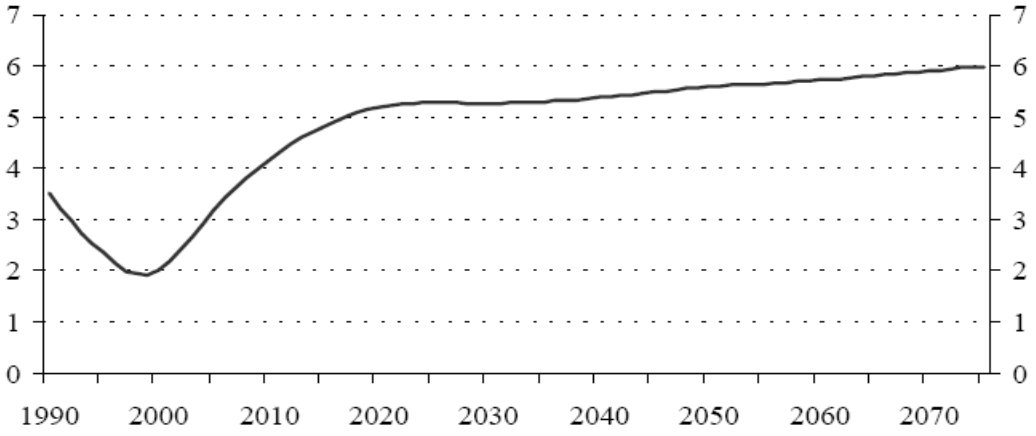

자료: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2000).

▣ 기금 투자정책 관련 사항

○ 사전적립 (pre-funding) 도입

— 보험료 조기인상으로 적립규모를 기존의 2년치 급여지급분에서 5년치 급여로 증가시킴

○ CPP 기금운용에 대한 정부간섭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캐나다 연금제도 투자위원회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 설립

10. <참고자료>

캐나다 인력개발국, http://www.hrsdc.gc.ca/eng/isp/oas/oasrates.s html.

캐나다 통계청, http://www.statcan.gc.ca.

캐나다 Human Resources and Skills Development Canada(HRSDC), 2007, Canada Pension Plan Contributors Report.

_____, 2008, The CPP& OAS Stats Book.

미국 사회보험청, http://www.socialsecurity.gov/policy/docs/progdesc/index.html

Service Canada, http://www.servicecanada.gc.ca/eng/ei/legislation/eia_e.pdf

캐나다 Regie des Rentes du Quebec, 2007, Actuarial Report of the Quebec Pension Plan as at 31 Dec 2006.

캐나다 Office of the Chief Actuary(OCA), 2008, Actuarial Report 8th on the Old Age Security Program as at 31 Dec 2006.

김성숙 외, 2007, 노령기초소득보장제도의 국제비교연구, 국민연금연구원.

우해봉 외, 2009,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현황과 노후 소득보장 대책, 국민연금연구원.

부록. 캐나다 연금제도 보완 사항

○ 캐나다

(1) 2층 공적연금 (CPP) 급여산식

1) 자격관리

① 보험료율

— 캐나다 연금제도 : 연간 소득이 연간 기본면제액(YBE:Year's Basic Exemption)과 연간 연금산정대상 상한소득(YMPE: Year's Maximum Pensionable Earnings) 사이의 소득에 대해 보험료 율을 곱하여 산정

— 2009년 캐나다의 YMPE는 $ 46,300임

— 보험료율 및 보험료율의 조정 계획

Table 1. Contribution Rate

Year	Previous Rate(%)	Adjusted Rate	Year	Previous Rate(%)	Adjusted Rate
1987	3.8	—	**2003**	7.35	9.9
1988	4	—	**2004**	7.6	9.9
1989	4.2	—	**2005**	7.85	9.9
1990	4.4	—	**2006**	8.1	9.9
1991	4.6	—	**2007**	8.3	9.9
1992	4.8	—	**2008**	8.5	9.9
1993	5		**2009**	8.7	9.9
1994	5.2		**2010**	8.9	9.9
1995	5.4		**2011**	9.1	9.9
1996	5.6		**2012**	9.3	9.9
1997	5.85	6	**2013**	9.5	9.9
1998	6.1	6.4	**2014**	9.7	9.9
1999	6.35	7	**2015**	9.9	9.9
2000	6.6	7.8	**2016**	10.1	9.9
2001	6.85	8.6	**2030**	14.2	9.9
2002	7.1	9.4			

② CPP 가입자 변화 추이

	근로자	자영자	겸업	총계
1994	8,530,363	637,894	427,101	9,595,358
1995	8,635,666	659,332	431,143	9,726,141
1996	8,637,777	699,619	462,499	9,799,895
1997	8,826,654	724,681	510,158	10,061,493
1998	9,110,408	756,642	518,437	10,385,487
1999	9,378,449	748,599	515,185	10,642,233
2000	9,700,531	746,239	526,818	10,973,588
2001	9,884,423	755,267	523,919	11,613,609
2005*	10,584,681	842,790	589,788	12,017,259
2006	10,864,341	826,071	596,288	12,286,700
2007	11,095,575	798,602	591,158	12,485,335

자료: *2005년 이후의 통계치에 대한 출처임. HRSDC(2007).

③ 노후소득에서 연금 등이 차지하는 비중

— 2004년 노령자의 소득 중 33.9%는 퇴직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에서, 21.7%는 OAS와 GIS에서, 19.2%는 C/QPP에서 나옴(Tamagno, 2006 재인용).

— 1980년대 노령소득 중 사적연금급여는 64% 증가하였으며 C/QPP는 119%증가. 그러나 동시기 OAS/GIS는 단지 10%증가하는데 그침.

— 반면, 1990년대에는 사적연금은 33% 증가하였고 C/QPP는 23% 증가하였으며, OAS/GIS는 오히려 3% 감소하였음(Myles, 2000 재인용)

[그림 26] 노령가구 소득총량의 구성 (기간 : 1980~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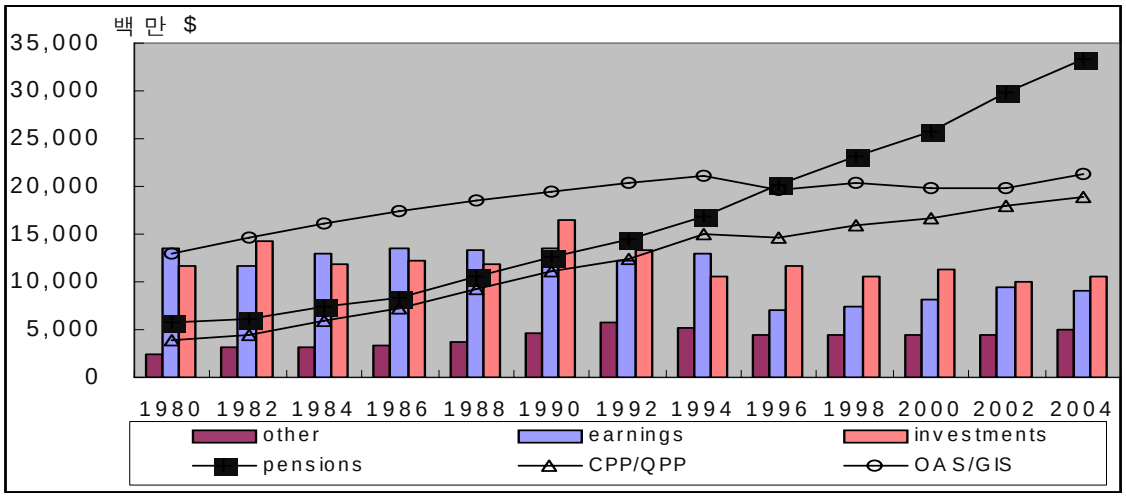

자료: Tamago (2006). Occupational Pension Plans in Canada: Trends in Coverage and the Incomes of Seniors.

2) 연금지급액 : 연금산정대상 평균소득월액의 25%

① 수급자격 요건

— 보험료 납부 1개월 이상[17)]

— 65세이상

— 60~64세의 경우, 소득활동 미종사 또는 CPP 연금상한액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 65세 미만 매 1월마다 0.5%씩 감액.

— 연금수급은 70세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매 1월마다 0.5% 씩 증액

② 급여수준

— 1998년 법개정을 통해 퇴직연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YMPE의 값을 수급년도 포함 과거 5년간의 YMPE의 평균으로 변경하였음

- 법 개정 전에는 이 값이 3년이었음
- 이 개정에 따라 퇴직연금의 수급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

17) 평균소득월액 산정 시 연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1개월의 납부이력도 년소득의 일환으로 포괄되므로 1개월 이상이 맞음.

— 소득액 산정시 다음 기간은 제외할 수 있음

- 18세부터 64세까지 보험료 납부대상기간 중 장애급여를 수급한 기간
- 7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던 무소득 또는 저소득기간
- 65세 이후 연금수급 연령까지 저소득기간
- 가입기간의 15%에 한해 제외할 수 있음

— CPP 급여는 얼마만큼 기여했는지(소득수준), 얼마나 오래 기여했는지(기여기간), 언제 지급 요청하는지(퇴직연령)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 매년 발급되는 CPP Statement Of Contributions를 통해 기여기간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음

— 1966년 제도 시작시부터, 현재까지 가입가능기간 분에 가입한 기간이 고려됨. 가입기간이 부족할 시 (가입기간/가입가능기간)의 값이 연금액에 반영됨

- 관련 계산은

http://compensation.pwgsc.gc.ca/pbc_prod/calculator-e.jsp을 참조

- 예를 들어, A는 가입기간 30년 동안 매해 평균 $10,000의 소득(재평가 반영 이후)이 있었고, B는 가입기간 15년 동안 매해 평균 $20,000의 소득(재평가 반영 이후)이 있었다면, 둘의 연금액은 같음
- $25\% \times \frac{1}{12} \times$ 가입기간동안의 년간총소득의 평균(재평가반영후) $\times \frac{\text{가입한기간}}{\text{가입가능기간}}$

— 2008년 현재 수급자의 최대 노령연금액은 월 $884.58

— 급여수준 예시

- 1998년을 전후로 하여 YMPE 고려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증가하였음

• YMPE 고려기간은 수급당해년도를 포함함

• 최고수준 납부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1) 법 개정 전, 1966년부터 최고소득으로 가입한 1993년 퇴직자의 연금액(최고연금액)

— YMPE 퇴직전 3년의 평균값: (30500+32200+33400)/3=96100/3=32033.33

— 위 값을 매년도의 소득으로 나누면 그 당해 소득의 재평가율이 나옴

— 예를 들어, 1990년의 소득의 재평가율은 1.10842, 1991년 소득의 재평가율은 1.050273이며 1992년의 재평가율은 0.994824와 같은 식이며

— 이 재평가율을 다시 가입자의 당해소득에 곱하는데, 최고소득자의 경우 이 값이 일관되게 동일함 (=32033.33)

— 따라서, 퇴직연금 계산을 위한 연금산정대상 평균소득월액은 32033.33을 12로 나누고, 소득대체율 25%를 곱하면 퇴직자의 연금액이 나옴

— 32033.33/12/4=667.3611

** 1973년까지는 연금급여지급액 조정상한이 있었기 때문에, 위 산식이 적용 안되는 해당시기가 있음

** 1974년부터는 이 산식이 정확히 적용됨

2) 법 개정 후, 1966년부터 최고소득으로 가입한 2005년 퇴직자의 연금액(최고연금액)

— YMPE 퇴직 전 5년의 평균값:
(38300+39100+39900+40500+41100)/5=198900/5=39780

— 위 값을 매년도의 소득으로 나누면 그 당해 소득의 재평가율이 나옴

— 예를 들어, 2001년의 소득의 재평가율은 1.038642, 2002년 소득의

재평가율은 1.017391이며 2003년의 재평가율은 0.996992와 같은 식이며

— 이 재평가율을 다시 가입자의 당해소득에 곱하는데, 최고소득자의 경우 이 값이 일관되게 동일함(=39780)

— 따라서, 퇴직연금 계산을 위한 연금산정대상 평균소득월액은 39780을 12로 나누고, 소득대체율 25%를 곱하면 퇴직자의 연금액이 나옴

— 39780/12/4=828.75

3) 1966년부터 매해 최고소득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퇴직자의 최고 연금액

	연금소득상한	기본면제소득	피용자최고보험료($)	최고연금액 ($)
1966	5000	600	79.2	
1967	5000	600	79.2	19.97
1968	5100	600	81	30.58
1969	5200	600	82.8	41.62
1970	5300	600	84.6	53.26
1971	5400	600	86.4	65.33
1972	5500	600	88.2	77.81
1973	5600	600	90	90.71
1974	6600	700	106.2	109.6
1975	7400	700	120.6	134.97
1976	8300	800	135	154.86
1977	9300	900	151.2	173.61
1978	10400	1000	169.2	194.44
1979	11700	1100	190.8	218.06
1980	13100	1300	212.4	244.44
1981	14700	1400	239.4	274.31
1982	16500	1600	268.2	307.65
1983	18500	1800	300.6	345.15
1984	20800	2000	338.4	387.5
1985	23400	2300	379.8	435.42
1986	25800	2500	419.4	486.11
1987	25900	2500	444.6	521.52
1988	26500	2600	478	543.06
1989	27700	2700	525	556.25
1990	28900	2800	574.2	577.08

1991	30500	3000	632.5	604.86
1992	32200	3200	696	636.11
1993	33400	3300	752.5	667.36
1994	34400	3400	806	694.44
1995	34900	3400	850.5	713.19
1997	35800	3580	945	736.81
1998	36900	3500	1,068.00	744.79
1999	37400	3500	1,186.50	751.67
2000	37600	3500	1,329.90	762.92
2001	38300	3500	1,496.40	775
2002	39100	3500	1,673.20	788.75
2003	39900	3500	1,801.80	801.25
2004	40500	3500	1,831.50	814.17
2005	41100	3500	1,861.20	828.75
2006	42100	3500	1,910.70	844.58
2009	46300	3500	2,118.60	908.75

4) CPP 연금액 상한 계산 방식 (정액부분은 2007년 1분기 기준임)

▶노령연금: 연금 수급전 5년간 YMPE 평균액×1/12×1/4
▶장애연금: (퇴직연금×0.75) + 정액부분($405.96)
▶유족연금: 65세 미만 - (퇴직연금×0.375) + 정액부분($158.39)
65세 이상 - (퇴직연금×0.60)

나. GIS 급여수준결정 메카니즘 (소득수준별 급여수준은 얼마인가, GIS가 보충급여라고 할 때 최종적으로 보장해주고자 하는 소득 기준선은 무엇이며 기준선의 설정근거는 무엇인지 등)

— 최대 급여가 가능한 조합 (2007년도 기준 예시[18])

A. 둘 다 65세 이상이어서, 부부 각자 OAS와 GIS를 받는 부부

— 최대급여액 [497.83(OAS)+414.96 (수급자배우자)]*2=1,825.58$

— 급여감액률: 부부합산소득 $4에 $2씩 급여감액

B. 한쪽은 65세 이상이고, 다른 쪽은 63세여서 수당을 받을 경우

18) 2007년 7월 현재 OAS의 최대급여액은 $497.83이며, OAS의 소득상한은 $63,511부터 감액되고, $103,101부터는 지급이 정지.

— 최대급여액 [497.83(OAS)+414.96(GIS 수당수급자배우자)]+912.79(배우자수당)=1,825.58$

— 급여감액률: 부부합산 $8,016까지는 소득 $4에 $3씩 수당급여가 감액되다가, $8,016부터는 합산소득 $4에 GIS 급여가 $1, 수당급여가 $1씩 감액

C. 한쪽은 65세이고 다른 쪽은 수급권이 없는 가구

— 최대급여액497.83(OAS)+628.36(GIS 배우자가 비수급자)=1,126.19$

— GIS 급여감액률: 합산소득 $6,048까지는 급여감액이 없다가 $4에 $1씩 급여감액

D. 65세 이상인 독신자

— 최대급여액 497.83 (OAS)+628.36 (독신)=1,126.19

— GIS 급여감액률: 소득 $2에 $1씩 급여감액

E. 60-64세에 유족배우자수당을 받는 사람 $1,011.80

— 수당 급여감액률: 소득 $4에 $3씩 급여감액

① 수급조건

— OAS

— GIS

· 반드시 OAS의 수급권자여야 함

· 1범주, 단독 연금수급자: 1) 미망인, 이혼 또는 별거중인 자 2) 배우자 또는 동거자가 OAS나 수당을 받지 않는 자

· 2범주, 배우자 또는 동거자가 연금수급자인 부부

· 독신자에 대한 GIS 지급률이 높지만, 그럼에도 부부합산의 GIS가 더 큼.

· 독신자의 소득에 따른 감액은 $2 당 $1이고, 부부의 경우 $4당 $1임

— Allowance and Allowance for the Survivor

· OAS 수급자의 배우자나 법적 동거인

· 배우자나 법적 동거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생존자
· 신청자는 60-64세여야 함
· 65세 초과시 OAS로 변경
· 부부의 경우 수급자의 배우자가 GIS 수급자격이 발생할 경우 중단
· 수당의 최대액은 OAS와 GIS 수급자배우자의 최대액을 합친 것과 같음
· 유족의 경우 이 금액보다 높음
· 감액률은 $4 당 $ 3임

② GIS의 소득상한 및 최대급여액

— 2009년 7월부터 9월까지 GIS의 연소득상한은 $15,672 이며, 최대 월급여액은 $652.51

— 동 시기, OAS의 최대급여액은 $516.96이며, OAS의 소득상한은 $66,335부터 감액되고, $107,692부터는 지급정지

③ 혼인관계 및 OAS, GIS, Allowance 수급상태에 따른 수급액

1) 독신이면서 65세 이상인 자

— OAS와 GIS 모두 수급

— 매 년간 소득 $24에 따라, 월 $1씩 감액됨(즉, 월소득 2달러에 1달러씩 감액됨)

— GIS 소득상한은 $14,904(2007년 기준)

소득수준하한	소득수준상한	GIS급여	OAS(정액)+GIS
0	23.99	620.91	1,112.84
24	47.99	619.91	1,111.84
14,856.00	14,879.99	1.91	493.84
14,880.00	14,903.99	0.91	492.84

2) 부부이면서, 둘 다 65세 이상인 자

— 부부 모두, OAS와 GIS 모두 수급

— 매 년간소득(부부합산) $48에 따라, 각자 월 $1씩 감액됨.(즉, 월소득 4달러에 1달러씩 감액되나, 부부로 계산할 경우 4달러에 2

달러 감액임)

— GIS 소득상한은 $19,728(2007년 기준)

소득수준하한	소득수준상한	GIS급여(각자)	OAS(정액)+ GIS(각자)
0	47.99	410.04	901.97
48	95.99	409.04	900.97
19,440.00	19,487.99	5.04	496.97
19,488.00	19,535.99	4.04	495.97
19,632.00	19,679.99	1.04	492.97
19,680.00	19,727.99	0.04	491.97

3) 부부이면서, 한쪽은 65세 이상이고 다른 쪽은 63세인 경우

○ 한쪽이 OAS와 GIS를 받고, 다른 쪽은 OAS나 GIS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

— $ 5,952까지는 GIS 급여감액이 없다가, 그 이후 매 $ 4에 $ 1 씩 감액

— 이 경우, 소득상한은 $ 35,712임 (2007년 기준)

소득수준하한	소득수준상한	GIS급여	OAS(정액)+GIS
0	5,951.99	620.91	1,112.84
5,952.00	5,999.99	619.91	1,111.84
6,000.00	6,047.99	618.91	1,110.84
6,048.00	6,095.99	617.91	1,109.84
19,440.00	19,487.99	338.91	830.84
19,488.00	19,535.99	337.91	829.84
35,616.00	35,663.99	1.91	493.84
35,664.00	35,711.99	0.91	492.84

○ 한쪽이 OAS와 GIS를 받고, 다른 쪽은 수당을 받는 경우

— $ 5,952 까지는 GIS 수급자의 GIS 급여감액이 없다가, 그 이후 매 $ 4에 $ 1 씩 감액

- 수당을 받는 쪽에서도 매 $4 당 $1 씩 감액
- 부부로 계산하면, $4 당 $2씩 감액임

— 이 경우, 소득상한은 $27,660임 (2007년 기준)

소득수준하한	소득수준상한	GIS급여	OAS(정액)+GIS	수당
0	47.99	410.04	901.97	901.97
48	95.99	410.04	901.97	898.97
96	143.99	410.04	901.97	895.97
7,824.00	7,871.99	410.04	901.97	412.97
7,872.00	7,919.99	410.04	901.97	410.04
7,920.00	7,967.99	409.04	900.97	409.04
7,968.00	8,015.99	408.04	899.97	408.04
19,344.00	19,391.99	171.04	662.97	171.04
19,392.00	19,439.99	170.04	661.97	170.04
19,440.00	19,487.99	169.87	661.8	169.04
19,488.00	19,535.99	169.87	661.8	168.04
19,536.00	19,583.99	169.87	661.8	167.04
27,504.00	27,551.99	169.87	661.8	1.04

5) 60-64세인 유족(법적 동거인 포함)인 유족배우자 수당

— 조건) 배우자 사망, 현재 미혼이어야 함

— 매 월간소득 $4에 따라, 각자 월 $3씩 감액됨

— GIS 소득상한은 $20,064(2007년 기준)

소득수준하한	소득수준상한	Allowance for the surviror
0	47.99	999.81
48	95.99	996.81
19,512.00	19,535.99	22.88
19,992.00	20,015.99	2.88
20,016.00	20,039.99	1.88
20,040.00	20,063.99	0.88

비교1) 부부가구소득이 $19535.99일 때, A. 둘 다 65세 이상이어서 GIS와 OAS를 받는 부부와, B. 한쪽은 65세 이상이고 다른 쪽은 63세여서 수당을 받을 경우, C. 한쪽은 65세이고 다른 쪽은 수급권이 없는 가구의 가구급여액의 비교

A. [$ 4.04(GIS)+$491.93(OAS)=495.97 부부 각자 수급이므로] *2= $991.94

B. [$ 169.87(GIS)+$491.93(OAS)=$661.87]+168.04(Allowance)=$829.84

C. $ 337.91(GIS)+$491.93(OAS)=$829.84

	소득구간	소득구간	GIS	OAS+GIS	Allowance	sum
A.	19,488.00	19,535.99	4.04	495.97		*2=991.94
B.	19,488.00	19,535.99	169.87	661.8	168.04	829.84
C.	19,488.00	19,535.99	337.91	829.84		829.84

비교2) 위의 B, C의 다른 소득구간에서의 비교

	소득구간	소득구간	GIS	OAS+GIS	Allowance	sum
B.	27,072.00	27,119.99	179.91	671.84		671.84
	27,120.00	27,167.99	178.91	670.84		670.84
C.	27,072.00	27,119.99	169.87	661.8	10.04	671.84
	27,120.00	27,167.99	169.87	661.8	9.04	670.84

비교3) D. 65세 이상인 독신자와 E. 60-64세에 유족배우자수당을 받는 사람의 비교

	소득수준하한	소득수준상한	GIS급여	OAS(정액)+GIS
D.	0	23.99	620.91	1,112.84
	24	47.99	619.91	1,111.84
	48	71.99	618.91	1,110.84
	10,728.00	10,751.99	173.91	665.84
	10,752.00	10,775.99	172.91	664.84
	10,776.00	10,799.99	171.91	663.84
E.				Allowance for the survivor
	0	47.99		999.81
	48	95.99		996.81
	96	143.99		993.81
	10,728.00	10,751.99		388.88
	10,752.00	10,775.99		387.88
	10,776.00	10,799.99		386.88

④ GIS의 물가연동 등

— GIS와 OAS의 급여는 1년에 4차례 조정되는데, 이런 지수조정은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됨

— 소비자물가지수가 하락할 경우에, 지수는 하향조정되지 않고 고정됨

— 캐나다 CPI는 1992년을 기준으로 설정되며, 2003년 CPI의 경우 121.40이며, 2005년 6월의 경우 127.2임

— 이와 같은 방식으로 OAS와 GIS도 조정되는데, 1992년 9월 OAS의 최대급여액은 $378.19이며, 2009년 9월 OAS의 경우 $516.96임

— 비슷한 방식에 의거하여 2007년 CPP 급여액은 2.1% 증가(1년 단위 조정)하였으나, 2007년 1분기 OAS 및 GIS는 증가하지 않음(전년도 마지막 분기의 물가상승 반영 탓이며, 2006년 한 해동안 2.5% 인상된 바 있음)

VIII. 독일의 공적연금제도

1. 제도의 변천과정

▣ 1889년 : 노동자연금제도 도입(그 후 광원연금이 노동자연금에서 분리 독립)

▣ 1911년 : 직원연금제도 도입

※ 독일에서는 노동자, 직원, 광원연금을 통칭하여 법정연금보험이라고 함. 이외에도 특수직역연금으로서 공무원부양연금, 농민노령부조, 변호사·의사 등을 위한 전문직연금제도 등이 있음.

※ 아래에서는 우리의 국민연금에 가장 근접하는 법정연금보험을 중심으로 살펴봄

▣ 1957년 : 연금법 대개정

○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대폭 인상하고, 제도의 보장목표를 '최저보장'에서 '소득지위보장'으로 전환

○ 기초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을 일원화하여 '소득비례연금제' 도입,

○ 매년 전체 가입자 임금변화율에 연동시켜 연금을 조정하는 동태적 연금(dynamische Rente) 도입

○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

— 1920년대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적립기금의 실질가치 상실의 경험, 2차대전 시 적립기금이 전시자금으로 전용됨으로써 연금기금이 거의 고갈된 상태에 있었음

— 재정방식의 전환으로 인해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1957~67년까지 점차적으로 부과방식으로 전환

— 이 기간 동안(10년) 재정균형을 목표로 하는 수정부과방식 적용: 보험료는 향후 10년간 재정지출을 충당하고, 최종년도에 당년도 지출분에 상응하는 적립기금이 쌓이도록 설정함.

○ 1969년 완전부과방식으로 전환

▣ 1972년 : 가입대상 확대(자영자, 주부 임의가입 허용, 장애인 의무가입)와 연금급여수준 인상, 신축퇴직연금제(장기가입자, 실업자 및 여성은 65세 이전에도 지급) 도입

▣ 1992년 : 재정안정화 개혁실시(보험료 및 국고보조금 인상, 부분연금제 도입, 양육 크레딧제 도입 등)

▣ 2001/2004년 : 연금연동율의 축소 등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 조치(지속가능성계수 도입), 인증제 개인연금 도입, 노인·장애인 기초보장제 실시 등

▣ 2007년 : 지급개시연령 상향조정(65세 → 67세)

2. 적용범위 - 가입자규모 (Coverage)

○ 적용범위

— 당연가입 대상자: 16세 이상 65세 미만의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직업교육훈련생, 병역 및 사회봉사 종사자, 일정소득 이상의 학생, 일부 자영업자(수공업자, 예술가, 작가, 농어민, 보모, 조산원 등), 실업 및 상병 급여 등 사회급여 수급자, 무급개호 종사로 인해 소득활동을 중단한 자 등

— 임의가입 대상자: 당연가입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자영업자와 전업주부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임의가입자로 가입 가능

○ 가입자규모

— 가입자는 인구성장율의 정체 및 경기체체 등으로 90년대 들어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며,

— 2007년 현재 전체 경활인구의 약 80%가 가입자로 포괄

<표 47> 독일의 공적연금 가입자, 경활인구

년도	가입자수 (천명)	경제활동인구 (천명)	경제활동인구대비 (%)
1962	18,612	26,845	69.33
1965	18,969	27,034	70.16
1970	19,568	26,827	72.94
1975	19,486	26,920	72.38
1980	21,570	27,935	77.21
1985	22,391	29,608	75.62
1990	24,128	31,699	76.11
1992	32,495	40,395	80.44
1995	31,430	40,445	77.71
2000	33,830	41,746	81.03
2003	33,357	42,103	79.22
2005	34,322	43,314	79.24
2007	34,852	43,466	80.18

* 해당 연도 1년간 한번이라도 의무가입 보험료를 납부한 자 기준

* 1992년 전까지는 서독지역만, 이후부터는 동서독합산

자료: Deutsche Rentenversicherung Bund, website

○ 수급자 규모

— '07년 총 노령연금수급자는 1,729만명으로, 60세 이상 노인인구(2,080만명)의 83%가 연금수급

3. 재원조달

○ 재정방식

-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며, 당년도 지출은 전액 '보험료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충당됨.

○ 보험료율 및 국고부담 수준

- 보험료율은 약 19.9%(07년)로 근로자의 경우 노사균등부담, 자영자의 경우 전액 본인부담
- 전체 수입(노동자+직원연금)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기준 약 25%

<표 48> 독일 공적연금의 보험료율의 추이

년도	노동자/직원 연금	광부연금*	년도	노동자/직원 연금	광부연금
1957-1967	14.0	23.50	1993	17.5	23.25
1968	15.0	23.50	1994	19.2	25.50
1969	16.0	23.50	1995	18.6	24.70
1970-1972	17.0	23.50	1996	19.2	25.50
1973-1980	18.0	23.50	1997	20.3	26.90
1981	18.5	24.00	1998	20.3	26.90
1982-1983(8.31)	18.0	23.50	1999(1.1-3.31)	20.3	26.90
1983(9.1)	18.5	24.00	(4.1부터)	19.5	25.90
1984	18.5	24.25	2000	19.3	25.60
1985	18.7	24.45	2001-2002	19.1	25.40
1985(6.1)-1986	19.2	24.95	2003	19.5	25.90
1987-1991(3.31)	18.7	24.45	2004	19.5	25.90
1991(4.1) -1992	17.7	23.45	2005 2007	19.5 19.9	25.90 25.90

○ 보험료 부과소득의 상하한선

- 보험료부과 소득의 상한선은 전가입자 평균소득의 2배 수준, 하한선은 평균소득의 1/7수준으로 설정

4. 급여

○ 급여산식

기본연금액(월) = 개인별 소득점수 × 연금실질가치유지액

— 개인별 소득점수 : 매년 전가입자 평균소득 대비 개인의 상대소득

수준을 생애기간에 걸쳐 합산한 값

※ 중도 장애나 사망의 경우 사망 및 장애 전까지의 가입기간과 장애발생 시점에서부터 60세까지의 가입가능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적용하여 기본연금액 산정

— 연금실질가치유지액: 소득점수 1점당 부여된 월 연금액 가치(2007 서독지역은 €26.27, 동독지역은 €23.09 적용)

— 표준연금수준(45년 가입 평균소득자의 연금수준): 47.2%(2007년)

○ 급여종류

— 노령연금

- 노령연금: 5년 이상 가입, 65세 도달 시 기본연금액의 100% 지급

※ 이외에도 35년 이상 장기가입자, 20년 이상 장기가입 장애자 및 여성에 대해서는 65세 이전에도 연금수급 가능(단, 연금액은 그 만큼 감액됨)

— 유족연금

- 배우자연금: 가입자(5년 이상 보험료납부 필요) 및 연금수급자의 사망 시 그 유족배우자가 45세 이상이거나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혹은 배우자가 직업불능 또는 취업불능상태일 때. 사망한 피보험자 기본연금액의 60% 지급
- 자녀연금: 부모 모두 사망한 18세미만의 자녀인 경우 피보험자 노령연금의 20%. 한쪽부모만 사망한 경우는 10%

— 장애연금

- 근로가능시간에 따라 완전장애(일 3시간 미만 근로가능)와 부분장애연금(일 3~6시간 근로가능)으로 구분
- 장애발생전 최소한 총 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고, 최근 5년동안 최소한 3년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했어야 함.
- 완전장애의 경우 기본연금액의 100%, 부분장애의 경우 50% 지급

5. 소득재분배 효과

○ 급여산식으로만 보면, 소득비례연금의 원칙에 비교적 충실하여 소득계층간 재분배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실업기간, 직업훈련기간, 자녀양육기간 등 저소득 및 무소득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크레딧)하고 이를 국고로 조달함으로써 상당한 재분배가 발생함.

<표 49> 독일의 소득수준별 총소득대체율 비교

	0.5	0.75	1 평균소득	1.5	2	2.5
독일	47.3	45.8	45.8	45.8	37.6	30.1

자료: OECD 2005: Pension at a Glance.

6. 기금규모 및 운용

○ 기금규모

— 60년대 말 완전부과방식으로 전환한 후 적립기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약간의 기금(월지출액의 12%)을 보유

○ 기금운용

— 기금운용 주체는 각 연금관리공단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적립금을 운용함

— 적립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입 및 금전신탁, 가입자와 수급권자 주택자금대부, 복지시설 설치·운영, 독일 내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 매입 등에 투자할 수 있으나, 최근 기금이 거의 고갈되어 유동성 확보 차원의 투자만 이루어짐

<표 50> 독일 공적연금제도 적립기금의 변화추이(1967-2005)

년도	보험료율(%)	적립기금규모 (백만 유로)	적립기금 /1개월 연금지출출액
1967	14	24.8	
1970	17	24.0	8.1
1980	18	18.7	2.1
1990	18.7	35	2.6
1995	18.6	21.9	0.9
2000	19.3	27.8	1.0
2005	19.5	1.8	0.12

7. 관리체계

○ 노동사회부

- 연금제도에 대한 전반적 관리감독

○ 연금공단

- 자격 및 급여관리

○ 건보조합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통합징수

8. 기타 사회보장제도

○ 기존의 일반 공적부조제도를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특별부조제도로 확대개편(2001년)

○ 공적연금의 개혁으로 그 급여수준이 지속적으로 감축됨에 따라 노인 및 장애인의 빈곤문제를 완화하고자 도입

— 특별부조 제도의 급여수준은 일반 공적부조의 그것보다 15% 높게 설정

— 부양의무자의 연간수입상한을 10만 유로(약 1억2천원)로 상향하여 사실상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함.

— 기초보장제도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이지만, 연금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연금공단도 기초연금에 대한 정보와 안내를 제공하고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함

9. 최근 개혁 동향

○ 주요 특징

— 90년대까지는 주로 수입증대(보험료 및 국고부담 인상 등)에 초점을 둔 개혁이 이루어졌다면, 2000년대 접어들면서는 인구고령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급여축소에 초점을 둔 개혁이 주류를 이룸

— 나아가 공적연금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노인·장애인 기초보장제 도입 및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확충이 이루어짐

○ 2000~2001 연금개혁

— 장애연금 및 조기노령연금 수급억제를 위한 조치(00년)

— 노인·장애인을 위한 기초보장제 도입(01년)

— 국고보조의 인증제 개인연금(Riester Rente) 도입 및 퇴직연금의 활성화 조치 강구

• 개인연금은 '07년말 현재 경제활동인구의 1/4정도할 정도로 단기간에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축소되는 공적연금만큼 노후보장을 보완해 줄 것으로 예상됨

[그림 27] 노후보장에 있어 리스터 개인연금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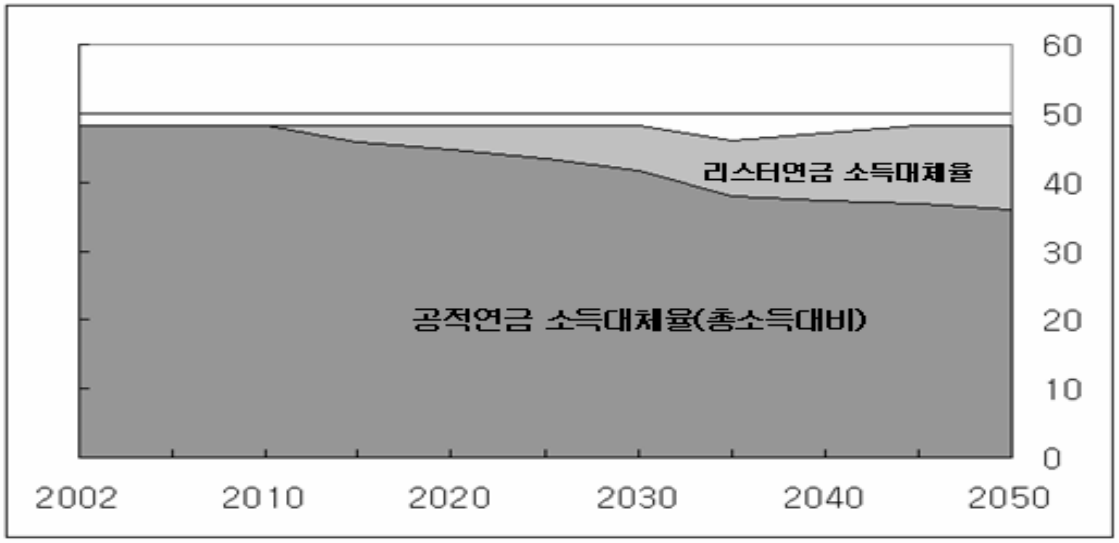

○ 2004년 연금개혁(DB → 準DC로 전환)

— 보험료율은 장기적으로 일정수준에서 고정(2030년까지 22%)시키고, 인구고령화에 따라 연금수준을 자동으로 감축시키는 장치(지속가능성 계수)를 도입하여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기반 마련

— 2030년까지 표준연금수준을 43%까지 유지하되, 그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추가적 재정안정화 조치를 마련하는 의무를 정부에 부과

○ 2007년 연금개혁

— 재정계산 결과 2004년 연금개혁 시에 설정된 보험료 및 연금수준 목표가 달성될 수 없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지급개시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2012~2029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함

10. <참고문헌>

OECD(2005), Pensions at a Glance. Paris.

Deutsche Rentenversicherung Bund(2009), Deutsche Rentenversicherung in Zeitreihen 2009, DRV-Schriften Band 22.

Deutsche Rentenversicherung Bund(2010), Chronik, www.deutsche-rentenversicherung. de.

Deutsche Rentenversicherung, website. www.deutsche-rentenversicherung. de.

SSA(2010), Social Security Throughout the World - Europe - Germany.

IX.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제도
(CalPERS: Califo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1. CalPERS제도의 변천과정

▣ 제도 개관

○ CalPERS는 1백6십 만 이상의 캘리포니아 공무원, 은퇴자 및 그들의 가족원을 대상으로 하여 퇴직 급여를 관리하는 조직임

— 2009년 6월 30일 현재 1,134,397명의 가입자 및 492,513명의 수급자를 관리하고 있음

— CalPERS의 회원은 주정부, 교직원, 그리고 공공기관 구성원의 3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이 대략 1/3의 비중을 차지함

— CalPERS는 또한 대략 1백3십만 명의 회원에게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및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제도 변천 과정

○ 1932년 : CalPERS 설립 및 주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 개시

※ CalPERS의 초기 명칭은 State Employee Retirement System(SERS)이며, 1967년에 그동안의 포괄범위 확대를 반영하여 명칭을 바꿈.

○ 1939년 : 공공기관과 일부 교직원들이 CalPERS 프로그램 참여

○ 1943년 : 모든 공공기관(public agency)들이 참여

○ 1962년 : Public Employees' Medical & Hospital Care Act로 인해 주정부 공무원들에게 의료급여 제공 시작

○ 1978년 : 사법부 연금(JRS: Judges' Retirement System) 편입

○ 1979년 : Volunteer Firefighters' Length of Service Award Program(VFF) 관리

○ 1984년 : 기금 포트폴리오의 25%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법률 개정안 통과

○ 1990년 : 신규 입법관련 공무원에 대한 LRS 폐지 및 개호보험(Long-Term Care Insurance) 제공 시작

○ 1992년 : 자금투자와 운영 관리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을 승인하는 법안 통과 (Amendments of 1992 to Article XVI, Section 17)

○ 1994년 : 신규 법관은 기존의 JRS가 아닌 JRS II 도입・적용

○ 1995년 : 장기요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 제공 시작

2. 적용 범위 - 가입자규모 (Coverage)

○ 6개월 이상의 전업 근로 혹은 평균 주당 20시간 이상(1년 이상 기준)의 파트타임 근로 활동을 하는 할 경우 CalPERS에의 가입이 의무

※ CalPERS 가입 대상자가 아닌 파트타임 근로자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Part-Time, Seasonal, Temporary Employees Retirement (PST) Program)

※ CalPERS가 적용되는 고용관계가 종료될 경우 기존 가입자는 기존에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를 받거나 혹은 기여금을 지속적으로 예치함으로써 (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하여) 은퇴연령 도달 시 급여수급 가능

※ 또한 CalPERS에 속한 고용주가 바뀌더라도(예컨대, 이직) 본인의 연금 납부의 연속성이 보장됨

○ CalPERS의 총 회원 수는 163만여 명이며, 그 중 가입자는 113만여 명 그리고 수급자는 49만여 명에 달함(<표 48> 참조)

— 직역별 연금제도인 CalPERS의 구성을 살펴보면 주정부, 학교, 공공기관의 구성원들로 구성된 PERS(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회원이 전체의 99.76%를 차지하고 있음

— 2009년 6월 30일 현재 1,568개의 공공기관과 1,458개의 학교지구(교육청)(school district)가 참여

<표 51> CalPERS 전체 가입자 및 수급자 현황 (2009.6.)

	PERS	LRS	JRS	JRS II	Total
수급자	492,513	39	1,789	15	494,356
가입자	1,134,397	259	620	1,119	1,136,395
합 계	1,626,910	298	2,409	1,134	1,630,751

주 1. PERF는 주정부, 학교, 공공기관, LRF는 입법관련, JRF I, II는 사법 부문 가입자들을 의미함.
2. 수급자 수에는 은퇴 이전에 사망하여 지급된 급여(Active Death Benefits) 수급자가 포함됨.

○ PERS의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주정부 회원이 30.49%, 교직원이 38.12%, 그리고 지방 공공기관 회원이 31.39%를 차지하고 있음(<표 49> 참조)

<표 52> PERS 회원 현황 (2009.6.)

구분	인원(명)	백분율(%)
가입자		
STATE MEMBERS		
Miscellaneous	224,966	65.03
University of California	81	.02
Industrial	12,822	3.71
ARP	19,422	5.61
Highway Patrol	7,471	2.16
Safety	29,911	8.65
Peace Officer/Fire Fighter	51,260	14.82
Total State Members	**345,933**	100.00
PUBLIC AGENCY MEMBERS		
Schools	432,383	54.84
Cities	173,315	21.98
Counties	97,188	12.33
Districts & Other Public Agencies	85,578	10.85
Total Public Agency Members	**788,464**	100.00
총 가입자	**1,134,397**	
수급자		
Service Retirement	408,428	82.93
Disability Retirement	43,074	8.75
Industrial Disability Retirement	33,453	6.79
Industrial Death	1,045	.21
1957 Survivor Benefit	3,398	.69
1959 Survivor Benefit	3,115	.63
총 수급자	**492,513**	100.00

○ CalPERS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외에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의료혜택, 그리고 장기요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3. 재정 부담

○ CalPERS의 재정 원천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근로자 기여금: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직역에 따

라 다양하게 설정됨(대체로 5-8%). 주정부 일반직 근로자는 $513을 초과하는 총소득의 5%를 보험료로 납부(Gross Income - $513 x 5%)

※ Public Safety(3% @ 50)의 경우 피용자 기여금은 없으며, Public Safety Management(3% @ 50) 그리고 Firefighters(3% @ 55)는 급여의 8%를 보험료로 납부

※ 보험료는 연방 혹은 주정부의 과세 대상이 아님

— 둘째, 고용주 기여금: 각 기관별로 가입한 플랜유형에 대한 재정계산을 통해 임금의 일정비율을 매년 정함

※ 고용주 기여율 (2009-1010 회계연도)

Member Category	Employer Contribution as a Percentage of Compensation
State Miscellaneous Member First Tier	16.917%
State Miscellaneous Member Second Tier	16.737%
State Industrial Member	17.251%
State Safety Member	18.099%
California Highway Patrol Member	28.438%
Peace Officer/Firefighter Member	25.848%

— 셋째, 기금운용 투자수익(investment income)

○ 2009년의 재정 원천과 지출 현황을 보면 JRF를 제외한 모든 기금에서 순자산 감소를 경험함(<표 50> 참고)

— PERF의 경우 590억 달러의 자산 감소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2008년 6월 30일에 비해 24.8% 감소한 것에 해당함

<표 53> CalPERS 재정원천과 지출 현황

(2009.6; 천 달러)

구분	PERF	LRF	JRF	JRF II
수입				
가입자 기여금	3,882,355	69	8,597	15,400
고용주 기여금	6,912,376	-	190,510	39,514
투자 수익(손실)	(57,367,054)	(14,041)	410	(59,927)
기타	3,155	-	3,574	-
소계(A)	**(46,569,168)**	**(13,972)**	**203,091**	**(5,013)**
지출				
연금급여	11,831,836	7,706	174,902	1,252
환불액	186,783	296	-	3,062
행정지출	427,809	358	1,049	578
소계(B)	**12,446,428**	**8,360**	**175,951**	**4,892**
순자산 증가(감소)	**(59,015,596)**	**(22,332)**	**27,140**	**(9,905)**

○ CalPERS는 적정수준의 적립비율(funded ratio, 부채 대비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투자수익률 변화에 따른 보험료율 조정이 필요한 경우엔 고용주의 기여율을 조정함.

—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각 요소별 비중을 보면, 가입자 기여금의 비중은 2002년 이후 점차 축소, 고용주 기여금의 비중은 증가하였으나 2008년 세계 경제위기로 투자수익이 크게 하락하면서 가입자와 고용주의 기여율이 일시적으로 대폭 증가함.

— 투자수익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하여 급감하였음(2008년에 비해 2009년의 투자수익은 359% 감소함). 최근 투자수익률이 회복되면서 가입자와 고용주의 기여금 비중은 다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최근 적립비율이 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100%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림 28] CalPERS의 재정원천별 구성비(1998-200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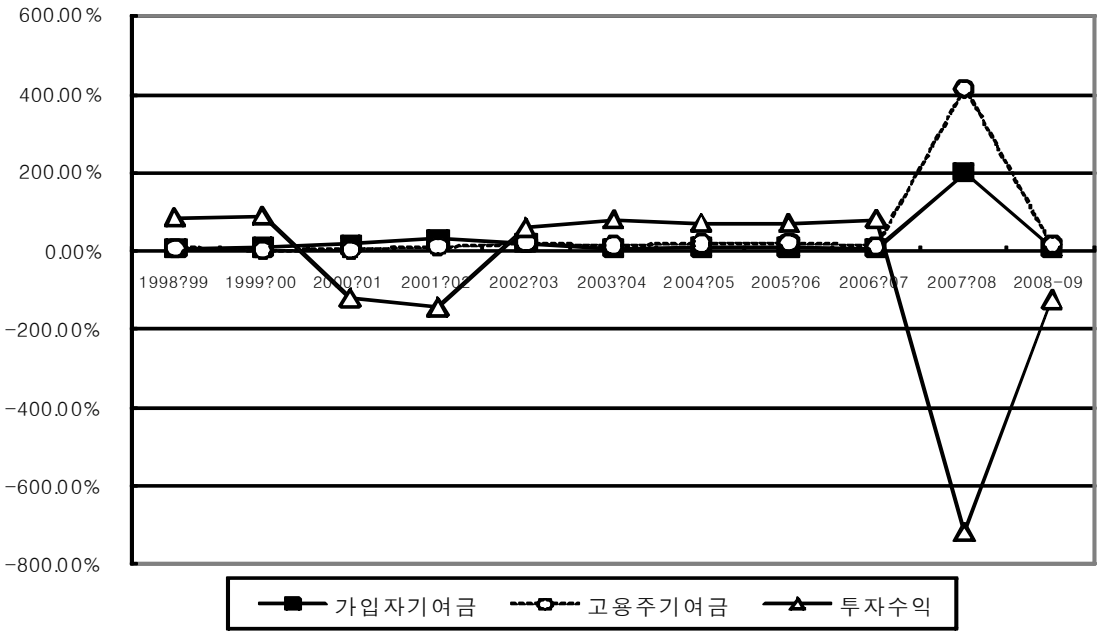

<표 54> CalPERS의 재정원천별 구성(1998-2009)

YEAR	가입자기여금	구성비	고용주기여금	구성비	투자수익	구성비	합계
2008 - 09	3,882,355,340	-8.74%	6,912,376,563	-15.56%	-55,210,379,600	124.30%	-44,415,647,697
2007 - 08	3,512,075,000	-201.35%	7,242,802,000	-415.24%	-12,499,110,000	716.60%	-1,744,233,000
2006 - 07	3,262,699,076	6.47%	6,442,383,868	12.77%	40,748,261,709	80.76%	50,453,344,653
2005 - 06	3,080,878,521	10.26%	6,095,029,424	20.30%	20,842,816,432	69.43%	30,018,724,377
2004 - 05	3,176,781,000	10.30%	5,774,120,000	18.72%	21,894,201,000	70.98%	30,845,102,000
2003 - 04	2,266,445,429	7.36%	4,261,347,422	13.84%	24,272,572,596	78.81%	30,800,365,447
2002 - 03	1,887,925,497	20.31%	1,925,043,858	20.71%	5,482,731,568	58.98%	9,295,700,923
2001 - 02	2,154,742,532	-31.95%	800,964,553	-11.88%	-9,699,792,798	143.83%	-6,744,085,713
2000 - 01	1,766,256,113	-17.38%	321,618,826	-3.17%	-12,248,341,399	120.55%	-10,160,466,460
1999 - 00	1,751,290,172	9.37%	362,614,344	1.94%	16,582,657,910	88.69%	18,696,562,426
1998 - 99	1,522,507,527	7.34%	1,598,316,666	7.71%	17,622,526,922	84.96%	20,743,351,115

자료 : fact at a glance-investment:general

<표 55> 가입 유형별 퇴직급여 적립비율

(매년 6월 30일 기준)

유형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주정부	76.4%	82.9%	85.5%	88.6%	96.6%	84.9%
학교	83.4%	91.4%	96.2%	98.7%	107.8%	93.8%
공공기관	80.7%	87.6%	90.2%	92.7%	102.0%	N/A

4. 급여

○ CalPERS는 기본적으로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직역연금으로서, 가입기관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급여산식과 계약 옵션 조항들을 사용하여 연금플랜 설계

— CalPERS 가입자의 급여산식은 고용주, 근로 유형, 근로 활동 시작 시점에 따라 차이를 보임

※ 예컨대, 주정부 일반직과 교직원의 기본 퇴직 프로그램은 「2 percent at 55」인데, 이 급여 프로그램은 55세에 매 근속년수에 대해 개인의 연간 최고 급여의 2%를 제공함. 25년 동안 근무한 교육보조원이 55세에 은퇴할 경우 그/그녀의 최고 연소득의 50%를 받게 됨(2% × 25 = 50)

— 급여수준은 가입기간(근속년수), 퇴직연령(백분율로 표시), 근속기간 중 최고 급여수준(1년 혹은 3년 평균)에 의해서 결정

— 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50세 이상 그리고 최소 5년의 가입기간 필요(가입자의 보험료 기여가 없는 제2층의 경우 10년의 가입기간이 요구됨

— 기본적인 급여산식은 “급여계수 × 가입기간 × 기준소득"

- 급여계수: 가입자의 직종에 따라 차등 적용
- 가입기간: 연금가입기간. 단, 최소 가입기간은 5년
- 기준소득: 가입 기간 동안 최고 1년 급여 혹은 최종 3년간 평균 급여

○ 급여지급 현황

— CalPERS의 2009년 전체 은퇴자의 월평균 급여액은 $2,101이며, 평균 가입 기간은 20.1년임

- 가입 유형별 월평균 급여액은 교직원 $1,134(평균 가입 기간 16.7년) 그리고 주정부 공무원 $2,396(평균 가입 기간 22.9년) 수준임
- 급여종류별 수급 평균연령은 노령(60세), 장애(50세), 산업재해장애(46세)이고, 수급자 중에서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86%임
- 퇴직자의 78%가 연 $36,000 이하의 급여를 수급하고 있음
- 2008/09 회계 연도의 신규 퇴직자는 25,150명임

▣ 노령연금

○ 직역에 따라 급여계수(Benefit Factor) 및 기준 퇴직연령에서 차이가 존재

— 급여계수(BF)는 위험직(safety members) 3%, 일반직(miscellaneous) 2%

— 기준 퇴직연령은 일반직(55세), 위험직은 주정부 경찰(50세), 소방관(55세), 기타(55세) 등

※ 예를 들어, 25년 동안 복무·가입한 공무원이 55세 퇴직 시, 기준소득이 천만 원인 경우 그 50%(2%×25)인 500만원 수급

○ 일반직의 경우, 조기퇴직(50~54세) 시 2%보다 낮은 수준에서 누진 비율로 감액(50세의 경우 급여계수는 1.1%)

— 그러나 위험직의 경우 조기퇴직이 허용되지 않거나(주정부경찰), 허용되더라도 급여는 동일(소방관)

○ 일반직의 경우 56세 이후 퇴직 시, 퇴직시점에 따라 2~2.5% 사이의 급여계수가 적용되는데, 63세 이후부터는 2.5%의 급여계수가 적용됨

▣ 장애연금

○ 급여계수(BF)가 1.8%라는 것 이외에는 노령연금과 유사

— 급여수준이 임금의 1/3 수준 이하인 경우 가입기간이 최소 10년이라면 1/3수준으로 지급

— 위험직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간 최고 급여수준의 50%가 장애급여로 지급되고, 그 급여는 연방 및 주정부 비과세 소득에 해당

— 최소 은퇴연령에 도달한 가입자들의 경우 50% 이상의 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50% 초과 금액은 과세 대상임

▣ 유족연금

○ 구체적으로 제공되는 급여의 종류는 고용주, 근로 유형, 사망 경위(작업 중 혹은 기타 상황), 은퇴 (가능)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함

○ 일반직의 경우

— 퇴직 이전 사망한 경우,

• 일반 공무원(5천 달러 + 가입자의 기여금 + 이자 + 6개월 간 임금), 교직원(가입자의 기여금 + 이자 + 6개월 간 임금)

— 퇴직 이후 사망한 경우,

• 사망 일시금으로 최소 2천 달러 혹은 유족에게 감액된 연금 지급.

○ 위험직의 경우, 최고 연봉의 50%(단, 자녀가 있는 경우 75%) 수준으로 장애급여와 유사

5. 소득재분배효과

○ 직역연금이기에 특별히 없음

6. 기금규모 및 운용

○ 기금운용 및 자산배분 현황

— 미국 GDP 대비 CalPERS의 규모는 2003년 이후 6년 평균1.50%, 주식시장규모 대비 국내주식시장 투자비중은 0.47%를 차지하고 있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표 56> GDP 및 주식시장 대비 CalPERS 규모

(단위: (billion $, %)

	GDP 규모[주1)]	주식시장 규모[주2)]	CalPERS 총자산[주3)]	CalPERS 국내주식[주4)]	GDP 대비 총자산비중	주식시장 대비 국내주식투자비중
2003	11,421	14,266	144.8	58.5	1.27%	0.41%
2004	11,868	16,324	166.3	68.90	1.40%	0.42%
2005	12,638	17,438	189.8	76.04	1.50%	0.44%
2006	13,399	19,569	208.2	85.02	1.55%	0.43%
2007	14,077	19,922	247.7	100.59	1.76%	0.50%
2008	14,414	11,738	239.2	73.88	1.66%	0.63%
평균	13,279	16,324	199.33	77.38	1.50%	0.47%

주: 1.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해외/북한-주요국제통계

2. 미국의 주식시장은 전국증권거래소(national securities exchange)와 장외시장으로 구분됨. 전국증권거래소는 NYSE(New York Stock Exchange), AMEX(American Stock Exchange), BSE(Boston Stock Exchange), CHX(Chicago Stock Exchange), CSE(Cincinnati Stock Exchange), PHLX(Philadelphia Stock Exchange), PCX(Pacific Exchange, Inc.)의 7개 증권거래소가 있으며, 장외시장으로는 NASDAQ이 있음. 위 표의 미국주식시장규모는 세계거래소연맹(www.world-exchanges.org)에서 제공하는 NYSE, AMEX, NASDAQ 세 거래소의 합계액임

3. CalPERS의 회계연도 말(6월30일) 현재 Calpers 총자산금액임

4. CalPERS의 회계연도 말(6월30일) 현재 PERF가 국내주식에 투자한 시가총액임

— 2009년 10월말 현재 총$195.5 billion의 자산을 보유한 CalPERS는 현금성자산에 $2.8 billion, 채권에 48.1 billion, 주식에 $126.4 billion, 부동산에 $13.5 billion, 물가연동자산에 $4.6 billion을 투자하여 운용하고 있음

— 현재자산배분 비중은 목표자산배분비중에 근접하여 운용하고 있

으며 해외채권은 4.6%, 주식은 1.6% 과대 투자하고 있음

— 2009년 10월 현재 주식의 경우 passive운용이 우세하며, 채권은 active하게 운용하고 있음

<표 57> CalPERS 자산배분

자산군	시가 ($ billion)	현재자산배분 비중(%)	목표자산배분 비중(%)주2)	Passive vs. Active(%)주3)	
				Passive	Active
총 현금성 자산 (cash Equivalents)	2.8	1.4	2.0	0.0	100.0
총 채권 (Fixed Income)	48.1	24.6	20.0	0.0	100.0
총 주식	126.4	64.6	63.0		
Alternative Investment Management(AIM)	22.7	11.6	14.0	0.0	100
해외 주식 (Global Equity)	103.7	53.0	49.0	68.5	31.5
부동산(Real Estate)	13.5	6.9	10.0	0	100.0
물가연동 자산 (Inflation Linked)	4.6	2.3	5.0	0.0	100.0
계	195.5	100	100	36.3	63.7

자료: fact at a glance: investment.2009.10월말 기준
(http://www.calpers.ca.gov/index.jsp?bc=/about/facts/home.xml)
주: 1. 2009년 10월 31일 기준임.
2. 목표자산비중은 2009년 6월에 결정된 비중임.
3. Passive는 시장을 추적(replicate)하도록 설계된 인덱스펀드에의 투자 운용이며, active는 시장수익이상의 초과수익을 얻고자 하는 적극적인 투자운용임

— 자산/부채 비율인 펀드비율(fund ratio)은 매년 조금씩 변동되며 장기적으로 거의 100%에 수렴하고 있음

<표 58> CalPERS의 개별펀드 적립비율

회계연도 / 구 분	03.6.30	04.6.30	05.6.30	06.6.30	07.6.30	08.6.30
주정부근로자	76.4%	82.9%	85.5%	88.6%	96.6%	84.9%
교직원	83.4%	91.4%	96.2%	98.7%	107.8%	93.8%
공공기관근로자	80.7%	87.6%	90.2%	92.7%	102.0%	N/A

자료 : fact at a glance: general, 2008.06.30 기준

— 2007년도까지 높은 수익률을 보였으나 2008년 이후 세계 경제위

기의 영향으로 2008년도 회계연도 수익률과 연간수익률은 각각 -4.9%, -27.8%. 최근 3년 회계연도의 평균수익률은 -4.9%, 최근 3년 연평균수익률은 -2.72%임

<표 59> CalPERS의 수익률(rates of returns)

	회계연도수익률 (전년도7/1-다음년도6/30)	연간수익률 (1/1-12/31)
2003	3.9	23.3
2004	16.7	13.4
2005	12.7	11.1
2006	12.3	15.7
2007	19.1	10.2
2008	-4.9	-27.8
2009	-24.0	-
최근3년평균수익률[주1)]	-4.87%	-2.72%
최근5년평균수익률[주2)]	1.73%	5.07%

주: 1. 회계연도수익률의 경우 2007-2009년도 평균이며 연간수익률의 경우 2005-2008년도 평균임.
2. 회계연도수익률의 경우 2005-2009년도 평균이며, 연간수익률의 경우 2004-2008년도 평균임.

7. 관리체계

○ CalPERS의 조직은 크게 이사회(Board of Administration), 경영자(Executive officers), 각 부서(Divisions & Offices)들로 구성됨

○ 관리 이사회 (Board of Administration)

— 연금행정과 연금기금 운용에 있어서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관리이사회는 총 13인으로 구성되며, 산하에 임시 및 영구적인의 여러 개의 위원회를 가지고 있음

— 관리이사회의 멤버(이사)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임시 및 영구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특히 이사 전원은 투자위원회의 위원이 됨

<표 60> 관리이사회 현황

	인원수	구성내역
선출직[주1)]	6명	CalPERS 참여자(2), 주정부 참여자(1), 학교참여자(1), 공공기관 참여자(1), 퇴직참여자(1)
지명직[주2)]	3명	주지사 지명(2), 의회의장과 상원규정위원회 공동 지명(1)
당연직	4명	주정부 재무장관, 감사관, 인사관리부장관, 주정부 인사위원회 피지명인

주: 1. 선출직은 참여자 각 집단의 선거에 의해 선출됨.
2. 주지사에 의해 지명되는 2인은 공공기관과 생명보험사의 대표임

— 관리이사회의 자율권과 의무: 관리이사회는 1992년 Article XVI, section 17의 수정법안에 의해 CalPERS의 기금투자와 경영에 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며,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됨

- 이 법에 의해 관리이사회는 CalPERS의 기금투자와 경영에 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며, 이 법에 의해 CalPERS는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되며 기금을 가입자의 혜택을 위해서만 사용함
- 관리이사회의 이사들은 가입자 및 수혜자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리고 보험료를 최소화하여 관리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만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 관리이사회의 이사들은 위험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투자 다양화를 해야 함

[Board of Administration의 자율권 쟁취]

○ CalPERS가 처음부터 주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으며 1991년 당시 주지사였던 Pete Wilson은 주정부의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CalPERS의 계리방법 변경을 요구한 바 있음

- 이 경우 주정부의 기여금부담이 그 해에 16억불 줄어들기 때문
- 같은 시기에 Wilson주지사는 Board of Administration 개편안을 제안했는데 이에 따르면 위원 과반수를 주지사가 임명하게 되어 있었음

○ 당시 CalPERS의 CEO이었던 Dale Hanson은 주지사가 재계로부터 로비를 받고 기관투자자행동주의에 적극적인 CalPERS를 억압한다고 맹비난

- Hanson과 가입자들의 강력한 반대로 Board를 장악하려는 주지사의 계획은 결국 좌절
- 그렇지만 연금계리는 수정되어 주정부 재정적자 보전에 CalPERS가 협조

○ 이 사건을 계기로 공적연금의 자산이 정치적 압력 등으로 주정부 사업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이루어짐

- 즉, 1992년 캘리포니아주 헌법의 개정 (Provision 162)으로 CalPERS의 Board of Administration은 캘리포니아주 내 다른 공적연금 이사회들과 함께 기금자산 운용과 예산집행 등에 있어서 주정부와 주의회로부터의 절대적인 자율권 (plenary authority)이 부여

— 관리이사회는 CEO를 선출하며, CEO는 1,600명 이상의 CalPERS 근로자의 관리(management)를 책임짐

— 관리이사회는 매년 자산배분전략 수립에 대한 책임을 지고 투자부서에 의해 수행되는 자산배분전략의 이행을 감독함

• 관리이사회는 입법부에 의한 동의 없이 연금급여의 추가, 변경 혹은 삭제에 대한 권한은 없음

— 관리이사회는 기여율, 재정추계, 자산배분 등은 단독으로 결정하지만 입법부에 의한 동의 없이 연금급여의 추가, 변경 혹은 삭제에 대한 권한은 없음

○ 수시 및 상설위원회(Board Committees)

— 관리이사회 내의 수시 및 상설위원회(Board Committees)는 특별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이슈 등에 대한 보고서 및 검토를 위해 구성되었으며, 각 위원회의 검토안을 관리위원회에 추천함

- 위험관리위원회(수시): 연기금의 지배구조, 운영, 투자, 의료보호, 은퇴 등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위험 검토 및 강화
- 구조개선위원회(수시): 위원회 내부의 지배구조절차와 현재 정책의 추가 및 변경사항에 대한 추천
- 재정위원회(상설): CalPERS의 모든 예산을 심의, 의결, 평가에 의한 재무상태와 내·외부 감사기관에 의한 연간/주기적 감사를 감독
- 급여/프로그램 관리위원회(상설): 보험료 구조와 관련된 모든 문제, 추계 요율 산정, 퇴직프로그램정책 등 연금제도 전반적인 이슈에 대한 검토
- 성과보상위원회(상설): 보상구조와 기준에 대한 평가, 정책과 절차에 대한 개선, 주요인사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관리이사회에 추천
- 보건/의료위원회(상설): Public Employees' Medical & Hospital Care Act 프로그램과 Public Employees Long-Term Care Act 프로그램의 행정업무 감독
- 투자위원회(상설): 투자거래, 내·외부 매니저의 투자성과 검토 및 투자정책과 투자전략 수립
- 투자정책 소위원회(상설): 존재하는 투자정책, 절차, 지침등 투자위원회 검토사항에 대한 개선 등, 정책, 절차,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매뉴얼 개발

[그림 29] CalPERS의 지배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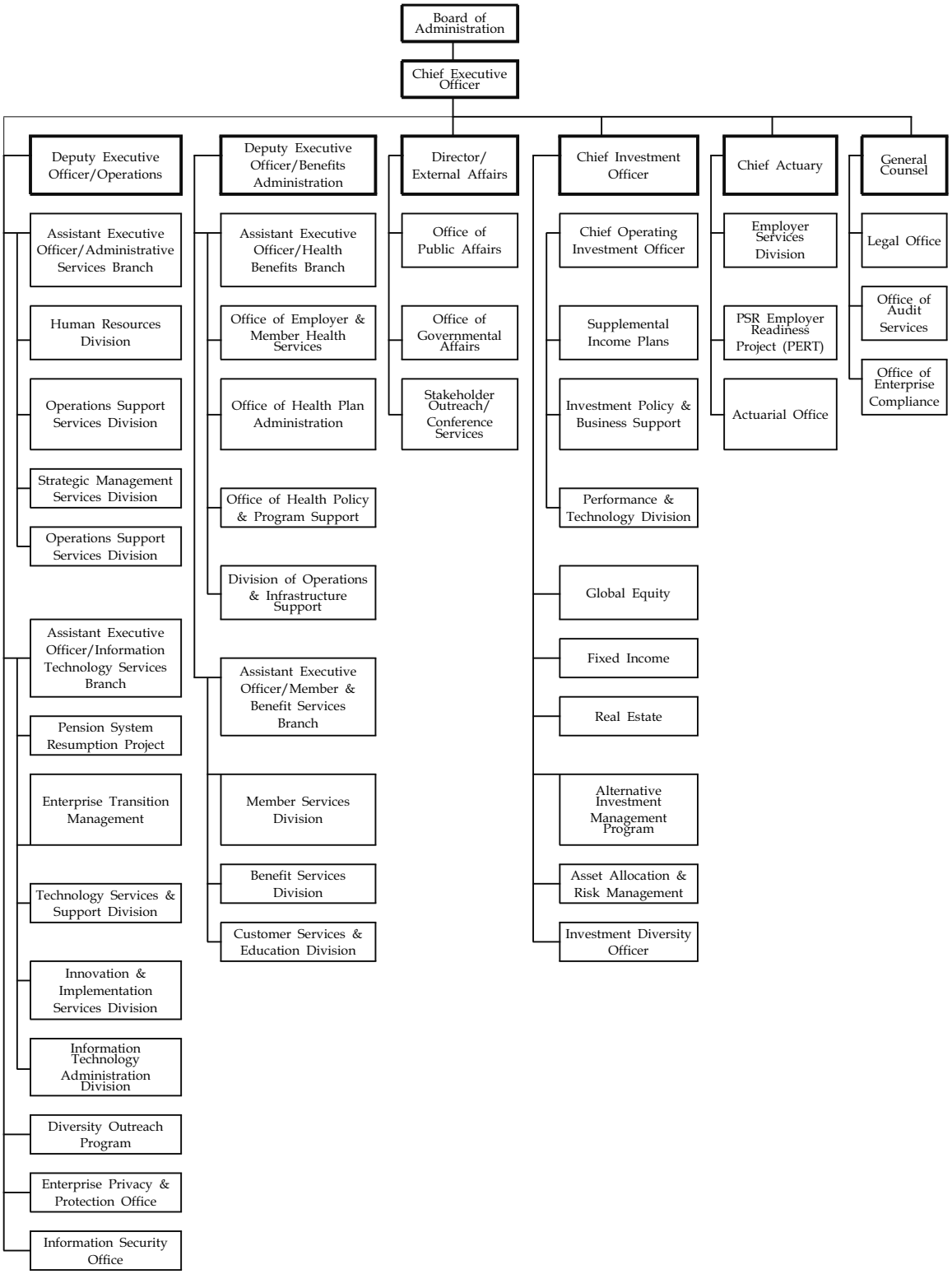

○ CalPERS의 투자는 관리이사회(Board of Administration),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 투자부서(investment office)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 투자위원회는 기금에 대한 적절한 자산배분과 목표를 설정하고 위험조정수익률을 설정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적용시키는 책임을 짐

— 투자부서에서는 180명 이상의 투자운영진(Staff)이 활동하며, 관리이사회, 투자위원회에서 주어지는 일반적인 투자방향(direction)하에서 기금의 성공적인 투자에 대한 책임을 짐

— 투자의사결정시 관리이사회 산하의 투자위원회를 가이드할 CalPERS의 투자정책은 투자위원회, 투자운용진, 제3의 계약된 외부전문가에 의해 결정되어짐

— 각 정책들은 투자위원회 산하의 투자정책소위원회에 의해 다시 재검토되어지는 과정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투자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음

※ 컴플라이언스부서(Office of Enterprise Compliance)는 CalPERS의 투자, 건강, 퇴직운영시의 컴플라이언스 이슈들에 대해서 관리이사회와 운영진(Executive staff)에게 어드바이스함

8. 기타 사회보장제도

○ 사회보장(Social Security)

— CalPERS 회원의 대략 2/3(65.7%)가 사회보장 급여의 제공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연계되어 있기에 CalPERS 급여에 추가하여 사회보장 급여의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음

• CalPERS 기여금에 추가하여 고용주와 근로자는 6.2%의 사회보장세를 납부함

9. 최근 개혁 동향

○ 특별히 없음

10. <참고자료>

CalPERS Facts At a Glance: General.
Comprehensive Annual Financial Report. 2009.
Facts At a Glance: etirement&membership
Facts At a Glance: investment.

<웹 사이트>
http://www.calpers.ca.gov
http://www.calpers.ca.gov/eip-docs/about/facts/general.pdf
http://www.ecos.bok.or.kr
http://www.world-exchanges.org
http://www.calpers.ca.gov/mss-publication/pdf/xAeMFz6gx0PeW_calpers-cafr-2009.pdf